

碩士學位論文

조선시대 祿牌 연구

指導教授 全 旻 穆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古文獻管理學專攻：林榮賢




조선시대 祿牌 연구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4. 5. 31.)

韓國學 中央 研究院
韓國學 大學 院
古文獻管理學 專攻 : 林 榮 賢

이 論文을 林榮賢의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定함.

2014年 6月 日

審査委員長 朴秉浩 
審査委員 玉 泳 最 
審査委員 전 경 호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목 차

국문초록	vi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2
3. 연구 대상 및 방법	4
II. 祿牌의 발급과 頒祿 절차	9
1. 祿牌 발급 대상과 절차	10
2. 頒祿 절차	13
III. 祿牌 樣式과 크기	23
1. 祿牌 樣式	23
2. 祿牌 크기와 변화 양상	45
IV. 頒祿 籤紙와 祿俸制의 운용 실태	55
1. 堂上官의 頒祿 籤紙	55
2. 堂下官의 頒祿 籤紙	63
3. 頒祿 籤紙와 祿俸制의 운용 실태	72
V. 결론	91
참고문헌	97
일문초록	101
부 록	103

表 目 次

〈表 I-1〉 시기별 녹패 발급 건수	6
〈表 I-2〉 반록 기록 작성의 형태별 분류	6
〈表 II-1〉 녹패 발급 대상	10
〈表 II-2〉 녹패 발급 관청의 시기별 변화	12
〈表 II-3〉 녹봉제별 반록 일자	14
〈表 II-4〉 녹봉 지급 청원 소지	16
〈表 II-5〉 『大典通編』 시행 이전 반록 과정	18
〈表 II-6〉 『大典通編』 시행 이후 반록 과정	19
〈表 II-7〉 立旨 成給 소지 목록	20
〈表 III-1〉 조선 초기 발급 녹패 정서	24
〈表 III-2〉 조선 초기 녹패 양식 변화	25
〈表 III-3〉 조선 초기 녹패의 구성요소 변화	26
〈表 III-4〉 『經國大典』 녹패식	28
〈表 III-5〉 吏曹·兵曹 녹패 발급 관원	34
〈表 III-6〉 녹패의 外面 表記 방식	42
〈表 III-7〉 외면 녹과 표기 방식	43
〈表 III-8〉 외면 표기 방식	43
〈表 III-9〉 15~19세기 녹패 크기	50
〈表 IV-1〉 반록 첨지별 반록 기록 방식	66
〈表 IV-2〉 頒賜印 방식 반록 기록 시기별 분류	70
〈表 IV-3〉 六朔頒祿制 시기 반록 기록 비교	74
〈表 IV-4〉 四孟朔頒祿制 시기 반록 기록 비교	75
〈表 IV-5〉 정식·김종직 녹패의 녹과	76
〈表 IV-6〉 『經國大典』 제14과와 1590년 신지제 반록 기록	77
〈表 IV-7〉 『經國大典』 제11과와 1604년 이언영 반록 기록	80
〈表 IV-8〉 『經國大典』 제12과와 수령자 미상 반록 기록	81
〈表 IV-9〉 17세기 초 반록 일자	82

<表 IV-10> 1649년 ~ 1660년 송준길 관직과 반록 기록	83
<表 IV-11> 1674년 개정 녹과와 송준길 반록 기록 비교	83
<表 IV-12> 1670년 ~ 1700년 반록 기록	85
<表 IV-13> 四孟朔頒祿制 적용 녹과와 반록액 비교	86
<表 IV-14> 1701년 녹과와 이해조 반록액 비교	87
<表 IV-15> 『續大典』 녹과와 18·19세기 반록액 비교	88
<表 IV-16> 1779년 황윤석 수령액과 『續大典』 녹과 비교	89
<表 IV-17> 19세기 말 반록액과 『續大典』 녹과 비교	90

圖 目 次

〈圖 II-1〉 1748년 윤덕희택 노 순동 소지	17
〈圖 II-2〉 1806년 조흥진택 노 동이 소지	20
〈圖 III-1〉 1491년 김종직 녹패와 정서	28
〈圖 III-2〉 녹과 표기 확인 1	31
〈圖 III-3〉 녹과 표기 확인 2	32
〈圖 III-4〉 녹과 표기 확인 3	33
〈圖 III-5〉 발급 관청별 발급 관원 비교	35
〈圖 III-6〉 假郎聽 着押 녹패	36
〈圖 III-7〉 1589년 신지제 녹패와 吏曹之印	37
〈圖 III-8〉 1634년 최진립 녹패와 兵曹之印	38
〈圖 III-9〉 1649년 정도응 녹패와 兵曹堂上之印	39
〈圖 III-10〉 1868년 기양연 녹패와 兵曹堂上之印	40
〈圖 III-11〉 外面 表記 방식	41
〈圖 III-12〉 外面 表記의 서체 변화	44
〈圖 III-13〉 15세기 녹패	46
〈圖 III-14〉 17세기 녹패	47
〈圖 III-15〉 18세기 녹패	48
〈圖 III-16〉 19세기 녹패	49
〈圖 III-17〉 현전 최초 목판식 녹패	51
〈圖 III-18〉 19세기 목판식 吏曹 녹패	52
〈圖 III-19〉 19세기 목판식 兵曹 녹패	53
〈圖 IV-1〉 1790년 안정복 녹패와 반록 첩지	56
〈圖 IV-2〉 1773년 이수일 녹패와 반록 첩지	57
〈圖 IV-3〉 1783년 류운 녹패와 반록 첩지	58
〈圖 IV-4〉 1605년 류성룡 奉朝賀 녹패와 반록 첩지	59
〈圖 IV-5〉 1834년 류상조 녹패와 반록 첩지	61
〈圖 IV-6〉 1889년 홍병균 녹패와 頒賜印	62
〈圖 IV-7〉 1589년 신지제 녹패와 반록 첩지	64

<圖 IV-8> 1786년 조홍진 녹패와 반록 첨지	65
<圖 IV-9> 19세기 목판식 녹패와 반록 기록	68
<圖 IV-10> 간소화된 반록 기록	69
<圖 IV-11> 頒賜印	71
<圖 IV-12> 頒賜數量印	71
<圖 IV-13> 四孟朔頒祿制 시기 녹패 1	79
<圖 IV-14> 四孟朔頒祿制 시기 녹패 2	81

조선시대 祿牌 연구

林榮賢

본 논문은 조선시대 祿牌 제도와 양식, 그리고 頒祿 籤紙를 통한 녹봉제의 운용 실태를 통시적으로 연구하였다. 녹패는 공문서로서 문무관원의 녹봉 수령 자격을 증명하며, 祿官이 녹봉을 수령할 때 證憑 문서로 활용된다. 그리고 녹봉을 수령하였다는 녹봉 수령증인 반록 첨지가 첨부된 복합적인 성격의 문서이다. 현재까지 녹패 연구는 녹패 양식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다. 그렇지만 녹패의 크기에 대한 검토와 반록 첨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며, 녹봉제 연구자들은 반록 첨지를 참고하지 않고 문헌 사료만으로 조선시대 녹봉제를 검토한 탓에 조선시대 녹봉제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녹패의 발급 대상과 절차에 대한 규명과 더불어 반록 절차를 검토한 후, 녹패 양식 검토와 함께 시대 및 관청에 따라 달라지는 祿科 표기·발급 관원·인장·외면 표기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녹패가 크기를 달리하는 기준에 대하여 규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3품 당상관 이상과 정3품 당하관 이하로 나누어 반록 첨지의 크기와 작성 방식을 검토한 후, 반록 첨지의 기록과 녹봉제의 녹과를 비교·검토하였다.

조선시대 녹패 발급 대상은 祿官에 임명된 관원으로 한정되며, 발급 기관은 三司→司評府→吏曹로 변경되었는데 1466년(世祖 12) 전교 이후 吏曹와 兵曹에서 文官과 武官의 녹패 발급을 각각 담당하였다. 반록 절차는 반록 시 지참해야하는 문서에 따라 『大典通編』 시행 전후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大典通編』 시행 이전에 祿官이 녹봉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教旨·祿牌·給祿所志를 지참했으며, 『大典通編』 시행 이후에는 교지와 녹패만으로 녹봉을 수령할 수 있었다.

조선 초기에 발급된 녹패 양식은 고려시대의 것을 따랐는데, 『經國大典』에서 녹패식이 법제화되기 이전까지 始面·녹과 표기·인장에서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經國大典』에서 녹패식이 법제화된 이후 조선시대 녹패는 『經國大典』 녹패식을 준행하였으며, 법제화된 이후 녹과 표기·인장·발급 관원·外面 表記에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관직의 정3품 당상관 이상과 정3품 당하관 이하의 녹패는 크기를 달리하여 발급되었다. 당상관 녹패는 세로×가로의 평균 길이가 112.4×79.2cm이며, 당하관

녹패는 45.5×14.4cm로, 세로×가로의 평균이 50cm 이상씩 차이가 났다. 그리고 종친을 제외하고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관직의 정3품 당상관과 당하관을 기준으로 크기를 달리하여 발급된 것을 알 수 있다. 당하관 녹패에 한하여 18세기 후반부터 木版式 녹패가 등장하였으며, 이조와 병조는 版에 새기는 부분이 달랐다.

반록 첨지도 녹패와 마찬가지로 관직의 정3품 당상관과 당하관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조선 전기 반록에는 監察과 廣興倉 관원이 참여하였으며, 인장은 “分臺之印”이 답인되었다. 그런데 18세기 후반부터 감찰이 반록 업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廣興倉印”이 답인되었다. 당하관 녹패가 목판식으로 바뀐 이후, 당하관의 반록 기록은 해당 월만 手記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변한 뒤, 조사된 녹패 가운데 1851년(哲宗 2) 黃銑 녹패부터 頒賜印으로 반록 기록을 표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녹봉제는 일 년에 두 차례(1·7월) 지급하는 六朔頒祿制, 일 년에 네 차례(1·4·7·10월) 지급하는 四孟朔頒祿制(1439), 그리고 매월 지급하는 月俸制(1701)로 변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녹패에 첨부된 반록 첨지의 반록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녹봉제의 운용 실태 고찰해 보았다. 육삭반록제 시기에는 녹패에 일정한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조사된 조선 초기 녹패를 통해 1414년(太宗 14)부터 1463년(世祖 9)까지는 품계를 기준으로 반록하였고, 1467년(世祖 13)부터는 관직을 기준으로 반록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439년(世宗 21)에 처음 시행된 사맹삭반록제는 시행 초기에는 녹패에 준하여 녹봉을 지급하였으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실제 녹패보다 적은 수량을 지급하였다.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1647년(仁祖 25)과 1670년(顯宗 11)에는 반록 품목과 수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녹패를 개정하였지만, 실제 반록 수량은 녹패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임시로 월봉을 지급하고, 반록 수량을 감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임시로 시행했던 월봉 지급은 1701년(肅宗 27)에 제도화되었다. 사맹삭반록제 시행 초기와 비교하면 반록 품목과 수량이 상당히 줄었고, 녹패에 준하는 반록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1721년(景宗 元年) 수량을 더 줄여 녹패를 개정하였고, 이는 『續大典』에 실렸다. 18세기 초반까지 『續大典』 녹패가 준행된 것을 반록 첨지와 문헌 사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19세기 후반 반록은 『續大典』 녹패에 준하는 수량을 반록하지 못하였다.

I. 서론

1. 연구 목적

관직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생활을 보장해주는 측면에서 보면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이다. 조선 前期에는 科田法과 祿俸制가 있어 收租權과 現物로서 官員의 생활을 보장해 주었지만, 과전법이 붕괴된 이후 부터는 녹봉만이 유일한 보수체제였다. 조선은 祿科에 따라 녹봉을 지급하였고, 녹봉을 지급하기 위해 祿職¹⁾에 제수된 문무관원에게는 녹봉 수령 자격을 증명하는 祿牌를 발급해 주었다.

녹패는 공문서로서 문무관원의 녹봉 수령 자격을 증명하며, 녹봉을 수령할 때 證憑 문서로 활용된다. 게다가 녹봉을 수령하였다는 녹봉 수령증인 頒祿 籤紙가 첨부된 복합적인 성격의 문서이다. 그러므로 녹패는 발급 절차에 대한 연구와 녹패를 근거로 한 반록 절차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반록의 기준이 되는 녹봉제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규명이 미비한 실정이다.²⁾ 또한, 小片紙³⁾로 알려진 반록 첨지는 祿標와는 다른 문서임에도 같은 성격의 문서로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⁴⁾

조선 초기 녹패 발급 관청은 몇 차례 변화되었고, 양식 또한 약간의 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1466년(世祖 12) 吏曹와 兵曹로 分掌된 이후에는 『經國大典』에서

- 1) 조선시대 모든 문무관원은 祿官과 無祿官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녹패를 통해 녹봉을 수령하는 관직을 가리켜 祿職이라 하며, 녹직에 제수된 관원을 祿官이라 지칭하기로 한다. (『中宗實錄』 29년(1534) 6월 25일: “(상략)守令戾二中者, 雖仕滿遞來, 例敍於無祿官. 司果禹賜範, 前爲平山府使時, 居二中, 未及箇滿, 以不法事, 見捉送西, 當敍於無祿, 今付有祿司果, 有違法例. 請推兵曹, 賜範祿職改正. (이하 생략)”); 한승희, 「朝鮮初期 官職構造研究」, 『大丘史學』75, 2004, 52~54쪽.)
- 2) 현재까지 녹패 제도와 녹봉제는 각각 고문서 분야와 역사학 분야에서 연구되었다.
- 3) “小片紙”라는 용어는 『典律通補』에서 사용되었는데, 최승희와 김혁은 소편지를 녹봉 수령증이라고 정의하였다. 『典律通補』가 편찬될 당시(1785, 正祖 9) 정3품 당하관 이하의 녹패에 첨부된 반록 첨지 또한 비교적 작은 크기의 종이에 작성하였기 때문에 『典律通補』에 사용된 소편지라는 용어는 반록 기록을 작성하기 위한 “작은 종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IV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그러나 정3품 당하관 이하 녹패에 첨부된 반록 첨지는 몇 건을 제외하면 녹패보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소편지”라고 지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반록 사항이 기재되어 첨부된 종이를 “반록 첨지”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최승희, 『(改正增補版)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2011, 99쪽; 김혁, 「朝鮮時代 祿牌 研究」, 『고문서연구』20, 2002, 195쪽.)
- 4) 김혁은 小片紙와 祿標를 구분하였는데, 녹표에 대하여 “放料를 지급하기 위하여 戶曹에서 發行하는 문서”라고 정의 하였다. (김혁, 앞의 논문, 206쪽.)

법제화된 녹패식이 준행되었다. 녹패 양식에 대한 사항은 기왕의 연구를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지만,⁵⁾ 발급된 녹패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⁶⁾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녹패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광흥창에서 반록할 때 발급되는 頒祿 籤紙는 녹봉제의 운용 실태를 가장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반록 첨지를 통한 연구는 녹봉제 연구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반록 첨지를 통해 녹봉제를 들여다보는 연구를 시도한다면 녹봉제가 운용된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왕의 녹패 연구를 바탕으로 녹패의 발급과 녹봉의 반록 절차를 문서 行移의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다. 이어서 녹패의 문서 양식을 검토한 후 크기 차이가 발생하는 기준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녹패와 녹봉제 연구자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반록 첨지의 첨부 방식과 크기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며, 아울러 반록 첨지에 기재된 반록 사항을 통해 조선시대 녹봉제의 준행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녹패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최승희는 녹패의 양식을 최초로 소개하였는데, “吏·兵曹에서 王命을 받들어 宗親·文武官員에게 祿科를 정하여 내려주는 祿科證書이다”라고 하여 녹패에 대해 정의하였다.⁷⁾

김혁은 『頤齋亂藁』를 통해 녹패의 문서 행정 제도를 살펴본 후 실물 문서를 통해 녹패의 문서식과 변천 과정을 서술하였다. 녹패 발급과 반록 과정에서의 문서 행이체제를 규명하였으며, 문서 형태를 서술하면서 正方形에서 長方形으로 변형되었고, 세로 대 가로의 비율이 축소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서 정리의 용이성을 위해 正祖朝 이후 小片紙⁸⁾가 등장하였다고 서술하였다.⁹⁾ 그렇지만 녹패

5) 김혁, 위의 논문, 199~203쪽; 박성호, 「麗末鮮初 祿牌의 제도와 양식」, 『고문서연구』 43, 2013, 73~97쪽.

6) 김혁, 위의 논문, 203~204쪽.

7) 최승희, 앞의 책, 98쪽: “祿科는 第一科로부터 第十八科로 區分되어 있어 科에 따라 祿俸에 差異가 있다. 朝鮮初에는 三司에서 王命을 따라 祿牌를 발급했으나 經國大典 前後에는 吏·兵曹에서 발급했다. ...”

8) 원문에 따라 小片紙로 기재함. (김혁, 앞의 논문, 206쪽.)

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정방형과 장방형이 발견되고, 반록 첩지도 또한 조선 초기 녹패인 1491년 김종직 녹패에서부터 발견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김혁의 서술은 당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도출된 결과로 보인다.

박성호는 조선전기 녹패 양식의 정착에 대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었다.¹⁰⁾ 그러나 그의 연구는 조선 초기 녹패에 국한되고, 녹패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록 행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조선시대 문무관원은 품계와 관직이 있었고, 반록에는 둘 가운데 한 가지만이 고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호의 연구는 품계를 반록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보다 반록 기준에 대한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조선시대 녹봉제는 六朔頒祿制¹¹⁾, 四孟朔頒祿制, 月俸制로 변화를 겪었는데,¹²⁾ 녹봉제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재룡은 조선 전기 녹봉제에 관하여 다루었다. 그는 녹봉 지급 대상과 범위, 반록 내용과 절차, 그리고 녹봉의 재용을 국가 재용면에서 상고하였으며 관료체제의 해이와 녹봉제의 문란에 대하여 규명하였다.¹³⁾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조선의 녹봉제에 관한 최초의 연구 성과로, 조선시대 사용된 祿俸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최정환은 조선시대 녹봉제를 통시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가장 먼저 조선시대 녹봉제의 성립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조선 초기 녹봉제를 관직에 따라 封君祿科·檢校祿科·奉朝賀祿科로 분류하여 검토하고, 初二番頒祿制¹⁴⁾·四孟朔頒祿制의 녹봉제를 검토한 뒤 四孟朔頒祿制가 정비된 이후에 月俸制로의 전환 과정을 서술하였다.¹⁵⁾ 그의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녹봉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녹패 및 반록 첩지에 대한 검토없이 문헌 사료만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조선시대 녹봉 지급 기준에 대하여 조선 초기부터 실직주의 원칙이 유지되었다고 하는 결과를 도출한 한계가 있다.¹⁶⁾

신유아는 녹봉을 君臣간의 義理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녹봉의 재원 마련과 제

9) 김혁, 앞의 논문, 199~207쪽.

10) 박성호, 앞의 논문, 89~97쪽.

11) 六朔頒祿制라는 용어는 『世宗實錄』 17년(1435) 5월 25일 6번째 기사 가운데 “六朔頒祿”이라는 문구에서 근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재룡은 『世宗實錄』의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 “初二番 頒祿”이라 하였고, 최정환은 “初二番頒祿制”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재룡, 「朝鮮前期의 祿俸制」, 『승전대학교 논문집』5, 1974, 203~210쪽; 최정환, 『高麗·朝鮮時代 祿俸制 研究』, 경북대학교출판부, 1991, 251~271쪽.)

12) 녹봉제에 대한 사항은 IV장 반록 첩지와 녹봉제의 실태에서 서술할 것이다.

13) 이재룡, 앞의 논문, 119~203쪽, 217~219쪽.

14) 원문에 따라 初二番頒祿制로 기재함.

15) 최정환, 앞의 책, 332~336쪽.

16) 최정환, 앞의 책, 234, 252, 257쪽.

도 수정 그리고 녹봉액이 관료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관하여 서술하였다.¹⁷⁾

徳成外志子(토쿠나리토시코)는 조선시대 녹봉제의 녹과에 규정된 반록 품목을 米로 환산한 후 녹과에 따른 반록 수량을 비교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규정된 녹과가 격감하게 되는 원인을 관료와 서리들이 국가재정을 중간에서 公的·私的으로 消耗한 까닭으로 보았다.¹⁸⁾

이상과 같이 녹패 연구는 문서행정 및 양식과 형태적인 측면을 다방면으로 연구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조선시대 녹패 제도와 녹패 양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었던 경향이 있다. 그리고 녹봉제 연구는 문헌 사료에만 의존한 탓에 실제 녹봉제의 준행 여부를 밝히지 못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녹패와 반록 첨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면, 기왕의 연구에서 나타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녹패에 첨부된 반록 첨지의 반록 기록을 통해 녹봉제의 운용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녹패 연구에 앞서 祿俸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녹봉이라는 것은 祿과 俸의 합성어로 祿은 米穀을 의미하고 俸은 布帛을 의미한다.¹⁹⁾ 조선시대에 祿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392년(太祖 1) 『太祖實錄』 7월 28일(丁未)에 文武百官의 관제를 정할 때이다.

“廣興倉: 掌收支百官祿俸事. 自使至注簿, 倣豐儲倉例.”²⁰⁾

실록의 기사에 언급된 祿俸은 문무관원에게 그들의 職事에 따라 廣興倉에서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한다. 그런데 조선시대 녹봉의 의미에는 문무관원에게 지급

17) 신유아, 「朝鮮前期 祿俸의 頒給과 官僚家計」, 『역사교육』 114, 2010, 317~319쪽.

18) 徳成外志子, 「朝鮮王朝의 祿俸制と 國家財政體制」, 『經濟史研究』11, 大阪經濟大學, 2008, 79~81쪽.

19) 『經國大典註解』 後集 上, 吏典, 廣興倉條: “祿俸: 米穀曰祿, 布帛曰俸.”

20) 『太祖實錄』 1년(1392) 7월 28日.

(본고에서 인용하는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는 모두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단, 일부 표점과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별도로 언급하였다.)

하는 보수 외에 雜職·尙膳·尙宮 등과 같이 일정한 職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보수의 의미도 포함되어 사용되었다. 게다가 이들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또 다른 용어인 ‘料’가 존재하였다.²¹⁾ 조선시대 관원에 대한 보수의 의미로 사용된 祿·俸·料의 개념은 용어를 사용하는 데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해석도 연구자마다 다르게 해석되어왔다.²²⁾ 녹패를 연구한 김혁은 이재룡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頒祿과 放料를 구분하여 정1품부터 종9품까지 文武官員에게 주는 급료는 頒祿이라 하고, 그 밖에 비정식 관원에게 봉급을 주는 것을 放料라고 하였다.²³⁾

본 연구에서는 위의 견해를 따르면서 녹봉의 개념을 녹봉제의 녹과를 기준으로 광흥창에서 녹관에게 반록하는 미곡과 포백 등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月俸制가 시행된 이후에는 매월 지급하는 녹봉을 ‘月料’ 또는 ‘散料’라고 지칭하므로 月俸制 시행 이후 사용된 ‘月料’와 ‘散料’는 녹봉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²⁴⁾ 녹봉을 수령하는 관원의 범주는 왕명에 의하여 녹관에 임명되어 해당 관청(吏曹·兵曹)에서 녹패를 발급받고, 녹봉제의 반록 행정에 따라 광흥창에서 녹봉을 수령하는 자에 한정한다.²⁵⁾

현재까지 필자가 조사한 녹패는 총 360건으로 녹봉제에 따라 시기를 구분하여 녹패를 분류한 것이 <表 I -1>이다.

21) 신유아는 ‘料’를 특정한 용도에 사용된 實費를 지칭한다고 하였으나, 조선 후기에 ‘料’는 ‘祿’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料’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다시 考究할 필요가 있다. (신유아, 앞의 논문, 281쪽: “특정한 용도에 들어간 實費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히 料라 불렀다.”)

22) 녹봉제를 연구한 이재룡과 신유아는 祿俸을 정의함에 있어서 약간 다른 견해를 보인다. 이재룡은 “祿俸은 祿과 俸, 祿과 料로 對比된 用語이거니와, 祿은 受祿, 給祿, 祿科 등으로 表記되고, 俸은 常俸, 月俸, 給俸 등으로 表記되는 바이나, 俸 대신 料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料는 受料, 朔料, 日料 등으로 表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祿과 俸(또는 料)이라는 用語를 區別하지 않고 막연하게 祿俸으로 表現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였고, 신유아는 “일에 대한 값으로의 의미가 주인 경우에는, 이를 祿과 구별하여 月 또는 그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지급하면서 俸 또는 料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월 단위로 지급되는 것은 月俸, 月料 또는 朔料라 칭하였으며, …” (이재룡, 앞의 논문 200쪽; 신유아, 앞의 논문 281쪽 참조.)

23) 김혁, 앞의 논문, 185~186쪽.

24) 본 논문에서는 문헌 사료에 사용된 月料·散料를 祿俸으로 기재하였다.

25) 녹봉 수령자에 관한 사항은 II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表 I-1> 시기별 녹패 발급 건수

연번	祿俸制 구분	시기 구분	건수(건)
1	六朔頒祿制	~ 1439년	3
2	四孟朔頒祿制	1439년 ~ 1701년	84
3	月俸制	1701년 ~ 1984년	273
총 수량			360

녹패 발급 횟수는 『經國大典』에서는 매년 정월에 한 차례,²⁶⁾ 『大典通編』에서 1·4·7·10월의 네 차례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²⁷⁾ 『大典通編』 편찬 시기가 1785년(正祖 9)이므로 月俸制 도입 이후의 전존 녹패 수량이 많은 것은 개정된 법령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지보다 녹패의 전존 수량이 적은 이유는 관직에 제수되더라도 녹패를 통해 녹봉을 지급받는 관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²⁸⁾ 새로운 관직에 제수되더라도 녹패를 재발급 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²⁹⁾

다음은 반록 첨지가 첨부된 녹패와 간소화된 반록 기록 및 도장을 이용한 반록 기록을 분류한 것이다.

<表 I-2> 반록 기록 작성의 형태별 분류

연번	형태	건수(건)
1	반록 첨지 이용	139
2	간소화된 手記·頒賜印	37
3	미상	184
총 수량		360

반록 첨지가 첨부된 것은 360건의 녹패 가운데 139건이다. 그리고 반록 첨지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183건인데 반록 첨지를 미처 녹패에 붙이지 못하였거나, 문서 정리 과정에서 소실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녹봉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6) 『經國大典』 吏典, 祿牌: “凡應受祿者, 每春孟朔給牌.”

27) 『大典通編』 吏典, 祿牌: “【今以四孟朔給牌, 仲季朔受職隨給】”(법전의 세주는 【】에 넣었다.)

28) 녹패를 통한 녹봉 지급 대상은 II장 1절의 祿牌 발급 대상과 절차에서 살펴볼 것이다.

29) 『光海君日記』, 10년(1618) 10월 9일: “戶曹啓曰: 常時頒祿之際, (중략) 至於東西班有實職宰臣及臺·侍名官, 非有臨科遞易之事, 則例持前受祿牌, 直往倉所受去. …”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 조사를 통해 수집한 녹패를 기반으로 귀납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고문서의 양식론 연구와 더불어 제도적 관점에서 녹패의 발급과 녹패를 통한 녹봉 수령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반록 첨지에 기록된 반록 사항을 통해 녹봉제도의 준행 실태를 해석론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³⁰⁾

고문서에 관한 연구는 자료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펴낸 『고문서집성』에 실린 자료를 시작으로 박물관 및 한국학 관련 기관 등과 자료집 등에 실린 녹패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자료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녹패를 시대별·발급처별·관직별 분류와 같이 유형별로 분류하였으며, 이어서 개별 고문서 검토를 실시하였다.

고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서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녹패 제도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법전의 제도에 따라 변화된 녹패 발급 및 녹봉 수령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 고문서에서 나타나는 문서식의 변화, 표기 방식의 변화, 발급 관청별 발급 관원의 차이, 인장과 같은 문서의 양식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반록 첨지에 기재된 반록 품목과 수량을 통해 녹봉제도의 일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록 첨지 기록을 정리하고, 조선시대 녹봉제의 변화 과정을 조사한 후 녹봉제를 시기별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시기에 따라 반록 기록과 녹봉제의 비교·대조를 통해 법전에 규정된 녹과에 따른 반록의 준행 여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모두 다섯 장이며, 본문은 II장에서 IV장까지이다. II장에서는 문무관원 가운데 녹패가 발급되는 대상과 절차를 밝혀 녹패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무관원이 녹봉을 수령하기 위해 지참해야 하는 문서를 파악하여, 지참 문서의 변화를 법전의 규정에 따라 시기를 나누어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녹패의 발급과 더불어 파생되는 일련의 문서 행이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30) 전경목은 고문서 연구 방법을 내적연구와 외적연구로 구분하였는데, 내적연구로는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법제사, 국어학, 역사학 등이 있고, 외적연구로는 조사방법론, 분류정리론, 보존방법론, 양식론, 해석론, 재료학, 기록관리론, 감정론, 활용론 등이 있다. (전경목, 「고문서학 연구 방법론과 활성화 방안: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역할과 연계하여」, 『정신문화연구』28, 2005, 224~230쪽.)

Ⅲ장에서는 녹패의 양식적인 면과 녹패 크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1절에서는 녹패의 양식 변화 과정을 검토한 후, 녹패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그리고 2절에서는 관직에 따라 달라지는 녹패의 크기에 대해 검토한 후, 크기를 달리하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녹패의 형태적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반록 첨지와 녹봉제의 운용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이 장에서는 앞서 밝힌 녹패가 크기를 달리하는 기준을 근거로, 반록 첨지의 크기에 대하여 검토와 함께 반록 첨지의 첨부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녹패에 기록된 녹과와 반록 첨지의 기록을 중심으로 녹봉을 지급하는 기준과 녹봉제의 운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기왕의 녹봉제 연구자들이 문헌 자료만으로 밝히지 못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祿牌의 발급과 頒祿 절차

祿牌가 처음으로 언급된 문헌은 高麗時代 역사서인 『高麗史』로 禮志九, 嘉禮의 人日賀儀條에서 1월 7일(人日)에 文武官員에게 녹패를 하사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¹⁾ 그리고 世家 권6의 靖宗條 1036년(靖宗 2) 기사를 비롯하여 총 3회 百官에 녹패를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³²⁾ 조선시대 들어서는 건국된 이듬해인 1393년(太祖 2) 1월 7일에 녹패를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³³⁾ 전사본으로 전하는 고려시대 金芸寶³⁴⁾(생몰년 미상)의 녹패와 조선시대 발급된 1394년(太祖 3) 都膺(생몰년 미상)의 녹패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녹패 제도가 고려시대 제도를 따랐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³⁵⁾

조선 초기 성립된 녹패 제도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녹패의 발급 대상과 절차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지 않았다. 그렇지만 반록 절차에 있어서는 1785년(正祖 9) 편찬된 『大典通編』을 기준으로 반록 시 녹봉 수령자가 구비해야하는 문서 구성에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 장에서는 녹패의 발급과 반록 절차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1절에서는 녹패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는 녹패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록 절차를 규명하고, 『大典通編』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문서 행정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31) 『高麗史』禮志九, 嘉禮3, 人日賀儀: “人日賀儀. (중략) 閣使又云: 賜卿等人勝·祿牌. 舍人喝, 兩班拜舞拜. 訖, 分授人勝·祿牌, 兩班跪受其人勝. 三品以上, 則祇候分授, 四品以下, 太府人吏, 分上祿牌. 判事以上, 則三司判官分授, 以下, 人吏分上. 訖, 舍人喝, 兩班再拜, 各祇候引出訖, 閣門橫行自喝, 拜舞拜. 各受人勝祿牌, 如上訖, 再拜揖退.” (人勝·祿牌는 人勝祿牌로 되어있으나 人勝은 人日에 하사하는 장식품이기 때문에 녹패와 구분하였다.)

32) 『高麗史』世家 권6, 靖宗 2年(1036) 2월 3일: “壬子: 御殿視朝, 賜百官祿牌.”; 『高麗史』世家 권9, 文宗 37年(1083) 2월 1일: “二月 丁未朔: 賜群臣祿牌.”; 『高麗史』世家 권19, 明宗 3年(1173) 1월 7일: “辛未: 百官賀人日, 賜人勝·祿牌.”

33) 『太祖實錄』2년(1393) 1월 7일: “人日. 群臣朝賀, 賜人勝祿牌.”

34) 金芸寶 또는 金云寶라고 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金芸寶로 통일하였다. (『頤齋亂藁』권34, 三十日戊辰: “芸寶, 亦曰云寶, 亦曰文捧, 亦曰文寶…”) (『頤齋亂藁』의 원문 자료는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에 수록된 원문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35) 박성호는 실물과 전사본으로 전하는 여말선초의 녹패 9건의 양식과 인장 등을 검토하여 조선 초기 녹패가 고려 말의 녹패 양식을 襲用하였고, 1466년(世祖 12)에 이르러 吏曹와 兵曹에서 녹패 발급을 분장하게 되었으며, 『經國大典』에 이르러 녹패식이 완성되었음을 규명하였다. (박성호, 「여말선초 녹패의 제도와 양식」, 『고문서연구』43, 2013 89~97쪽.)

1. 祿牌 발급 대상과 절차

녹패 발급은 문무관원 가운데에서도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다음 표는 『經國大典』을 비롯한 조선시대 법전과 기왕의 연구³⁶⁾에 근거하여 정리한 녹패 발급 대상자이다.

<表 II-1> 녹패 발급 대상

구분	발급 대상
文武官	實職
軍職 遞兒	上護軍·大護軍·護軍·副護軍·司直·司果·司正·司猛·司勇
宗親	宗室諸君·駙馬·王親·外戚
功臣	功臣·功臣子孫
奉朝賀	奉朝賀

『經國大典』에는各科의 祿俸은 實職에 따라 준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³⁷⁾ 上護軍·大護軍·護軍·副護軍·司直·司果·司正·司猛·司勇은 五衛의 義興衛·龍驤衛·虎賁衛·忠佐衛·忠武衛에 소속된 軍職으로,³⁸⁾ 現職을 떠난 문무관원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체아 벼슬자리가 되었다.³⁹⁾ 宗親의 경우 宗親府의 諸君과 儀賓府의 駙馬, 소원한 王親과 敦寧府의 外戚이 그 대상이며,⁴⁰⁾ 公主와 翁主도 녹패를 발급받았다.⁴¹⁾ 功臣의 子孫이 蔭職으로 관직에 진출할 경우 無祿官(提學·提檢·別坐·別提·

36) 한충희, 「朝鮮初期 官職構造研究」, 『大丘史學』75, 2004, 52~54쪽; 이재룡, 「朝鮮前期의 祿俸制」, 『숭전대학교 논문집』5, 1974, 200~203쪽.

37) 『經國大典』 戶典, 祿科: “各科祿, 從實職, 四孟朔頒賜. …”

38) 『經國大典』 兵典, 京官職, 【從二品官廳】

從二品	將十二員【以他官兼】	正三品堂下	上護軍 九員
從三品	大護軍 十四員	正四品	護軍 十二員
從四品	副護軍 五十四員	正五品	司直 十四員
從五品	副司直 一百二十三員	正六品	司果 十五員
從六品	部將 二十五員, 副司果 一百七十六員	正七品	司正 五員
從七品	副司正 三百九員	正八品	司猛 十六員
從八品	副四孟 四百八十三員	正九品	司勇 四十二員
從九品	副司勇 一千九百三十九員		

39) 이재룡, 앞의 논문, 216~218쪽; 최정환, 『高麗·朝鮮時代 祿俸制 研究』, 경북대학교출판부, 1991, 336~339쪽.

40)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최정환, 위의 책, 239쪽.

41) 『經國大典』 祿科條에 公主와 翁主에 대한 녹봉 지급 규정이 있으며, 현전하는 녹패로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사진유리필름으로 전하는 淑敬公主의 녹패(소장처 미상, 등록번호:

別檢)에 임명되었고, 360일이 지나면 加資되어 녹직에 제수되었다.⁴²⁾ 奉朝賀는 『經國大典』에 15員으로 정원을 한정하고 실직에 따라 녹과를 달리 정하였다.⁴³⁾ 禁推 중인 자는 照律 전에는 녹봉을 수령할 수 없었다.⁴⁴⁾

麗末鮮初 녹패 발급 업무를 담당한 곳은 三司였다.⁴⁵⁾ 고려시대 1362년(恭愍王 11)에 尙書省을 혁파하고 삼사를 설치하였다는 것과,⁴⁶⁾ 13세기 후반 인물인 金子粹(생몰년 미상)가 “三司의 관원 수는 15명에 달하는데 祿牌의 서명 외에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⁴⁷⁾라고 한 『高麗史』의 기록을 통해 고려 말 녹패 관장 기관은 삼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⁸⁾ 그리고 조선 건국 후 발급된 1394년 도응 녹패의 발급처가 삼사로 표기된 것을 통해, 조선 초기 녹패 발급 업무를 담당한 곳도 또한 삼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⁹⁾

조선시대 삼사는 1401년(太宗 1)에 司平府로 이름이 바뀌고,⁵⁰⁾ 1405년(太宗 5)에 호조에 흡수되었다.⁵¹⁾ 이후부터는 吏曹에서 녹패 발급을 일괄적으로 담당하였다. 그런데 1466년(世祖 12) “東·西班 녹패는 吏曹와 兵曹에서 分掌한다”는⁵²⁾ 전교에 따라, 그 다음 해인 1467년(世祖 13) 처음으로 鄭軾(1407~1467)의 녹패가 兵曹에서 발급되었다.⁵³⁾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김혁과 박성호는 녹패 발급 업무의 吏·兵曹 분장 시기를 1466년이라 밝혔다.⁵⁴⁾ 게다가 1450년(文宗 卽位)의 실록 기사 가운데, “兵曹는 告身에 서명 후 吏曹와 戶曹에 移關하면 이조는 녹패를 발급해 주고 호조는 光興창에 移牒한다”⁵⁵⁾고 한 것에서 1466년

사자2047)가 있다. (『經國大典』 戶典, 祿科: “公主·翁主, 夫歿, 從夫職祿.”)

42)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상략)無祿官【義禁府堂下官及提舉·提檢·別坐·別提·別檢等】, 仕滿三百六十而敘.”

43) 『經國大典』 吏典, 奉朝賀.

44) 『續大典』 吏典, 祿牌: “祿牌, 禁推人員, 未照律前, 毋得受祿, 且勿舉擬.”

45) 김혁, 「朝鮮時代 祿牌 研究」, 『고문서연구』 20, 2002, 187~188쪽; 박성호, 앞의 논문, 74~77쪽.

46) 『高麗史』 志30, 百官一, 尙書省: “(상략)恭愍王, (중략) 十一年, 罷尙書省, 復置三司.”

47) 『高麗史』 列傳三十三, 諸臣, 金子粹: “(상략)又三司, 官數至十五, 署祿牌外, 無餘事. …”

48) 박성호는 『高麗史』와 1361년 김운보 전사본 녹패를 통해 1362년(恭愍王 11) 상서정혁과 이후 녹패 발급 기관을 三司로 추정하였다. (박성호, 앞의 논문 83쪽.)

49) 박성호, 앞의 논문, 83~85쪽.

50) 『太宗實錄』 1년(1401) 7월 13일: “(상략) 直門下爲知司諫院事, 補闕爲獻納, 拾遺爲正言, 內史舍人爲內書舍人, 三司爲司平府, 義興三軍府爲承樞府, 學士爲提學. (이하 생략)”

51) 『太宗實錄』 5년(1405) 1월 15일: “壬子/改官制. (중략) 至是革司平府, 歸之戶曹; 承樞府歸之兵曹; 以東西班銓選, 歸之吏兵曹; 分政府庶務, 歸之六曹. …”

52) 『世祖實錄』 12년(1466) 11월 18일: “傳曰: 東·西班祿牌, 吏·兵曹分掌. 且諸司上直省記勿啓. 但闕內諸司, 在前吏曹啓省記者, 令兵曹啓之.”

53) 1467년 鄭軾 녹패.

54) 김혁, 앞의 논문, 188쪽; 박성호, 앞의 논문, 85쪽.

이전에 녹패 발급 업무의 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는 녹패 발급 관청을 시기별로 분류한 것이다.

<表 II-2> 녹패 발급 관청의 시기별 변화

연번	시기	담당 기관	발급 대상
1	1392년 ~ 1401년	三司	文官·武官
2	1401년 ~ 1405년	司平府	文官·武官
3	1405년 ~ 1466년 頃	吏曹	文官·武官
4	1466년 頃 이후~	吏曹	文官
		兵曹	武官

그렇다면 이조와 병조에서 녹패를 발급하는 과정은 어떠했을까? 이조와 병조의 文選司와 武選司는 각각 문관과 무관의 녹패 발급 업무를 담당였고,⁵⁵⁾ 이조에서는 祿牌色이⁵⁷⁾ 병조의 경우 正色이 녹패 발급을 담당하였다.⁵⁸⁾ 문무관원이 녹관에 임명되면, 이조와 병조에서는 教旨에 서명한 후 녹패를 발급하였다.⁵⁹⁾ 5품 이하의 경우 司憲府와 司諫院에서 臺諫의 署經를 거쳐 이조와 병조에 牒을 내려주어야 교지가 발급되었는데, 대간의 서경제도는 『續大典』 시행 이후부터 폐지되었다.⁶⁰⁾ 다음은 문무관원의 녹패 발급 과정이다.

- ① 官職 除授 → (5품 이하: 司憲府와 司諫院에서 臺諫의 署經 →)
- ② 吏·兵曹: 告身에 署名 및 祿牌 發給 → ③ 文武官員: 祿牌 수령

위의 과정을 거쳐 녹패가 발급되면 議政과 上輔國의 녹패는 발급 관청의 郎官이 전해 주며,⁶¹⁾ 『承政院日記』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⁶²⁾ 그 외의 문

55) 『文宗實錄』 즉위년(1450) 6월 22일: “傳旨兵曹: (상략) 兵曹亦待臺牒到曹, 隨即署給告身, 卽移吏·戶曹, 吏曹毋留滯給祿牌, 戶曹隨到隨移廣興倉, 使上項人, 趁時受祿受料.”

56) 『經國大典』 吏典, 六曹, 正二品衙門: “吏曹 文選司: 掌宗親·文官·雜職, 贈職·除授·告身·祿牌, 文科·生員·進士 賜牌, 差定·取才·改名及贓汚·敗常人錄案等事”; “兵曹 武選司: 掌武官·軍士·雜職 除授·告身·祿牌·附過·給暇及武科等事.”

57) 『願齋亂藁』 권11, 二十日乙巳: “吏曹 通符二天. 下吏 政色·文選色·祭享色·考功色·省記色·八道老職色·八道空名色·祿牌色·定送色·計仕色·吏布色·解由色. …”

58) 『六典條例』 兵典, 兵曹: “正色: 掌武官·軍士·雜職 除授·告身·祿牌·附過·給暇及武科等事.”

59) 김혁, 앞의 논문, 188쪽 <표 1> 참고.

60) 『大典通編』 吏典, 告身: “【署經給告身之法, 今廢. 故續大典以署經別立目.】”

무관원은 본인이 직접 녹패를 수취하였다.⁶³⁾ 문무관원은 기본적으로 교지⁶⁴⁾와 녹패를 지참하고 자신의 녹과에 해당하는頒祿 일자에 廣興倉에 가면 녹봉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⁶⁵⁾ 『大典通編』 시행 이전에는 녹관이 호조에 녹봉 지급을 요청하는 給祿所志⁶⁶⁾라는 문서가 더 필요했다.

2. 頒祿 절차

녹관은 교지와 녹패를 광흥창에 證憑문서로 제시하여 녹봉을 수령하는데,⁶⁷⁾ 上輔國 이상의 녹과는 頒祿日 하루 前 광흥창 郎廳이 직접 가서 받아오게 되어 있었다.⁶⁸⁾ 宗親과 奉朝賀 및 初仕者를 제외하고 이미 官職에 종사하던 관원이 새로이 녹직에 제수될 경우, 우선 解由를 거친 뒤에야 녹패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⁶⁹⁾ 해유는 前任官員과 後任官員 사이에 회계와 물품 출납 등에 대한 사무의 인계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녹패에 해유를 마쳤다는 의미로 ‘由無’를 써넣고,

61) 『大典條例』 吏典, 吏曹, 祿牌: “議政及上輔國祿牌, 本曹郎官傳受.”

62) 『承政院日記』 顯宗 12년(1671) 6월 30일: “戶曹啓曰: 卽接廣興倉所報, 則倉官, 以祿牌受來次進去. 淑安公主房, 則公主祿牌, 吏曹, 時未送來, 故不得受來, 而祿牌之尙不成送. (중략) 吏曹郎官之任意分別, 終不領納, 殊甚駭異, 當該郎廳, 先罷後推.”

63) 『頤齋亂藁』 권10, 戊子(1768) 初五日庚寅: “覓參奉官教及今年祿牌一丈, 于主人震泰封藏.” (震泰는 金震泰로 경주인이다.)

64) 녹관이 발급받는 교지를 祿官教라고도 한다. 『頤齋亂藁』에서는 녹봉을 수령하기 위해 관교를 한 장 더 발급한 기록이 있으며, 『承政院日記』에서는 잃어버린 관교를 捕卒이 훔쳐간 사실을 언급하며 뒤이어 “祿官教”라고 지칭하였다. 이를 통해 녹봉 수령을 위해 여분을 발급받은 교지를 녹관교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교와 녹관교를 모두 교지로 지칭하였다. (『頤齋亂藁』 권7, 二十四日壬辰: “且受祿時, 須有官教祿牌俱存然後, 方可憑照受祿, 則官教尤不可不別出一件, 以爲留置京中之地. 至是果出別件官教…”; 『承政院日記』 正祖 16년(1792) 3월 16일: “去月頒祿時, 曹隸見失官教於倉所捕卒而來, (중략) 豈敢奪取祿官教, …”)

65) 『太祖實錄』 1년(1392) 7월 28일: “廣興倉: 掌收支百官祿俸事. …”

66) “給祿所志”라는 용어는 『承政院日記』와 『頤齋亂藁』의 용례를 참고하였다. 김혁은 그의 논문 「조선시대 祿牌 연구」에서 “祿所志”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承政院日記』 肅宗 29년(1703) 6월 22일: “據其給祿所志, 考准由越有無”; 『承政院日記』 肅宗 29년(1703) 7월 21일: “以爲無給祿所志, 而直爲受出”; 『頤齋亂藁』 권38, 二十六日己亥: “留司使令, 告當於明日, 謝恩後, 就吏曹, 作給祿所志, 二十八日, 赴廣興倉受祿.”)

67) 『眉巖日記』 권10, 十四日壬午: “自二十三日, 奴子持祿牌·官教受, 夏秋二等祿于廣興倉, 連日以雨, 不得受.”; 『頤齋亂藁』 권7, 十四日壬午: “(상략)余曰: 似聞參奉在京, 則受祿京倉而受祿時, 并以官教及祿牌, 準照云, 此果然否. 海判曰然矣. …”

68) 『大典條例』 권4, 戶典, 廣興倉: “上輔國以上祿牌, 頒祿前一日, 郎廳躬進受出.”

69) 『世宗實錄』 5년(1423) 6월 23일: “吏曹啓: ‘中外官吏遷官後, 必考前任解由, 乃給朝謝祿牌. 其爲新官者交代, 舊官解由, 不卽用心成給, 因此未得及期受祿. 請新官亦考舊官交代解由, 方給祿牌.’ 從之.”

越俸⁷⁰⁾이 없다는 의미로 ‘越無’를 기록한다.⁷¹⁾ 由無와 越無에 관한 것은 『萬機要覽』 財用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월 20일이 지난 후에 吏曹·兵曹에서 내월에 百官에게 줄 녹을 成冊하여 호조에 보내면 (호조에서는) 越俸과 未解由의 유무를 考準하고 【명칭하기를 ‘由無’·‘越無’라 하여 祿牌에 써넣음】 廣興倉에 分付하여 5일로 分排해서 頒下하는데, (이하 생략)⁷²⁾

호조에서는 料祿色을 두어 頒祿과 放料를 관리하도록 하였고,⁷³⁾ 광흥창에서는 녹과에 따라 정해진 일자에 반록하였다. 『經國大典』을 비롯한 법전에서는 녹과에 따라 반록 일자를 구분하고 있다.⁷⁴⁾ 그런데 六朔頒祿制 시기의 녹과는 상고할 수 없고 다만, 1월 7일과 7월 7일 두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經國大典』에 의하면 四孟朔頒祿制의 반록 일자는 1월·4월·7월·10월의 7일부터 14일까지이며,⁷⁵⁾ 月俸制로 전환된 이후로는 매월 25일에서 29일까지 반록 행정이 이루어졌다.⁷⁶⁾ 다음은 육삭반록제·사맹삭반록제·월봉제에 따른 반록 일자를 나타낸 표이다.⁷⁷⁾

<表 II-3> 녹봉제별 반록 일자

녹봉제	六朔頒祿制	四孟朔頒祿制 (每孟朔)		月俸制 (每月)	
		1월 7일	제1과~제4과	7일	제1과~제5과 堂上
제5과~제6과	8일				
제7·8과	9일		동5과 堂下 ~ 제8과	26일	
제9·10과	10일				
7월 7일	제11·12과	11일	제9과~제10과	27일	
	제13·14과	12일	제11과	28일	
	제15·16과	13일			
	제17·18과	14일	제12과~제13과	29일	

70) 문무관원에 대한 越俸은 지방 수령에 대한 越俸의 의미와 다른 것으로 『典律通補』에는 “越俸毋過七等疊犯者從重論【等以朔計】”라고 하였다. 당시는 月俸制가 시행되던 시기로 越1等은 한달치 녹봉을 감한다는 뜻이 되는데, 이를 근거로 四孟朔頒祿制에서 越1等은 석달치 녹봉을 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典律通補』 戶典, 解由.)

71) 녹과에 ‘由無’와 ‘越無’를 기록하는 규정이 시행된 시기는 상고할 수 없으나, 현전 녹과 가운데 1703년 이해조 녹과(제친 한수 연안이씨 소장)에서 최초로 확인할 수 있다.

72) 『萬機要覽』 財用編二, 料祿: “每月念後, 吏·兵曹以來月所受百官祿成冊. 修送戶曹, 則考準越俸與未解由有無. 【名之曰由無·越無. 書填於祿牌】 分付廣興倉.”

육삭반록제와 사맹삭반록제는 해당 시기의 녹봉을 미리 주었는데 월봉제가 시행된 이후로는 來月の 녹봉을 미리 지급하였다.⁷⁸⁾

이 절에서는 『大典通編』의 시행 전후로 달라지는 반록 절차에 대하여 고찰해 볼 것이다.

1) 『大典通編』 시행 이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녹관이 녹봉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교지와 녹패를 지참해야 했는데, 교지와 녹패 외에 『大典通編』 시행 이전에는 급록소지가 더 필요했다. 1618년(光海君 10) 호조가 올린 啓 가운데 병조에서는 군직 승강에 따라 호조에 開錄하여 移文하지만, 이조와 병조에서 舉案을 호조에 보내는 규례가 없으므로 이후로는 규례로 정할 것⁷⁹⁾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1746년(英祖 22)에 간행된 『續大典』 戶典, 祿科條에는 “頒祿 時 西班牙의 行職堂上官은 兵曹가 職銜과 姓名을 具錄하여 移牒하면 戶曹에서 對照하고 廣興倉에 맡겨 題給한다”⁸⁰⁾라는 조항이 있다. 이를 통해 병조에서는 行職堂上官에 한하여 직함과 성명을 기록하여 호조 移文하였기 때문에 호조에서는 병조 행직당상관의 녹관 명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병조의 행직당상관을 제외한 녹관은 녹봉을 수령하기 위해 호조에서 해유를 마쳤다는 확인을 받아야 했다. 이때 발급되는 것이 바로 給祿所志이다.

급록소지에 관한 사항은 1618년(光海君 10) 실록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조가 아뢰기를, “평상시 頒祿할 즈음에 軍職은 승강이 있기 때문에 兵曹에서 開錄하여 移文합니다. 그리고 小各司의 관원에 대해서는 勤慢을 감독하기 때문에 置簿하여 상고한 뒤 녹봉을 지급하는 규례가 있으며, 기타 당하의 微官은 본조에 所志를 올

73) 『大典通編』 戶典, 料祿色: “掌頒祿放料”

74) 『大典通編』 戶典, 祿科.

75) 『經國大典』 戶典, 祿科.

76) 『續大典』 戶典, 祿科.

77) 『大典通編』 戶典, 祿科.

78) 『續大典』 戶典, 祿科: “各科祿分作每朔散料, 前月頒賜.”

79) 『光海君日記』 10년(1618) 10월 9일: “戶曹啓曰: 常時頒祿之際, 軍職有升降, 故兵曹開錄移文, (중략), 令吏兵曹, 使之先期開錄移文宜當. …”

80) 『續大典』 戶典, 祿科: “頒祿時, 西班牙行職堂上, 則兵曹具錄職姓名移文, 本曹照訖, 付廣興倉題給.”

리면 ‘給’ 자를 써준 뒤에 녹봉을 지급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하 생략)”⁸¹⁾

언제부터 급록소지를 발급하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軍職 堂下 微官⁸²⁾은 호조에 소지를 올려 확인을 받은 뒤에 녹봉을 수령할 수 있었다.

다음 <表 II-4>는 현전하는 급록소지의 목록이다.

<表 II-4> 녹봉 지급 청원 소지

연번	발급일자	발급자	관직	수취자
1	1653.1	張應一宅 戶奴	龍驤衛司直 (정5품)	호조
2	1657.10	宋浚吉宅 戶奴 生男	世子侍講院贊善 (정3품 당상)	호조
3	1748.2	尹德熙宅 奴 順同	司饗院主簿 (종6품)	호조
4	1783.7	尹孝寬宅 奴 老味	洪忠都事 (종7품)	호조

급록소지는 군직 당하의 미관들이 올리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김혁은 『願齋亂藁』에서 황운석의 관직을 고찰한 뒤 하급 관원의 경우에만 급록소지를 발급한다고 하였다.⁸³⁾ 그런데 1657년(孝宗 8) 宋浚吉宅 戶奴 生男은 당시 宋浚吉(1606~1672)이 東班 정3품 당상관인 世子侍講院 贊善임에도 급록소지를 올렸다. 따라서 동반 당상관도 또한 급록소지를 올리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동반 당상관임에도 급록소지를 올린 까닭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음은 녹봉을 수령하기 위해 1748년(英祖 24) 尹德熙宅 奴 順同이 올린 급록소지⁸⁴⁾이다.

81) 『光海君日記』 10년(1618) 10월 9일: “戶曹啓曰: 常時頒祿之際, 軍職有升降, 故兵曹開錄移文. 小各司官員則程督勤慢, 故有置簿考准後, 給祿之規, 其他堂下微官, 有呈所志于本曹, 題一給字, 然後給祿之例. …”

82) 정3품 당하관 이하를 일컫는 것인지 자세하지 않다.

83) 김혁, 앞의 논문, 195쪽.

84) 해남 연동 해남윤씨 녹우당 소장. (『고문서집성』3, 100쪽.)

<圖 II-1> 1748년 윤덕희택 노 순동 소지 (44.3×26.0cm)

	<p>① 司饗院主簿 尹德熙宅 奴 順同 [左寸] ② 右所志爲白內等, 奴矣上典, 今春等付祿爲有置, 依例給祿事, 該倉良中分 ③ 付施行爲只爲, ④ 行下向教是事. ⑤ 戶曹 處分. ⑥ 戊辰二月 日 ⑦ 戶曹 [着押] ⑧ (題辭)前例 ⑨ 題給 ⑩ 由無李[着押] ⑪ 越無李[着押]</p>
	<p>① 사옹원주부 윤덕희택 노 순동 [左寸] ② 이 소지를 올리는 것은 저의 상전이 이번 春等に 付祿하였으므로 例에 따라 給祿할 것을 該倉(廣興倉)에 ③ 分付하여 시행하도록 ④ 명령하실 일입니다. ⑤ 호조에서 처분해 주십시오. ⑥ 戊辰(1748)년 2월 일 ⑦ 戶曹 [着押] ⑧ (題辭) 前例대로 ⑨ 題給할 것. ⑩ 由無李[着押] ⑪ 越無李[着押]</p>

順同이 호조에 제출한 소지의 내용은 광흥창에 分付하여 상전의 녹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호조에서는 前例대로 題給할 것을 명령하였다. 급록소지를 올린 후 호조의 처분을 받은 자는 교지와 녹패, 그리고 급록소지를 지참하고 광흥창에서 가서 녹봉을 수령할 수 있었다. 다음 <表 II-5>는 『大典通編』 시행 이전 반록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表 II-5> 『大典通編』 시행 이전 반록 과정

- | |
|--|
| ① 祿官: 解由 成出
→ ② 吏·兵曹: 教旨·祿牌 발급
→ ③ 祿官: 戶曹에 給祿所志 제출
→ ④ 戶曹: 越俸·未解由 與否 조사 후 題給
→ ⑤ 廣興倉: 教旨·祿牌·給祿所志 확인 후 반록 |
|--|

녹관 가운데 미관말직의 경우 해유를 마친 뒤에 급록소지를 호조에 올린다. 호조에서 由無와 越無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題給을 해 준 뒤에야 녹관은 비로소 교지와 녹패, 급록소지를 지참하고 광흥창에 가서 녹봉을 수령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해유를 마쳤다는 것을 확인하는 급록소지가 『大典通編』의 시행 이후 더 이상 발급되지 않게 된다. 이어서 『大典通編』 시행 이후 반록과 관련하여 변화된 행정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 볼 것이다.

2) 『大典通編』 시행 이후

『大典通編』 戶典, 祿科條에는 “實職과 軍職⁸⁵⁾의 녹봉은 吏曹와 兵曹의 祿成冊 및 移文한 (祿官의) 數에 따라 頒給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⁸⁶⁾ 그리고 앞서 살펴본 『萬機要覽』 財用編의 내용에서도 호조에서 越俸과 未解由 여부를 考準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續大典』에서는 서반 행직당상관에 한하여 직함과 성명을 기록하여 호조에 移文하도록 했던 것에서 그 대상이 녹직에 임명된 모든 문무관원으로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大典通編』이 시행된 이후 7년만인 1793년(正祖 17) 호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節目을 올려 아뢰었다.

녹봉을 지급하는 事體는 지극히 존엄하고 중대한 것인데, 兵曹에는 녹봉에 관한 대장이 있기는 하지만 난잡함이 매우 심합니다. 그리고 吏曹에서는 원래 대장을 만들어 보내준 예가 없으므로 창고에 속한 구실아치가 私의으로 官案을 베껴서 이를 가지고 녹봉을 지급합니다. 당연히 (녹봉을) 받아야 할 사람인지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인지를

85) 軍職遞兒(上護軍·大護軍·護軍·副護軍·司直·司果·司正·司猛·司勇)를 말한다.

86) 『大典通編』 戶典, 祿科: “實職·軍職祿, 一依吏·兵曹祿成冊及移文數, 頒給.”

해당 창고에서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지급하여 손실을 당하는 폐단이 종종 있습니다. 이 뒤로는 매달 21일에 녹봉을 받아야 할 인원을 吏曹와 兵曹가 일일이 조사하여 도장을 찍은 다음 명부를 만들어서 호조에 보내면, 호조의 郎官이 解由와 越等이 있고 없고를 조사하여 응당 지급해야 할 인원의 총수를 죽 적어서 該曹에 이첩하여 녹봉을 지급할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하 생략)⁸⁷⁾

위의 절목은 『大典通編』 戶典, 祿科條의 규정처럼 이조와 병조에서 반록 대상자의 명부를 만들고, 호조는 명부를 기반으로 미해유와 월봉의 유무를 고준하도록 하였다. 실제로도 1783년 이후에 발급된 급록소지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관청 대 관청간의 문서행정으로 녹관의 미해유와 월봉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조와 병조에서 녹관 명부를 작성하여 해유와 월등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기록은 『六典條例』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⁸⁸⁾

다음 <表 II-6>은 『大典通編』 시행 이후 반록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表 II-6> 『大典通編』 시행 이후 반록 과정

① 祿官: 解由 成出 → ② 吏·兵曹: 對 祿官 - 教旨·祿牌 발급 對 戶曹 - 每月 21日 문무관원 祿成冊 작성하여 移文 → ③ 戶曹 郎官: 越俸·未解由 與否 조사 후 녹관 명부 작성 하여 廣興倉에 移文 → ④ 廣興倉: 教旨·祿牌 확인 후 반록

『大典通編』 시행 이후, 녹봉 수령자는 교지와 녹패만을 가지고 녹봉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大典通編』 시행 이후, 급록소지와 성격이 다른 반록 시憑考할 立旨를 成給해 달라는 소지를 올린 경우가 있다. 다음은 입지 성급 소지 목록으로 현재까지 조사된 입지 성급 소지의 내용은 모두 같다.

87) 『正祖實錄』 17년(1793) 9월 11일: 「戶曹以廣興倉釐弊節目啓」. “一, 班祿事體, 至爲尊重, 而兵曹雖有祿簿, 淆亂忒甚, 吏曹元無修送之例. 倉吏私贖官案, 以此頒給, 當受與不當受, 該倉不得詳知, 故濫下見失之弊, 種種有之. 此後每月二十一日, 應受人員, 自吏兵曹一一查正, 踏印成冊, 移送戶曹, 則戶曹郎官, 查究解由·越等有無, 計開當頒都數付之, 該曹以爲頒下之地. …”(班祿事體는 頒祿事體의 오기인 듯 하다.)


88) 『六典條例』 권4, 戶典, 廣興倉: “頒祿. (중략) 依吏兵曹祿成冊, 自戶曹考準越俸及未解由, 出來逐朔頒給.”

<表 II-7> 立旨 成給 소지 목록

연번	발급 일자	발급자	당시 관직	수취자
1	1799.11	趙弘鎮宅 奴 同伊	副司正(중7품)	兵曹
2	1806.9	趙弘鎮宅 奴 同伊	副司直(중5품)	兵曹
3	1808.1	趙弘鎮宅 奴 同伊	副司正(중7품)	兵曹
4	1810.5	尹孝寬宅 奴 得伊	副司正(중7품)	兵曹
5	1816.6	趙弘鎮宅 奴 同伊	副司直(중5품)	兵曹
6	1817.4	趙弘鎮宅 奴 同伊	副司直(중5품)	兵曹
7	1818.4	趙弘鎮宅 奴 同伊	副司直(중5품)	兵曹

다음은 1806년에 발급된 趙弘鎮(1743~1821)宅 奴 同伊의 소지⁸⁹⁾이다.

<圖 II-2> 1806년 조홍진택 노 동이 소지 (50.0×29.5cm)

	① 副司直趙弘鎮宅 奴 同伊 [左寸]
	② 右所志爲白內等, 奴矣上典 祿官教未及成出是如乎, 受祿時, 憑考次, 立旨成給事.
	③ 行下爲只爲,
	④ 行下向教是事.
	⑤ 兵曹 處分.
	⑥ 丙寅九月 日 所志
	⑦ 兵曹堂上 [着押]
	⑧ (題辭)立旨成給 五月下
	⑨ 向事.
	⑩ 廿五
⑪ [官印] 八月下	
① 부사직조홍진택 노 동이 [左寸]	
② 이 所志를 올리는 것은 저의 상전 祿官教가 아직 成出되지 않았기에 受祿할 때 밉고하도록 立旨를 成給하라는	
③ 分付를 내리시도록	
④ 명령하실 일입니다.	

89)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의산古文2102.4-406)

	⑤ 병조 당상에서 처분해 주십시오.
	⑥ [着官] [着押]
	⑦ 丙寅(1806)년 9월 일 所志
	⑧ (題辭) 立旨를 五月下
	⑨ 成給해 줄 일.
	⑩ 25일
	⑪ [官印] 八月下

위 소지는 조흥진의 奴인 동이가 병조에 제출한 것으로, 上典인 조흥진의 교지가 아직 성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녹봉을 수령할 때 빙고할 수 있는 입지를 성급해달라는 내용이다. <圖 II-2>의 입지에는 녹패 발급 다음 해인(1807년) 5월과 8월에 녹봉을 반록하였음을 나타내는 “五月下”·“八月下”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교지와 녹패가 발급되기 전, 혹은 발급된 후에도 처분받은 입지를 통해 녹봉을 수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大典通編』 시행 이전 녹관은 교지와 녹패 그리고 급록소지를 지참하고 반록 일자에 맞추어 광흥창에서 가서 녹봉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大典通編』 시행 이후에는 이조와 병조에서 녹봉을 수령하는 관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호조 낭관이 해유와 월봉 유무를 조사하였다. 따라서 녹봉을 수령할 당사자는 더 이상 급록소지를 발급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교지와 녹패만으로 녹봉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大典通編』 시행 이후에 교지가 성급되지 않아 녹봉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이조와 병조에 반록 시 빙고할 입지를 청구하는 소지를 제출하였고, 입지를 성급받은 자에게는 교지와 녹패가 없더라도 녹봉을 반사한 경우가 있었다.

여 백

III. 祿牌 樣式과 크기

조선시대 녹봉제는 六朔頒祿制에서 四孟朔頒祿制(1439, 世宗 21)로, 그리고 1701년(肅宗 27) 月俸制로 바뀌었다. 그러나 祿牌式은 『經國大典』에서 법제화된 이후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준행되었다. 조선 초기 녹패 양식과 『經國大典』 녹패식, 그리고 형태에 대한 사항은 녹패 연구자들에 의하여 연구되었다.⁹⁰⁾ 그렇지만 『經國大典』 이후로 나타나는 녹패 양식의 변화와 녹패 크기에 대한 고찰은 미편한 실정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녹패 양식에 대한 통시적인 검토와 함께 녹패의 크기에 대한 연구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祿牌 양식과 녹패의 크기, 그리고 녹패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검토해 볼 것이다. 우선 1절에서는 기왕의 연구를 기반으로 녹패식이 변화되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본 후, 『經國大典』에서 법제화된 녹패식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녹패 양식을 녹패식이 기록된 안쪽 면과 그 背面인 바깥쪽 면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 것이다. 이어서 2절에서는 녹패가 크기를 달리 하여 발급되는 기준에 대한 규명과 조선 후기에 등장하게 되는 木版式 녹패⁹¹⁾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祿牌 樣式

조선 개국 이후 『經國大典』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약 100여 년 동안 녹패 양식은 변화를 거듭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박성호의 연구를 기반으로 『經國大典』에서 녹패식이 법제화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녹패를 안쪽 면과 바깥쪽 면으로 나누어 안쪽면의 녹과 표기와 발급 관원, 그리고 인장과 바깥쪽면의 관직·성명·녹과를 기록한 外面 表記⁹²⁾에 대하여 검토해볼 것이다.⁹³⁾

90) 김혁, 「朝鮮時代 祿牌 研究」, 『고문서연구』20, 2002, 203~204쪽; 박성호, 「麗末鮮初 祿牌의 제도와 양식」, 『고문서연구』43, 2013.

91) 김한아름은 “到付·月日·承文院을 목판에 새겨 인쇄하였다”라고 하여 목판에 새겨 찍어 내는 문서를 “印刷”라고 지칭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방식을 木版式이라 지칭하였다. (김한아름, 「朝鮮後期 尺文 研究 : 京司 發給 尺文의 板式과 行移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28쪽.)

92) “外面 表記”라는 용어는 黃胤錫(1729~1791)이 『頤齋亂藁』에서 “祿牌外面大書”라고 한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 (『頤齋亂藁』 권34, 三十日戊辰.)

93) 1394년 도응 녹패에서 1467년 정식 녹패까지 설명은 박성호의 논문을 근거로 하였다. 박성호, 앞의 논문, 72~82쪽.

1) 朝鮮 初期 祿牌 樣式과 『經國大典』 祿牌式

조선 초기 『經國大典』에서 녹패식이 법제화되기 이전에 발급된 녹패 가운데 현재까지 조사된 녹패는 모두 7건이다. 이 가운데 1398년(太祖 7) 金芸寶(생물년 미상)와 1414년(太宗 14) 柳觀(생물년 미상) 녹패는 전사본으로 전한다. 실물로 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녹패는 1394년 都鷹(생물년 미상) 녹패인데, 다음은 1394년 도응 녹패에서 1467년 鄭軾(1407~1467) 녹패를 정서한 것이다.⁹⁴⁾

<表 Ⅲ-1> 조선 초기 발급 녹패 정서

※ □은 결락, () 안의 내용은 추정된 것

연번	문서명	녹패 정서
1	1394년 도응 녹패	王命准賜, 宣節將軍·興威衛左領將軍 都鷹, 今甲戌年祿, 第玖科, 壹佰柒拾石, 給京倉者. 洪武貳拾柒年拾月 日. 奉正大夫·三司右諮議 朴 [着押] [宣賜之印] 3顆
2	1398년 김운보 녹패	王命准賜, 嘉靖大夫·檢校中樞院副使·兼判司僕寺事 金芸寶, 今戊寅年祿, 第九科, 一百七十石, 給京倉者. 洪武三十一年正月 日. 朝散大夫·三司右諮議 閔 [着押] [宣賜之記] ⁹⁵⁾
3	1414년 류관 녹패	王命准賜, 資憲大夫·司憲府司憲·寶文閣提學·兼判典祀寺事 柳(觀), 今甲午年祿, 第三科, 二百九十石, 給京倉者. 永樂十二年六月 日. 推忠翊戴開國功臣·正憲大夫·吏曹判書·集賢殿大提學·世子左賓客·西原君 韓 [着押] [宣賜之印 추정]
4	1449년 배임 녹패	奉敎賜, 進義副尉·右軍攝司勇 裴裨, 今己巳年祿, 第拾捌科, 貳拾石, 給京倉者. 正統拾肆年拾月 日. 宣敎郎·守吏曹佐郎 李 [着押] [頒賜之印] 1顆

94) 박성호, 앞의 논문, 75~82쪽.

5	1452년 배임 녹패	奉敎賜, 修義副尉·右軍攝司正 裴裨, 今壬申年祿, 第拾陸科, 參拾石, 給京倉者. 景泰參年柒月 日. 承議(郎)·吏曹佐郎·知製敎·兼承文院副校理 尹 [着押] [頒賜之印] 1顆
6	1463년 정식 녹패	奉敎, 資憲大夫·知中樞院事·慶尙道左道兵馬都節(制使)·知招討營田事 鄭軾, 今癸未年祿, 第參科, 貳佰玖拾石, 給京倉者. 天順柒年正月 日. 推忠左翼功臣·崇政大夫·吏曹判書·世子左賓客·延城君 (朴 [着押]) [頒賜之印] 1顆
7	1467년 정식 녹패	兵曹奉(敎賜), 正憲大(夫·中)樞府同知事·兼五(□…□ 鄭軾), 今丁亥年, 第肆科祿者. 成化三年正月 日. 參判臣朴 [着押] 行正郎 [印文: 未詳] 1顆

다음 표는 <表 Ⅲ-1>의 정서를 바탕으로 조선 초기 발급된 녹패의 양식과 구성요소의 변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⁹⁵⁾

<表 Ⅲ-2> 조선 초기 녹패 양식 변화

연번	시기	녹패 양식
1	1392년 ~ 1432년	王命准賜, 某官(具銜) 某(姓名), 今某年祿, 第幾科, 幾石, 給京倉者. 年號某年某月日 某官(具銜) 某(姓)[着押] [宣賜之印]
2	1432년 ~ 1466년	奉敎賜, 某官(具銜) 某(姓名), 今某年祿, 第某科, 幾石, 給京倉者. 年號某年某月日 某官(具銜) 某(姓)[着押] [頒賜之印]

95) 김운보 녹패가 전사되어 있는 황윤석 『頤齋亂藁』에는 “宣賜之記”로 되어있는데, 박성호는 당시 인문은 “宣賜之印”이었으므로 이는 황윤석의 誤記라고 주장하였다. (『頤齋亂藁』 권34, 三十日戊辰: “安宣賜之記…”; 박성호, 앞의 논문, 77쪽.)

3	1466년 ~ 『經國大典』 시행 이전	某曹奉(敎賜), 某官(具銜) 某(姓名), 今某年, 第某科祿者. 年號某年某月日 某官(具銜) 某(姓)[着押] … 某官(具銜) 某(姓)[着押] [印]
---	----------------------	---

〈表 III-3〉 조선 초기 녹패의 구성요소 변화

연번	구성요소	시기		
		조선 건국 ~ 1432년	1432년 ~ 1466년	1466년 ~ 『經國大典』 시행 이전
1	始面	王命準賜	奉敎賜	某曹奉敎賜
2	被頒祿者	具銜姓名	具銜姓名	具銜姓名
3	祿科 表記	今某年祿, 第幾科	今某年祿, 第幾科	今某年, 第幾科
5	頒祿額	幾石	幾石	·
6	支給倉	給京倉者	給京倉者	·
7	發給日	年號某年某月日	年號某年某月日	年號某年某月日
8	發給者 [署名]	某官(具銜) 某(姓)[着押]	某官(具銜) 某(姓)[着押]	某官(具銜) 某(姓)[着押] … 某官(具銜) 某(姓)[着押]
9	印章	宣賜之印	頒賜之印	[印文: 未詳]

녹패의 양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시면·녹과 표기·반록액·지급창·발급자·印章이다. 그 가운데 반록액과 지급창은 1466년 이후부터 기재되지 않았다. 1394년 도응 녹패의 시면은 “王命准賜”⁹⁷⁾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녹과와 반록액, 그리고 지급창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三司 右諮議의 着押이 있어 삼사에서 녹봉 지급 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급창은 京倉인데 곧 光興창을 가리키며, 인장은 “宣賜之印”이 답인되었다. 박성호는 전사본으로 전하는 1361년(恭愍王 10) 김운보 녹패를 통해 조선 초기 녹패 양식이 고려의 것을 답습했다는 것을 규명하였고,⁹⁸⁾ “王命准賜” 방식을 따르고 있는 녹패는 전사본으로 전하

96) 박성호, 앞의 논문, 91~92쪽 참고.

97) 박성호는 녹패 始面의 용어를 중심으로 공민왕대 “宣命”, 고려말에서 1432년(世宗 14)까지 “王命准賜”, 1432년부터 1466년(世祖 12)까지 “奉敎賜”, 마지막으로 1466년 이후를 “某曹奉敎賜”의 『經國大典』양식으로 나누고 있다. (박성호, 앞의 논문, 90~92쪽.)

98) 박성호, 앞의 논문, 90~91쪽.

는 1398년(太祖 7) 김운보와 1414년(太宗 14) 류관 녹패가 있다.

1449년(世宗 31)과 1452년(端宗 卽位)에 발급된 褱褱(생물년 미상) 녹패의 시면은 “王命准賜”가 아닌 “奉教賜”로 시작한다. 인장이 1432년(世宗 14) 전교 이후 “宣賜之印”에서 “頒賜之印”으로 바뀐 것에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⁹⁹⁾ 배임은 무관이었음에도 이조에서 녹패를 발급하였는데, 이를 통해 이조에서 문무관 녹패를 모두 발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녹봉제가 육삭반록제에서 사맹삭반록제로 변화되었으나, 녹패에 녹과와 반록액과 지급창을 모두 표기하는 방식은 여전히 도응 녹패와 동일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정식 녹패는 1463년(世祖 9)과 1467년(世祖 13)에 발급된 2건이 전한다. 1463년 녹패의 시면은 1452년 배임 녹패의 “奉教賜” 방식을 따르지 않고, 다만 “奉教”로만 시작하고 있다. 1467년 녹패는 “兵曹奉教賜”로 시작하는데, 이는 『經國大典』 녹패식 같으며, 이와 같은 시면 표기는 녹패 발급 관청의 분장이 이루어진 것을 증명해 준다. 그리고 이전의 녹패가 녹과·반록액·지급창을 제시하였다면, 1467년 정식 녹패는 “第某科祿者”만을 표기하여 이전보다 단순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인장을 확인할 수 없으나 “兵曹之印”이 담인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¹⁰⁰⁾ 1467년 정식 녹패는 『經國大典』에서 녹패식이 법제화되기 전의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經國大典』 녹패식을 따르고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녹패는 1491년 병조에서 발급된 金宗直(1431~1492) 녹패이다. 『經國大典』 녹패식과 김종직 녹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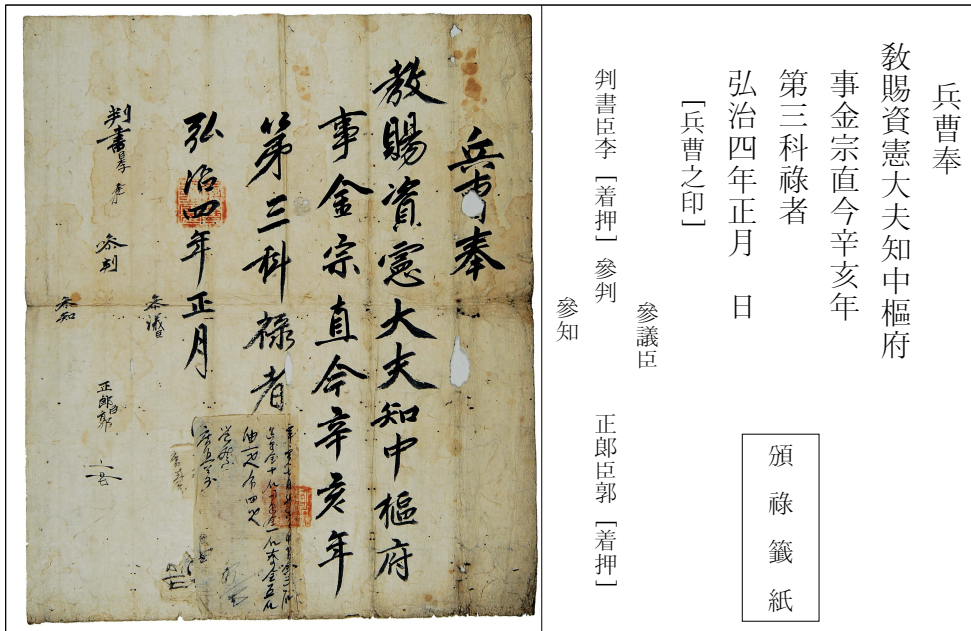
99) 『世宗實錄』 14년(1432) 4월 25일: “詳定所啓: 各品祿牌行使宣賜印文, 改以頒賜, 其體倣議政府印改鑄, 令吏曹仍舊用之. 其祿牌內王命準賜, 改稱奉教賜.”

100) 박성호는 1467년 정식 녹패의 인장에 대해 “첫부분에 兵曹라는 문구가 처음 사용된 것을 고려할 때 이 무렵부터 녹패에도 ‘吏曹之印’과 ‘兵曹之印’이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하였다. (박성호, 앞의 논문, 81쪽.)

<表 III-4> 『經國大典』 녹패식

某曹奉
敎賜具官某某年第幾科祿者
年〔印〕月 日
判書臣某 參判臣某 參議臣某
正郎臣某 佐郎臣某

<圖 III-1> 1491년 김종직 녹패와 정서¹⁰¹⁾ (89.0×74.0cm)



1491년 김종직 녹패의 시면은 “兵曹奉敎賜”로 시작하고, 본문 및 중국의 연호

101) 보물 제1725호, 고령 선산김씨 김종직 후손가 소장.

를 비롯한 발급 일자 표기 방식은 1467년 정식 녹패와 동일하다. 그러나 녹패 발급 관원은 정식 녹패에서는 參判과 正郎 2員이었으나, 김종직 녹패에서는 判書부터 正郎까지 총 5員으로 五品 以下 告身式과 동일한 방식이다.¹⁰²⁾ 병조에는 관제상 參議 외에 參知가 한 명 더 있기 때문에 김종직 녹패에는 參知가 녹패 발급에 참여하였다. 그렇지만 녹패식에 제시된 郎官 가운데 佐郎은 빠져 있다.¹⁰³⁾

2) 祿牌 樣式의 변화

녹패 양식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녹패식을 기록한 문서의 안쪽 면과 그 배면인 바깥쪽 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안쪽 면은 녹과 표기·참여 관원·인장의 세 부분을, 바깥쪽 면은 외면 표기를 살펴볼 것인데, 우선 녹과 표기·참여 관원·인장을 살펴본 후, 외면 표기를 살펴볼 것이다.

① 祿科 표기

녹패식 가운데 녹과를 표기하는 “第幾科祿者”에는 녹봉 수령자의 관직에 해당하는 녹과가 표기된다.¹⁰⁴⁾ 그런데 현재까지 조사된 녹패 가운데 녹과를 표기하지 않은 채 “第 科祿者”만을 작성한 녹패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전하는 녹패 가운데 1604년(宣祖 37)에 발급된 李彦英(1568~1639) 녹패에서 처음 발견된다. 이언영 녹패 이후부터는 녹과 표기 방식이 준행되면서, 간헐적으로 녹과를 표기하지 않은 녹패가 발견된다. 그리고 1657년(孝宗 8) 張應一(1599~1676) 녹패 이후부터 발급된 녹패에서는 으레 녹과가 표기되지 않은 채 발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녹과를 표기하지 않는 방식은 1657년 장응일 녹패 이후 모든 녹패에 일제히

102) 『經國大典』 禮典, 【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 “某曹某年某月某日, 奉教具官某爲某階某職者. 某年某月某日. 判書臣某·參判臣某·參議臣某·正郎臣某·佐郎臣某”

103)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正二品官廳, 六曹.

正二品	各判書一員
從二品	各參判一員
正三品	各參議一員. 兵曹加參知一員.
正五品	各正郎三員. 【兵曹·刑曹各加一員】
正六品	各佐郎三員. 【兵曹·刑曹各加一員】

104) 녹봉제별 녹과는 부록2. 녹봉제에 따른 녹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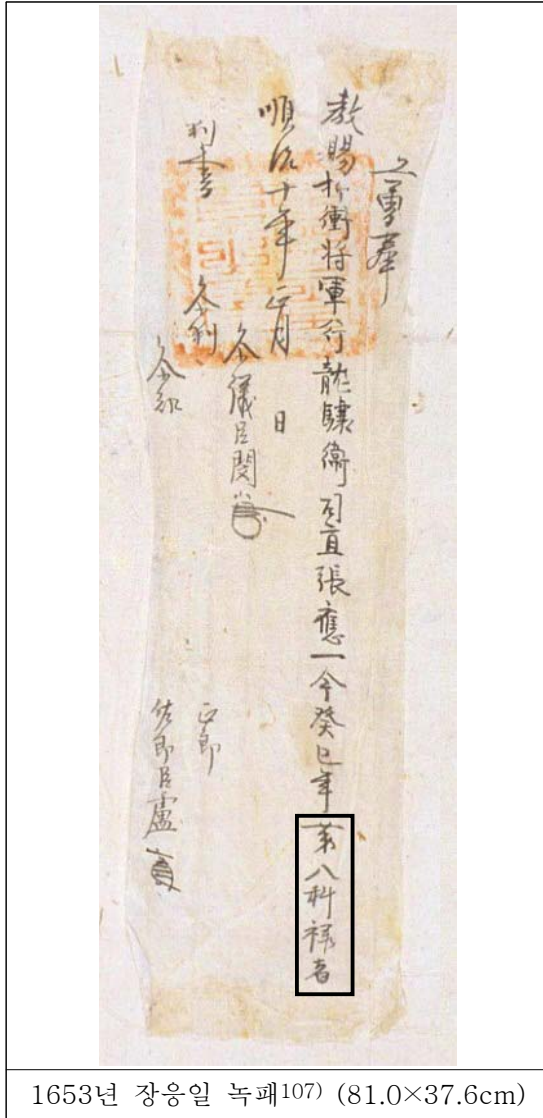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후로도 1674년 宋時烈(1607~1689) 녹패¹⁰⁵처럼 녹과를 표기하는 녹패가 종종 발견된다. 품계가 大匡輔國崇祿大夫인 吳允謙(1559~1636), 金興慶(1677~1750) 등의 녹패에서도 녹과는 표기되었으며, 宗室諸君의 경우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녹과를 표기해주고 있다. 종실제군의 녹과 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녹패로는 延祔君 李吟(1694~1776)과 延齡君 李冊(1699~1719) 등의 녹패가 있다.¹⁰⁶⁾

다음은 녹과 표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1653년(孝宗 4)과 1657년(孝宗 8) 장응일, 그리고 1700년(肅宗 26) 연잉군 이금 녹패이다.

105)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청구기호: 160877)

106) 延祔君 李吟 녹패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총 22건이 소장되어 있고, 延齡君 李冊의 녹패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16건이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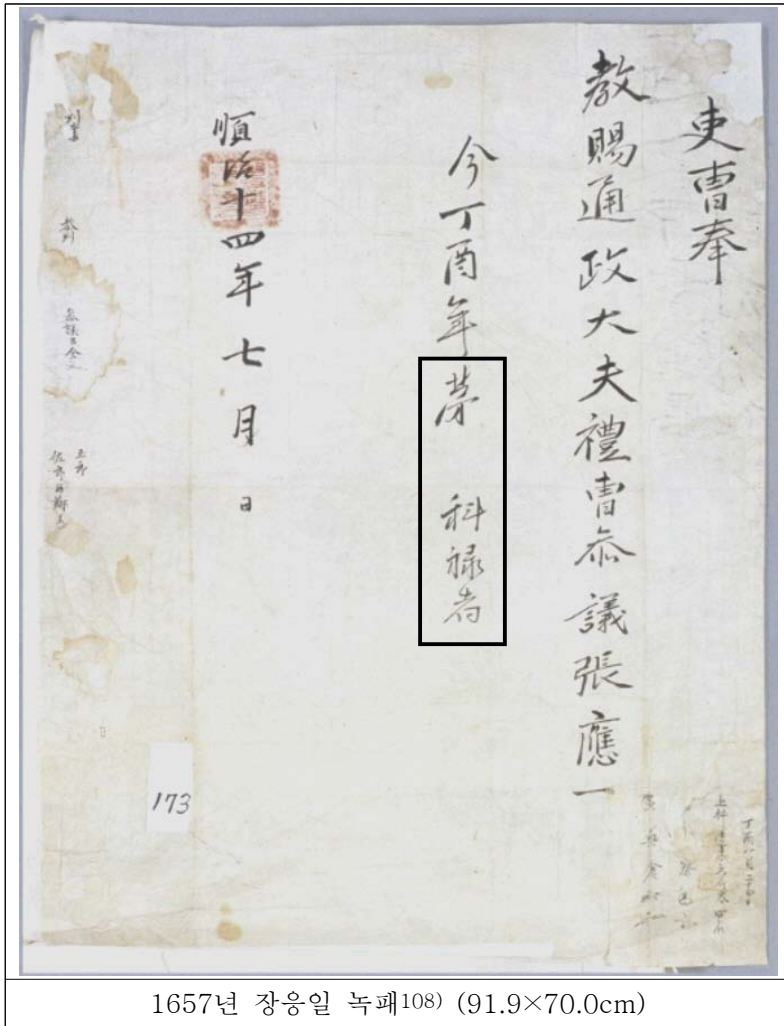
<圖 III-2> 녹과 표기 확인 1



1653년 장응일 녹패¹⁰⁷⁾ (81.0×37.6cm)

107) 兵曹奉敎賜，折衝將軍·行龍驤衛司直 張應一，今癸巳年，第八科祿者，順治十年正月 日，判書·參判·參議臣閱(着押)·參知·正郎·佐郎臣盧(着押)，구미 옥산 인동장씨 여헌 종택 소장. (『고문서집성』 79, 1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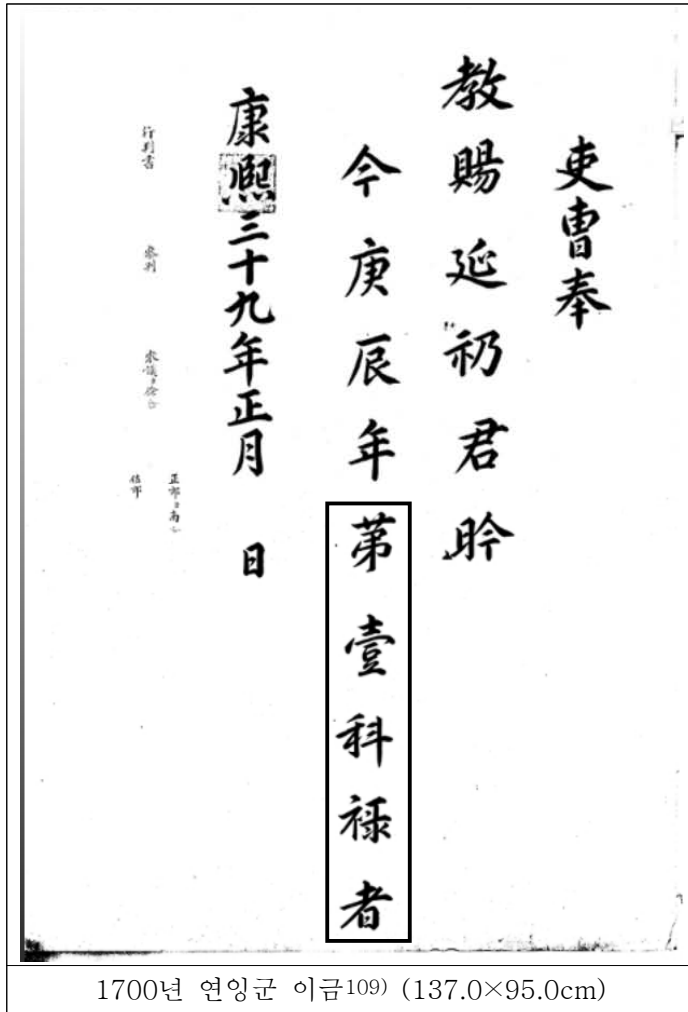
<圖 III-3> 녹과 표기 확인 2



1657년 장응일 녹패¹⁰⁸⁾ (91.9×70.0cm)

108) 吏曹奉教賜, 通政大夫·禮曹參議 張應一, 今丁酉年, 第 科祿者. 天順十四年七月 日. 判書·參判·參議臣金(着押)·正郎·佐郎臣鄭(着押). 구미 옥산 인동장씨 여헌 종택 소장. (『고문서집성』 79, 128쪽.)

<圖 Ⅲ-4> 녹과 표기 확인 3



1700년 연잉군 이금¹⁰⁹⁾ (137.0×95.0cm)

1657년 이후 으레 녹과를 표기하지 않은 채 녹패가 발급되었으나, 1700년에 발급된 연잉군 이금 녹패처럼 녹과를 표기하여 발급된 녹패도 있다. 따라서 녹과 표기하지 않는 것이 일제히 적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613년 黃愼(1560~1617) 녹패와 1625년 吳允謙(1559~1636) 녹패에 “夏等爲始一科”와 “夏刑曹判書·秋禮曹判書·冬吏曹判書”와 같은 기록이 있

109) 吏曹奉教賜, 延初君 吟, 今庚辰年, 第壹科祿者. 康熙三十九年正月 日. 行判書·參判·參議臣徐(着押)·正郎臣南(着押)·佐郎.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고문서집성』 10, 168쪽.)

다.¹¹⁰⁾ 이는 녹패 발급 후에 녹과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관직에 제수되었을 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정월 이후에 새로운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새로이 녹패를 발급받지 않고 기존의 녹패를 그대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¹¹¹⁾ 녹과를 표기하지 않기 시작한 1657년은 임시로 월봉제가 시행되던 시기로 반록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게다가 『大典通編』 시행 이후로는 1년에 네 차례 녹패를 발급받아야 했기 때문에 녹패 발급 횟수는 그 전보다 증가했을 것이다.¹¹²⁾ 그러므로 정월에 발급한 녹패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녹과를 표기하지 않은 채 녹패를 발급한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녹관은 매번 관직에 제수될 때 마다 녹패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종실제군과 봉조하 녹패의 녹과 표기는 대체로 준행되었다.

② 발급 관원

녹패 발급 관원은 발급 관청 및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음 <表 III-5>는 이조와 병조의 녹패 발급 관원을 나타낸 표이다.¹¹³⁾

<表 III-5> 吏曹·兵曹 녹패 발급 관원

발급 관원	吏曹	兵曹
判書	○	○
參判	○	○
參議	○	○
參知	×	○
正郎	○	○
佐郎	○	○
(假郎聽)	○	○

이조와 병조의 녹패 발급 관원이 다른 것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병조의 경우 관제상 參議 외에 參知가 한 명 더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병조에서 발급한 1653년 장응일 녹패와 이조에서 발급한 1630년 鄭經

110) 현재까지 조사된 녹패 가운데 녹패식에 기록된 관직 외에 부가적으로 관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1613년 황신 녹패를 비롯한 총 7건이다. (1613년 황신 녹패; 1625년 오윤겸 녹패; 1664년 박장원 녹패; 1689년 장만기 녹패; 1691년 장만기 녹패; 1701년 이해조 녹패; 1707년 이해조 녹패)

111) 각주29.

112) 각주27.

113) 각주103.

世(1563~1633) 녹패이다.

<圖 III-5> 발급 관청별 발급 관원 비교

<p>1653년 장응일 병조 녹패¹¹⁴ (81.0×37.6cm)</p>	<p>1630년 정경세 이조 녹패¹¹⁵ (104.5×76.0cm)</p>

<圖 III-5>의 장응일과 정경세 녹패는 발급 관청에 따라 녹패를 발급하는 관원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假郎聽¹¹⁶이 입회하여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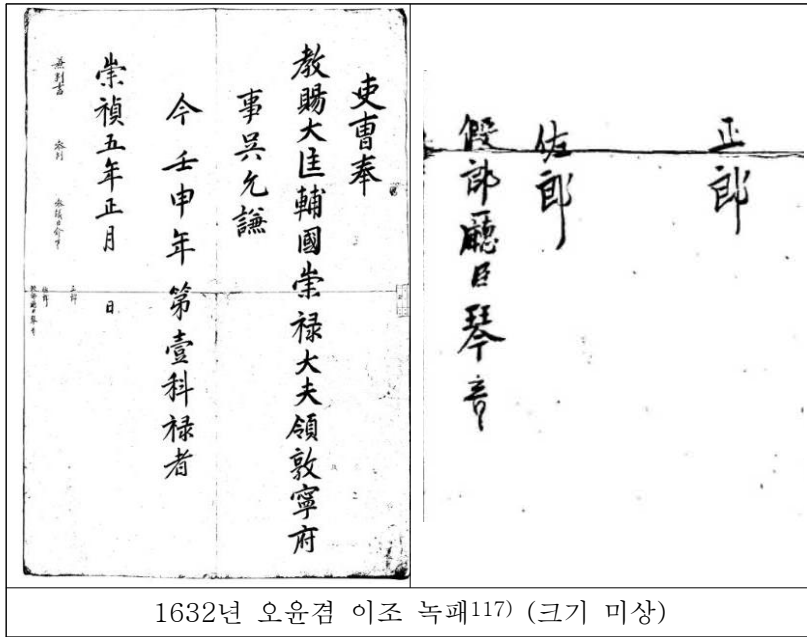
114) 각주107.

115) 史曹奉教賜, 正憲大夫·史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禮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同知經筵事·世子右副賓客 鄭經世, 今庚午年, 第參科祿者. 崇禎三年正月 日. 判書·參判·參議臣李(着押)·正郎·佐郎臣尹(着押). 상주 우산 진주정씨 산수헌 소장. (『고문서집성』88, 186쪽.)

116) 假郎聽은 郎官이 없을 때 임시로 郎聽직을 주어 開政토록한 관직이다. (『肅宗實錄』4년(1678) 8월 3일: “史曹判書吳始壽言: 本曹無郎官, 不能行都目大政. 積曰: 都目雖大政,

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1632년(仁祖 10) 吳允謙(1559~1636) 녹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圖 Ⅲ-6> 假郎聽 着押 녹패



가낭청의 경우 현재까지 조사된 녹패 가운데 1735년(英祖 11) 金興慶(1677~1750) 녹패¹¹⁸⁾를 마지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③ 印章

녹패에 사용된 인장은 “宣賜之印”과 “頒賜之印”, 그리고 “吏曹之印”, “兵曹之印”, “兵曹堂上之印”이 있다. 1394년 도응 녹패에 사용된 “宣賜之印”은 1432년(世宗 14)의 전교에 따라 “頒賜之印”으로 바뀌었고, 녹패 발급 업무가 이조와 병조로 분장된 1466년 이후부터는 “吏曹之印”과 “兵曹之印”이 답인되었다는 것을 녹패 양식 부분에서 확인하였다. 그리고 병조 발급 녹패에서는 “兵曹之印” 외에 “兵曹堂上之印”이 답인된 녹패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각각의 인장이 답인된 녹패

守令已差出, 自餘循資遷轉, 自有恒規. 請令以假郎廳開政. …”)
 117) 吏曹奉教賜, 大匡輔國崇祿大夫·領敦寧府事 吳允謙, 今壬申年, 第壹科祿者. 兼判書·參判·參議臣兪(着押)·正郎·佐郎·假郎聽臣琴(着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고문서집성』36, 103쪽.)
 118) 서산 대교 경주김씨 소장. (『고문서집성』86, 76쪽.)

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조에서 발급하여 “吏曹之印”이 답인된 1589년 申之悌(1562~1624) 녹패이다.

<圖 III-7> 1589년 신지제 녹패¹¹⁹⁾와 吏曹之印



다음은 병조 발급 녹패로 “兵曹之印”이 답인된 1634년 崔震立(1568~1636)

119) 吏曹奉教賜, 務功郎·行司瞻寺直長 申之悌, 今己丑年, 第拾肆科祿者, 萬曆十七年六月 日, 判書·參判臣任(着押)·參議·正郎·佐郎臣盧(着押), 의성 아주신씨 오봉 종택 소장. (『고문서집성』77, 379쪽.)

120)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의 관인』, 국립고궁박물관, 2009, 48쪽.

<圖 III-9> 1649년 정도응 녹패¹²³⁾와 兵曹堂上之印



123) 兵曹奉教賜, 果毅校尉·行忠武衛副司勇 鄭道應, [今己丑年, 第 科祿者]. 順治六年正月 日. 行判書·參判臣韓(着押)·參議·參知·[正郎·佐郎]. 상주 우산 진주정씨 산수헌 소장. (『고문서집성』88, 187쪽.)

<圖 III-10> 1868년 기양연 녹패¹²⁴⁾와 兵曹堂上之印



“兵曹堂上之印”은 정도응과 기양연 녹패에서 보이는 것처럼 2字씩 석 줄로 된 것과, 3字씩 두 줄로 된 것이 사용되었다. 『印信謄錄』에 의하면 1833년(純祖 33)에 기양연 녹패에서 보이는 인장을 새로 새겼다는 기록이 있으며,¹²⁶⁾ 실제

124) 兵曹奉教賜, 宣略將軍行忠武衛副司勇 奇陽衍, 今戊辰年, 第 科祿者. 同治七年十月 日.

行判書·參判·參議·參知臣李(着押)·正郎·佐郎. 행주기씨 금강증가 소장.

125) 국립고궁박물관, 앞의 책, 14쪽.

126) 『印信謄錄』, 癸巳九月三十日: “曹啓目: 節到付兵曹關內, 本曹堂·郎所用印信, 年久剝弊,

병조 발급 녹패에서도 1833년 이후로는 기양연 녹패에서 보이는 인장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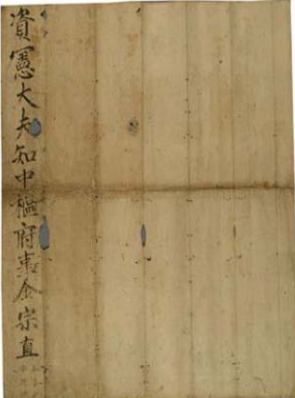


현재까지 조사된 녹패 가운데 “吏曹堂上之印”이 사용된 것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병조에서 발급한 녹패에서 “兵曹堂上之印”이 사용된 까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적은 까닭에 파악하기 어렵다.

④ 外面 表記

녹패에는 녹패식과 반록 사항을 기록한 반록 첨지 외에도 관직·성명·녹과를 표기한 부분인 외면 표기가 존재하는데, 어떤 까닭으로 이러한 표기가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하는 사료가 적어 고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선후기 『頤齋亂藁』의 내용 가운데 저자인 黃胤錫(1729~1791)이 지인에게서 빌린 녹패를 전사한 기록에 외면 표기와 관련된 언급이 있다.¹²⁷⁾ 이를 통해 조선 초기부터 이러한 기록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녹패 가운데 외면 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녹패는 1491년 김종직 녹패이다.

다음은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의 녹패 가운데 김종직, 신지제 그리고 宋炳夏(1646~1697)의 녹패 및 반록 첨지에 작성된 외면 표기이다.

<圖 Ⅲ-11> 外面 表記 방식

		
<p>1491년 김종직 녹패¹²⁸⁾ (89.0×74.0cm)</p>	<p>1590년 신지제 녹패¹²⁹⁾ (87.0×53.0cm)</p>	<p>1682년 송병하 녹패¹³⁰⁾ (112.7×80.5cm)</p>

改鑄以送事. ...”

127) 김혁은 “황윤석은 이때 개국 초의 녹패를 처음 본 것이므로 당시 녹패의 외면에 큰 글씨로 표제를 달고 있는 것과 착각을 일으킨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표기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김혁, 앞의 논문, 201쪽.)

<表 III-6> 녹패의 外面 表記 방식

연번	문서명	외면 표기
1	1491년 김종직 녹패	資憲大夫知中樞府事 金宗直 今辛亥年祿牌
2	1590년 신지제 녹패	務功郎行司瞻寺直長 申之梯 今己丑年祿牌
3	1682년 송병하 녹패	朝奉大夫行司僕寺主簿 宋炳夏 今壬戌年春等祿牌

정3품 당상관 이상의 녹패에는 외면 표기가 녹패에 작성되고, 정3품 당하관 이하의 반록 첨지에 외면 표기기가 작성된다. 그리고 김종직은 당상관으로 외면 표기가 녹패의 바깥쪽 면에 있고, 신지제와 송병하는 모두 당하관으로 녹패를 기준으로 신지제는 바깥쪽 면, 송병하는 안쪽 면에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당상관인 김종직과 당하관인 신지제의 외면 표기는 모두 바깥쪽에 작성된 반면, 당하관인 송병하의 외면 표기는 녹패와 동일한 면에 작성되었다. 이를 통해 특정 면에 외면 표기를 작성하는 규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당상관의 경우 모두 바깥쪽 면에 작성되며, 당하관에 한하여 안쪽과 바깥쪽 면에 작성된다. 그리고 외면 표기가 있는 녹패는 녹패를 접었을 때 외면 표기가 대체로 바깥으로 온다. 이를 통해 녹패를 펴지 않고 접은 상태로 녹패의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게 위해 외면에 녹관의 관직과 성명, 해당 녹과를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면 표기의 관직·성명·녹과 부분은 반록 대상자의 처지에 따라 표기가 달라지게 되어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녹과 부분의 표기 방식은 한 가지 틀에 고정되지 않고 상당히 유동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외면 표기의 녹과 부분은 <表 III-7>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28) 각주101.

129) 의성 아주신씨 오봉 종택 소장. (『고문서집성』77, 379쪽.)

130) 대전 선사박물관 소장. (『고문서집성』83, 147쪽.)

<表 Ⅲ-7> 외면 녹과 표기 방식¹³¹⁾

연번	글자수	표기 방식
1	여섯자	今 ○ ○ 年 祿 牌
		今 ○ ○ 年 祿 者
		今 春[夏秋冬] 等 付 祿 者
2	여덟자	今 ○ ○ 年 春[夏秋冬] 等 祿 科
		今 ○ ○ 年 春[夏秋冬] 等 祿 牌
		今 ○ ○ 年 春[夏秋冬] 等 祿 者

녹과 부분은 여섯자 혹은 여덟자로 이루어져 있고, 석자 혹은 녁자씩 주로 두 줄로 기록되는데, 시기적인 추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방식은 녹과를 제시하는 목적과 더불어 일종의 균형미를 추구한 작성법이라고 추측된다. 이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외면 표기 방식을 정리할 수 있다.

<表 Ⅲ-8> 외면 표기 방식

某 官 某 職 姓 名 年 今 祿 ○ 牌 ○

외면 표기는 녹패의 좌측, 또는 우측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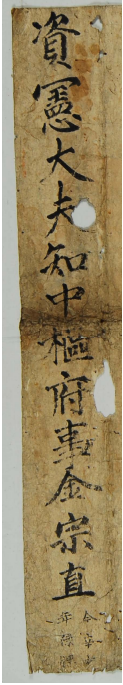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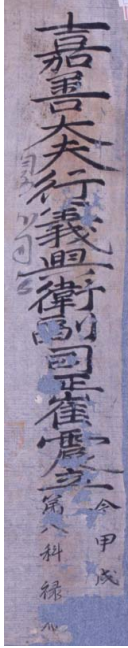


외면 표기의 서체¹³²⁾는 시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131) 12월 발급 녹패의 경우 “今” 대신 “來”를 표기한 경우도 있다.

132) 서체의 사전적 의미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①글씨를 써 놓은 모양 ②붓글씨에서

시기에 따른 변화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圖 III-12> 外面 表記의 서체 변화

					
1491년 김종직	1590년 신지제	1625년 최연(133)	1634년 최진립	1689년 장만기(134)	1791년 송계래(135)

조선 전기 작성된 외면 표기는 正書하여 판독하기 쉽지만, 17세기 초반부터 서체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17세기 초반에는 정서되어 판독하기 쉬운 서체와 판독하기 어려운 변화된 서체의 두 가지 양상을 보이다가 17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판독하기 어려운 서체로 고착화되었다. 종친의 경우 외면 표기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당하관 녹패에 한하여 반록 기록이 간소화된 이후에는 더 이상 외면 표기가 작성되지 않았다.¹³⁶⁾ 그리고 19세기 후반의 외면 표기는 더욱 판독하기 어

글씨를 쓰는 일정한 격식이나 양식 ③(출판)자형의 양식. 본 연구에서는 ①번의 의미로 사용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주)두산동아, 1999, 3379쪽)
 13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남원·구례 삭녕최씨 기탁, 『고문서집성』72, 176쪽.)
 134) 구미 옥산 인동장씨 여헌 종택 소장. (『고문서집성』79, 129쪽.)
 135) 대전 선사박물관 소장. (『고문서집성』83, 155쪽.)
 136) 당하관 녹패의 반록 기록 간소화는 IV장 頒祿 籤紙와 祿俸制의 운용 실태에서 다룰 것이다.

려운 서체로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외면 표기는 녹패식이 기록된 안쪽 면을 기준으로 보면 당하관의 경우 반드시 배면, 즉 바깥쪽 면에 기록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용어에 대한 고찰이 더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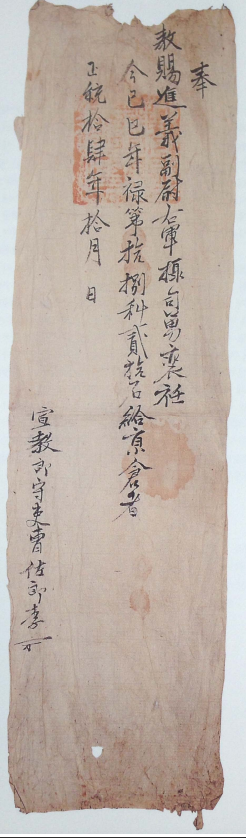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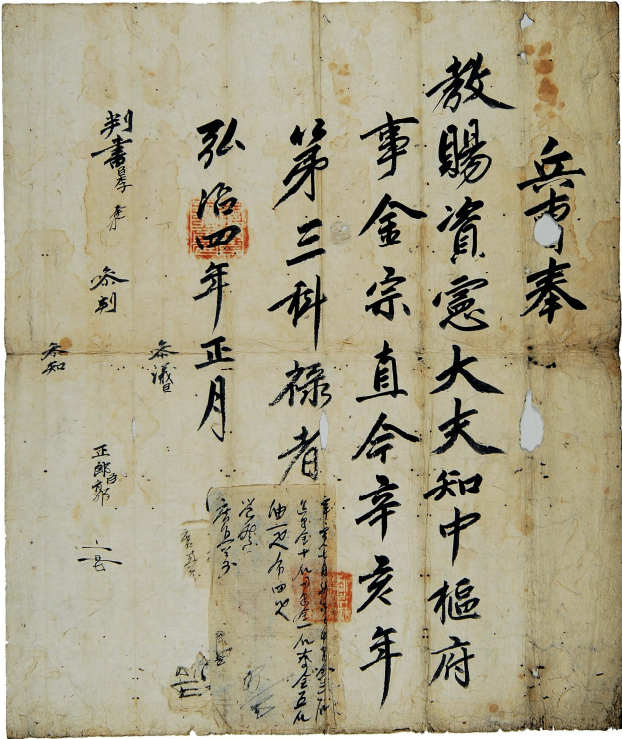
2. 祿牌 크기와 변화 양상

앞서 녹패 양식과 구성요소를 검토하면서 제시한 녹패 이미지를 통해 녹패는 한 가지 크기로 고정된 것이 아닌, 비교적 正方形에 가까운 것과 長方形에 가까운 두 가지 크기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이번 절에서는 우선 개별 녹패를 검토하여, 녹패가 크기를 달리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어서 당하관 녹패의 변화에 대하여 검토해 볼 것인데, 조선시대 녹봉제는 육삭반록제에서 사맹삭반록제로, 다시 월봉제로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반록 횟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녹봉을 수령하기 위해 녹패를 발급받는 횟수가 증가하였을 것이며, 이는 이조와 병조의 녹패 발급 업무를 더욱 가중화시켰을 것이다. 이러한 녹패 발급 업무의 과중화가 녹패의 형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堂上官과 堂下官 祿牌의 크기 차이

녹패 크기의 차이는 녹패식의 법제화와는 별도로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형태가 다른 녹패를 각각 한 건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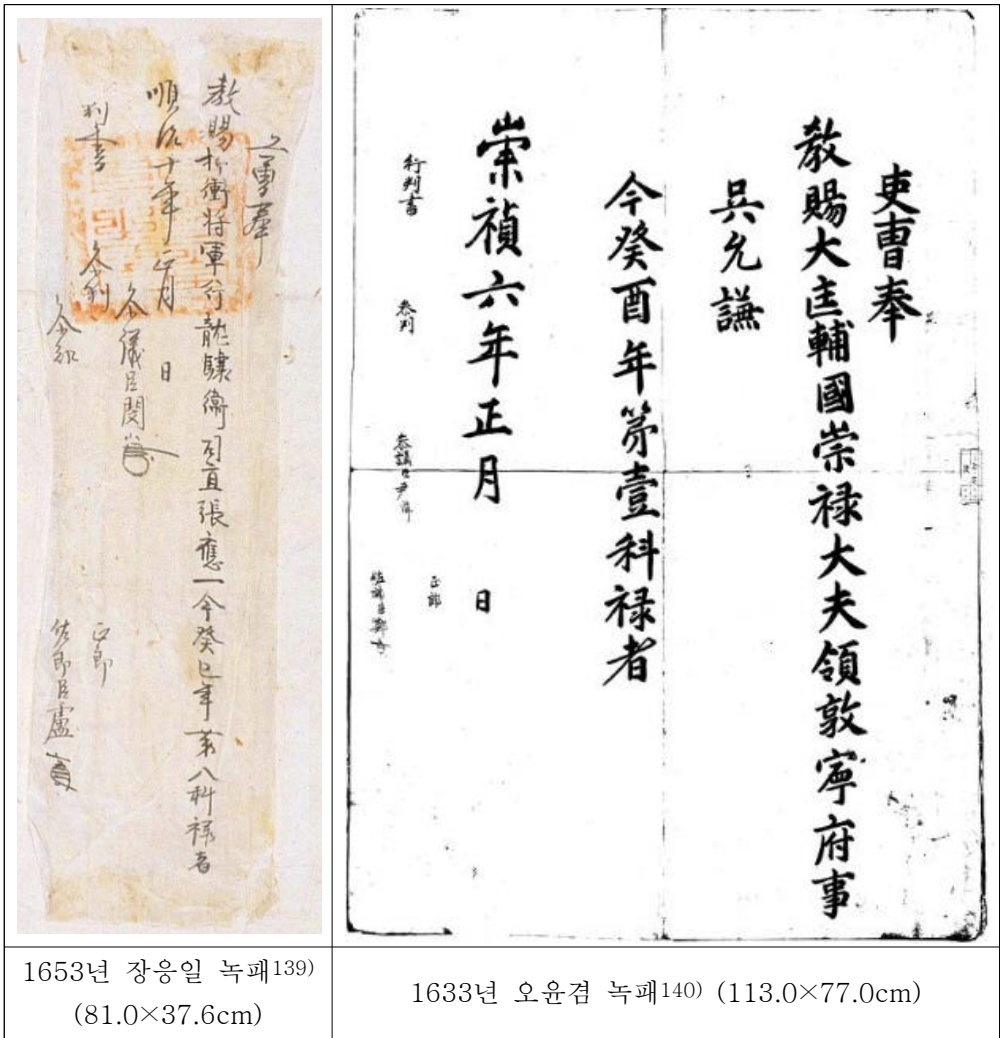
<圖 Ⅲ-13> 15세기 녹패

	
<p>1449년 배임 녹패137) (크기 미상)</p>	<p>1491년 김종직 녹패138) (89.0×74.0cm)</p>

137) 奉敎賜, 進義副尉·右軍攝司勇 裴祗, 今己巳年祿, 第拾捌科, 貳拾石, 給京倉者. 正統拾肆年拾月 日. 宣敎郎·守吏曹佐郎李(着押). 소장처 미상.

138) 兵曹奉敎賜, 資憲大夫·知中樞府事 金宗直, 今辛亥年, 第三科祿者. 弘治四年 正月 日. 判書臣李(着押)·參判·參議臣·參知·正郎臣郭(着押). 고려 선산김씨 김종직 후손가 소장.

<圖 III-14> 17세기 녹패



139) 각주107.

140) 吏曹奉教賜, 大匡輔國崇祿大夫·領敦寧府事 吳允謙, 今癸酉年, 第壹科祿者. 行判書·參判·參議臣尹(着押)·正郎·佐郎臣鄭(着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고문서집성』 36, 104쪽.)

<圖 III-15> 18세기 녹패

<p>1706년 이해조 녹패¹⁴¹⁾ (45.0×11.0cm)</p>	<p>1724년 권이진 녹패¹⁴²⁾ (110.0×82.0cm)</p>

141) 兵曹奉教賜, 禦侮將軍·行忠武衛副司果 李海朝, 今丙戌年, 第 科祿者. 康熙四十五年五月 日. 行判書臣李(着押)·參判·參議·參知·正郎·佐郎臣. 제친 한수 연안이씨 소장. (『고문서집성』55, 80쪽.)

142) 吏曹奉教賜, 嘉善大夫·戶曹參判 權以鎭, 今甲辰年, 第 科祿者. 雍正二年二月 日. 行判書臣柳(着押)·參判·參議·正郎·佐郎. 대전 무수동 안동권씨 유희당 종택 소장. (『고문서집성』85, 142쪽.)

<圖 III-16> 19세기 녹패



16세기 녹패 가운데 정3품 당상관 이상의 녹패는 전하지 않아 비교 대상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다음 <表 III-9>는 앞서 제시한 녹패 발급자의 관직과 녹패 크기를 표로 작성한 것이다.

- 143) 兵曹奉教賜, 禦侮將軍·翊衛司衛率 李俊秀, 今壬辰年, 第 科祿者. 道光十二年七月 日. 判書·參判·參議·參知臣洪(着押)·正郎·佐郎. 제천 한수 연안이씨 소장. (『고문서집성』55, 90쪽.)
- 144) 吏曹奉教賜, 通政大夫·兵曹參知 尹孝寬, 今丁卯年, 第 科祿者. 佳境十二年二月 日. 判書臣李(着押)·參判·參議·正郎·佐郎. 목포대학교 박물관 소장. (강진 해남윤씨 윤동기 기탁)

<表 III-9> 15~19세기 녹패 크기

※ 음영은 정3품 당상관 이상

연번	문서명	발급처	관직	녹패 크기(cm) ¹⁴⁵⁾
1	1449년 배임 녹패	吏曹	右軍攝司勇 (종9품)	미상
2	1491년 김중직 녹패	兵曹	知中樞府事 (정2품)	89.0×74.0
3	1653년 장응일 녹패	兵曹	龍驤衛司直 (정5품)	81.0×37.6
4	1633년 오윤겸 녹패	吏曹	領敦寧府事 (정1품)	113.0×77.0
5	1706년 이해조 녹패	兵曹	忠武衛副司果 (종6품)	45.0×11.0
6	1724년 권이진 녹패	吏曹	戶曹參判 (종2품)	110.0×82.0
7	1832년 이준수 녹패	兵曹	翊衛司衛率 (종6품)	50.0×13.0
8	1807년 윤효관 녹패	吏曹	兵曹參知 (정3품 당상)	108.0×76.0

16세기 녹패를 제외한 15~19세기 녹패를 비교해 본 결과, 관직의 정1품에서 정3품 당상관까지는 녹패의 크기가 비교적 크고, 정3품 당하관에서 종9품까지는 녹패의 크기가 비교적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녹패의 크기를 정3품 당상관과 당하관으로 나누어 고찰해본 결과 모든 녹패가 관직의 高卑, 즉 정3품 당상관과 당하관을 기준으로 크기를 달리하여 발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상관 녹패¹⁴⁶⁾는 세로×가로의 평균 길이가 112.4×79.2cm이며, 당하관은 45.5×14.4cm로 당상관과 당하관의 녹패는 세로×가로의 평균 길이가 50cm이상씩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45) 반쪽 첩지를 제외한 녹패 크기만을 기재하였다. 단, 1707년 이해조와 1735년 임옥 녹패는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진과 파일의 문서 비율과 실물 문서 크기를 활용하여 방정식을 통해 도출해 낸 크기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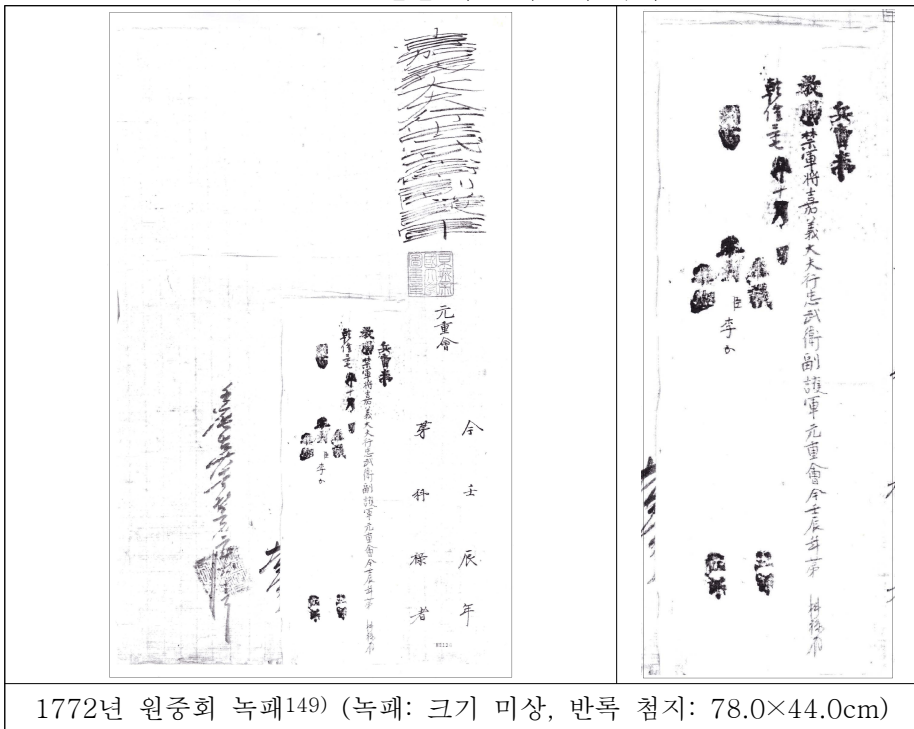
146) 본고에서는 정1품~정3품 당상관 녹패를 “당상관 녹패”로, 정3품 당하관~종9품 녹패를 “당하관 녹패”로 지칭하기로 한다.

그런데 1883년(高宗 20) 李最應(1815~1882)은 당시 관직이 종3품 興寅副正이었으나 84.0×114.0의 크기가 큰 녹패를 발급받았다.¹⁴⁷⁾ 그는 종친이었기 때문에 당하관임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큰 녹패를 발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종친이면서 관직이 당하관인 자의 녹패는 이최응의 것이 유일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사를 통해 종친 당하관의 녹패 크기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2) 堂下官 祿牌의 변화 양상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당하관 녹패는 당상관 녹패와 비교하면 비교적 작은 종이에 장방형으로 발급되었다. 그런데 현전하는 녹패 가운데 1772년(英祖 48) 元重會(1713~1772) 녹패를 시작으로 나타나는 목판식 녹패의 등장 이후 19세기 초반이 되면 당하관 녹패에는 더 이상 반록 첨지가 첨부되지 않는다. 다음은 현재까지 조사된 녹패 가운데 최초의 목판식 녹패인 1772년 원중회 녹패이다.

<圖 III-17> 현전 최초 목판식 녹패¹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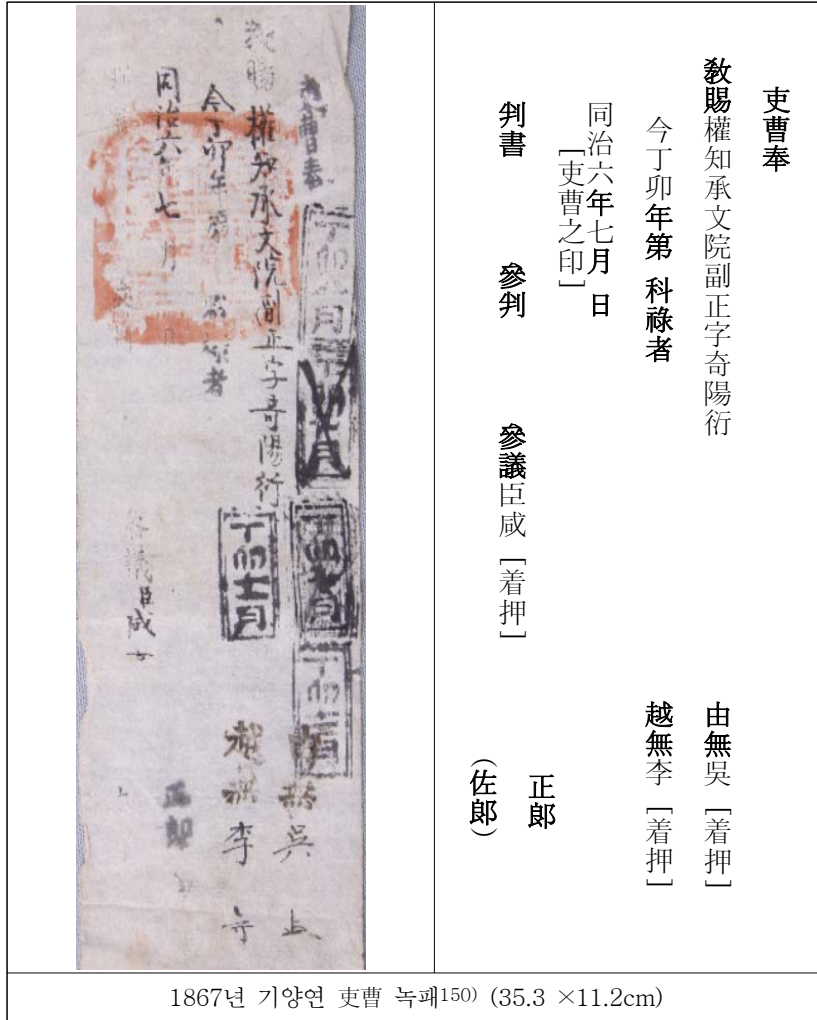


147)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청구기호: 252755)

원중희 녹패를 시작으로 나타나는 목판식은 발급 관청에 따라 각각 版에 새기는 부분을 달리하고 있다. 다음은 이조와 병조에서 목판식으로 발급한 녹패이다.

<圖 III-18> 19세기 목판식 吏曹 녹패

※ 진한 부분은 목판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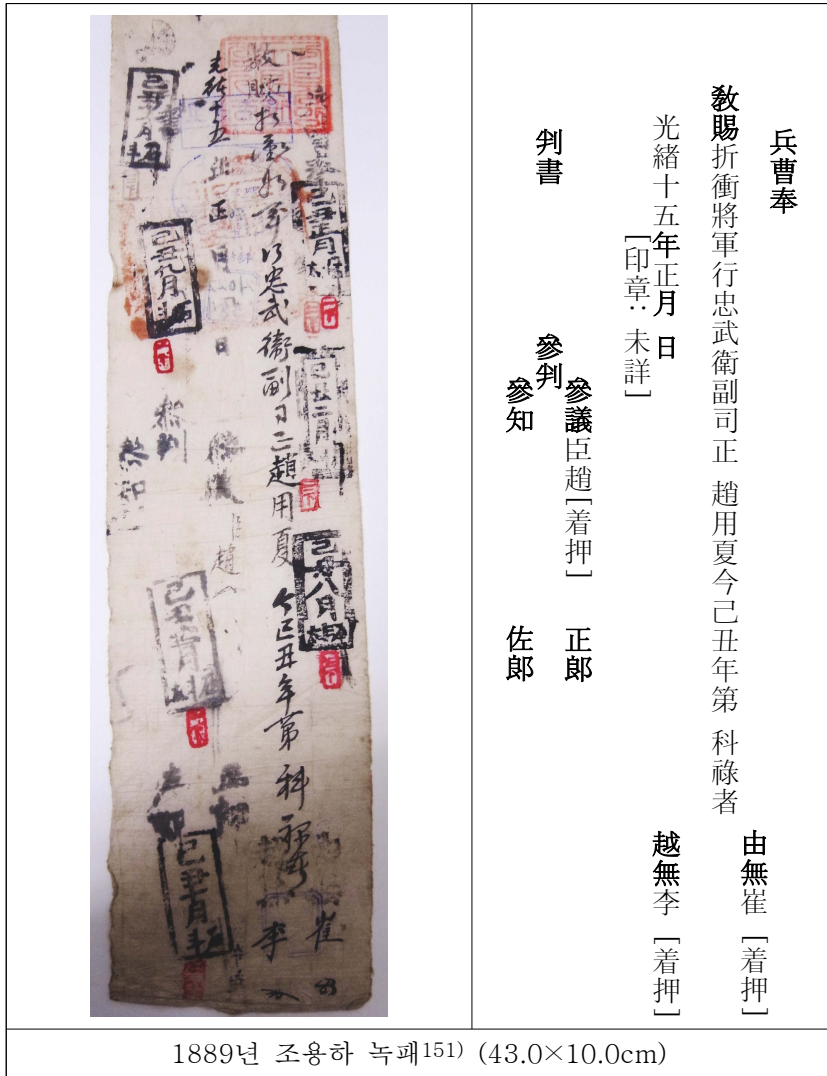
148) 외곽선은 문서 구분을 위해 표시한 것이다.

149) 兵曹奉敎賜, 禁軍將·嘉善大夫·行忠武衛副護軍 元重會, 今壬辰年, 第科祿者. 乾隆三十七年十月日. 判書·參判臣李(着押)·參議·參知·正郎·佐郎.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청구기호: 82126)

150) 장성 행주기씨 금강중가 소장.

<圖 III-19> 19세기 목판식 兵曹 녹패

※ 진한 부분은 목판 부분



발급 관원 부분에서 이조와 병조가 목판에 새기는 부분을 달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녹패 발급 시 기재되는 관원의 경우 병조에는 관제상 參知 한 명이 더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이조는 병조와 달리 “年 第 科祿者” 부분을 새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由越을 考準한

151) 녹패 아래쪽의 음영은 녹패가 오염된 것이 아니라 촬영 시 발생한 그림자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우촌古文2102.2-584)

후 기록하는 “由無·越無”도 찍어낸 녹패도 있는데, 이는 목판으로 찍어낸 녹패에 수기로 작성한 경우도 있다.¹⁵²⁾ 유무와 월무의 위치가 녹패 발급 관청과 관계없이 달라지며, 찍어낸 상태 또한 녹패식 부분과 마멸의 정도 및 먹의 색깔이 다른 것으로 보아 이는 해유를 관장하는 호조에서 도장을 이용하여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목판식 당하관 녹패의 등장과 함께 현재까지 1803년(純祖 3) 尹孝寬(1745~1823) 녹패를 기점으로 더 이상 당하관 녹패에서는 반록 첨지가 보이지 않는다. 반록 첨지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은 반록 기록의 형태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상을 통해 녹패가 크기를 달리하는 기준은 관직의 정3품 당상관 이상과 정3품 당하관 이하이며, 정3품 당하관 이하의 녹패는 板에 새겨 찍어내는 목판식 녹패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목판식 녹패가 유독 당하관의 녹패에서만 나타나는 까닭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하관 녹패 크기의 평균이 약 45.5×14.4cm로 여타의 교령류 문서에 비해 크기가 크지 않아 내용을 板에 새기기에 용이한 까닭으로 추정된다.

152) 1803, 1804년 윤희관 녹패. (목포대학교 박물관 소장, 강진 해남윤씨 운동기씨 기탁)

IV. 頒祿 籤紙와 祿俸制의 운용 실태

祿牌는 조선시대 祿官이 祿俸을 수령할 수 있음을 證憑하는 문서이다. 게다가 녹봉을 지급했다는 반록 사항이 기재된 반록 첩지가 첨부되어, 광흥창에서 녹관에게 녹봉을 반록하였음을 증명하는 기능도 한다는 것을 앞서 언급한 적이 있다. 조선 초기 녹패 양식은 녹패의 본문에 반록 품목과 수량, 그리고 지급창을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렇지만 1467년(世祖 13) 鄭軾(1407~1467) 녹패 이후로는 녹과만을 기록하고, 반록 품목과 수량은 반록 시 반록 첩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녹패에 지급창을 기록하는 대신 반록 첩지에 지급창의 관원이 着名과 着押을 하였다. 조선시대 녹패에 첨부된 반록 첩지는 『典律通補』 祿牌式¹⁵³⁾ 을 근거로 小片紙라고 일컬어왔다. 그러나 소편지라고 지칭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종이에 반록 기록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소편지라는 용어보다 반록 첩지라는 용어가 적절하다.

앞서 종친을 제외하고 實職 정3품 당상관 이상과 정3품 당하관 이하에 따라 녹패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는 반록 첩지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 장에서는 녹패 크기와 마찬가지로 반록 첩지에 있어서의 당상관과 당하관 차이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1장에서는 당상관의 반록 첩지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2장에서는 당하관의 반록 첩지에 대하여 검토한 후 19세기 들어 당하관 녹패에 반록 첩지가 첨부되지 않게 된 까닭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반록 첩지에 남아있는 실제 반록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녹봉제의 준행 실태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녹패에 첨부된 반록 첩지는 조선시대 녹봉제별 祿科에 따라 녹관에게 녹봉을 반사한 기록으로써, 반록 첩지를 통해 반록 행정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1. 堂上官의 頒祿 籤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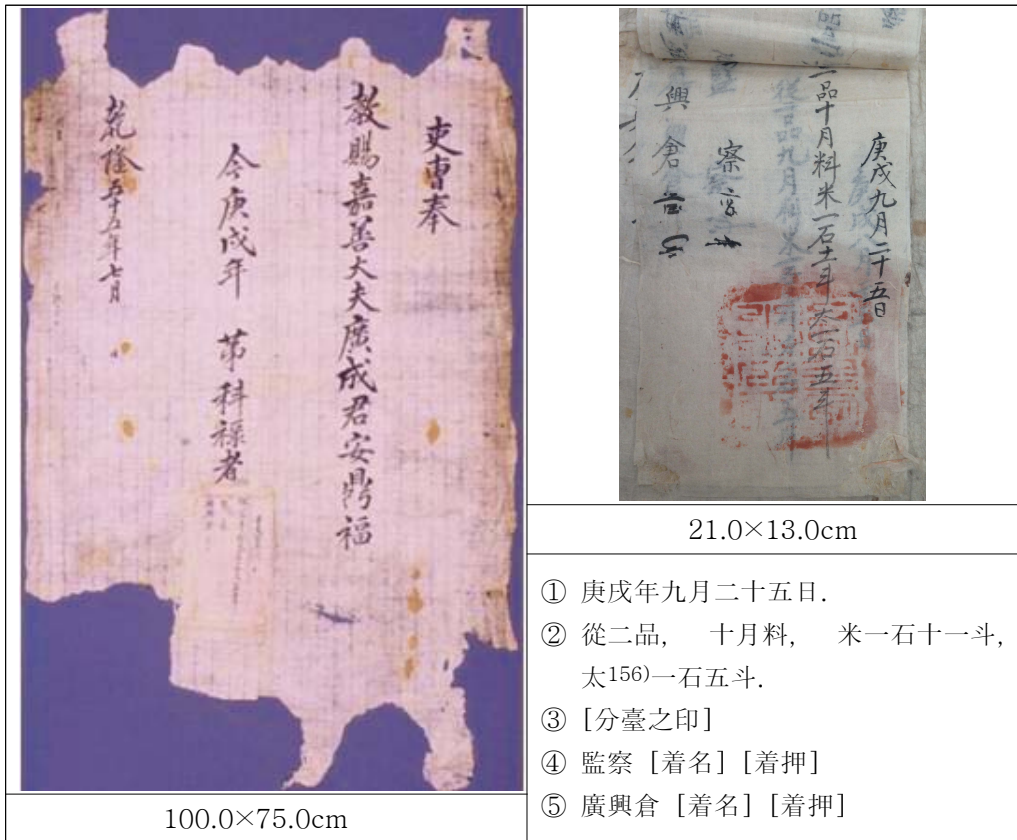
1467년 정식 녹패 이후로 더는 녹패에 반록액과 지급창을 기록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조사된 녹패 가운데 1491년(成宗 22) 金宗直 녹패¹⁵⁴⁾에서 최초로 반록 첩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종직 녹패의 반록 첩지는 녹패보다 크기가 작으며,

153) 『典律通補』, 別編, 祿牌式: “頒祿時小片紙, 監察單銜署名着押, 該倉亦名押.”

154) <圖 Ⅲ-1> 참조.

발급 순서대로 차곡차곡 녹패에 붙이고 있다. 다음 <圖 IV-1>의 安鼎福(1712~1791) 녹패도 또한 김종직 녹패처럼 반록 첨지를 발급 순서대로 차곡차곡 붙였다.

<圖 IV-1> 1790년 안정복 녹패와 반록 첨지¹⁵⁵⁾



당상관의 반록 첨지에는 우선 반록 일자를 기록하고 수령자의 품계와 某月분의 料(祿), 그리고 반록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뒤에 반록 행정을 담당할 監察과 광흥창 관원의 착명과 착압이 이루어진다. 행정 담당자인 감찰은 조사된 반록 첨지 가운데 1794년(正祖 18)부터 더는 입회하지 않았다. 따라서 반록 시 답인되

155) 吏曹奉教賜, 嘉善大夫·廣成君 安鼎福, 今庚戌年, 第科祿者. 乾隆五十五年七月 日. 判書·參判·參議臣曹(着押)·正郎·佐郎. 광주 기곡 광주안씨 순암 종가 소장. (『고문서집성』8, 35쪽.)

156) 콩의 속칭. 녹패에는 黃豆 또는 豆로 표기되어 있으나, 반록 첨지에는 '太'로 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원문에 따라 太·黃豆·豆를 모두 사용하기로 한다. (조선총독부, 『조선어사전』, 大和商會, 1930, 860쪽.)

<圖 IV-3> 1783년 류운 녹패와 반록 첨지¹⁵⁹⁾



114.0×79.0cm

크기 미상

- ① 癸卯六月二十五日.
從二品, 八月料, 米一石十一斗, 太一石五斗.
[分臺之印]
監察 [着名] [着押]
廣興倉 [着名] [着押]
- ② 癸卯七月二十五日.
從二品, 八月料, 米一石十一斗, 太一石五斗.
[分臺之印]
監察 [着名] [着押]
廣興倉 [着名] [着押]
- ③ 癸卯八月二十五日.
從二品, 八月料, 米一石十一斗, 太一石五斗.
[分臺之印]

監察 [着名] [着押]
 廣興倉 [着名] [着押]

감찰이 입회하더라도 “廣興倉印”이 담긴 것은 <圖 IV-2> 1773년 이수일 녹패에 첨부된 반록 첨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전하는 반록 첨지에서는 1794년 李禹鉉(생몰년 미상)의 반록 첨지 이후로 “廣興倉印”만 담긴 형태가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1783년 류운 녹패와 같이 반록 첨지를 나란히 붙여놓은 녹패로는 1605년(宣祖 38) 이조에서 발급한 柳成龍(1542~1607) 녹패가 있다.

<圖 IV-4> 1605년 류성룡 奉朝賀 녹패와 반록 첨지¹⁶⁰⁾



第 科祿者. 乾隆三十九年三月 日. 判書·參判·參議臣洪(着押)·正郎·佐郎. 예산 한국 한산이씨 수당 고택 소장. (『고문서집성』61, 109쪽.)
 159) 吏曹奉教賜, 嘉善大夫·豐昌君 柳湏, 今癸卯年, 第 科祿者. 乾隆四十八年六月 日. 判書·參判·參議臣黃(着押)·正郎·佐郎. 풍산류씨 흥효당 소장(『고문서집성』15, 228쪽.)

92.3×65.0cm		크기 미상
① 今乙巳春等祿. 大米 ¹⁶¹)伍石, 田米 ¹⁶²)壹石, 太貳石. 行安東判官張 [着押]	② 今乙巳夏等祿. 大米伍石, 田米壹石, 太貳石. 行安東判官張 [着押]	
③ 今乙巳秋等祿. 大米伍石, 田米壹石, 太貳石. 行安東判官張 [着押]	④ 今乙巳冬等祿. 大米伍石, 田米壹石, 太貳石. 行安東判官張 [着押]	

<圖 IV-4>의 녹패는 류성룡이 致仕한 후, 안동에서 기거할 때 받은 봉조하 녹패로 安東府에서 발급한 반록 첨지가 첨부되어 있다. 안동부에서 녹봉을 반사한 까닭은 당시 忠勳府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¹⁶³⁾

다음 <圖 IV-5>는 1834년(純祖 34) 柳相祚(1763~1831) 녹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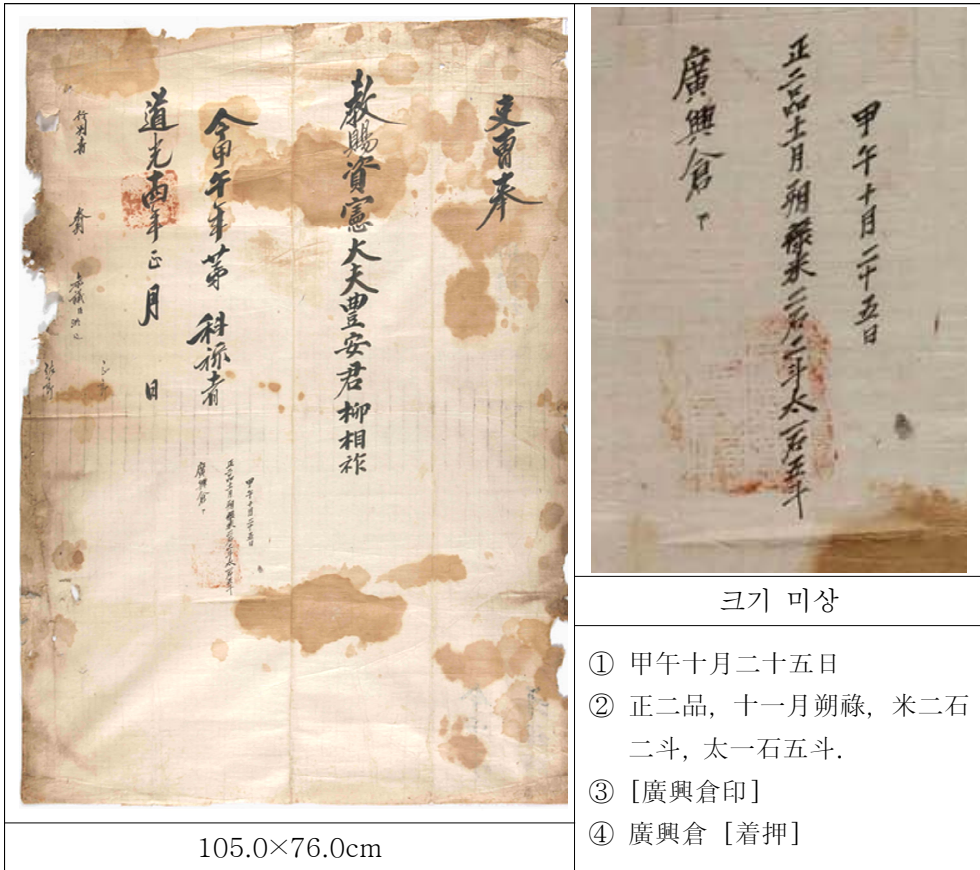
160) 吏曹奉教賜, 輸忠翼謨光國忠勤貞亮効節協策扈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豐原府院君 柳城龍, 今乙巳年, 第壹科祿者. 萬曆三十三年正月 日. 判書·參判·參議臣黃(着押)·正郎·佐郎臣宋(着押). 풍산류씨 증효당 소장.

161) 白米. 좁쌀을 小米라 하는 데 대하여 이르는 말. ((주)두산동아 사서편집국, 『전면개정판 백년옥편』, (주)두산동아, 2008, 381쪽.)

162) ①좁쌀. ②조선 시대에 말벼의 쌀을 이르던 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주)두산동아, 1999, 5336쪽.)

163) 『宣祖實錄』 37년(1604) 12월 19일: “忠勳府啓曰: 自古設官制祿, 必爲其事然後, 食其食, 故無虛授之理. 而惟本府事體, 則異於是, 非曰以事而食之也, 蓋出於報饗之遺意, 故親功臣有罪坐罷者, 例以嫡長高品, 遞兒付祿, 俾不失祿, 其來已久. 近者, 勳臣在外者, 如大臣柳成龍·鄭琢等, 俱不受祿, 臣等常謂未安. 言者亦多以爲 ‘官卑坐罪者, 尚不失祿, 況元老勳臣, 老病在外, 無故失祿, 事體未安.’ 因此相議, 欲依罷官人例, 準高品遞兒, 令所在廩之, 久欲有所稟處, 而無故事可據, 越趨未敢耳. (중략) 傳曰: 令該曹議處. 田結復戶事, 未能省得, 亦令該曹, 相考施行.”

<圖 IV-5> 1834년 류상조 녹패와 반록 첩지¹⁶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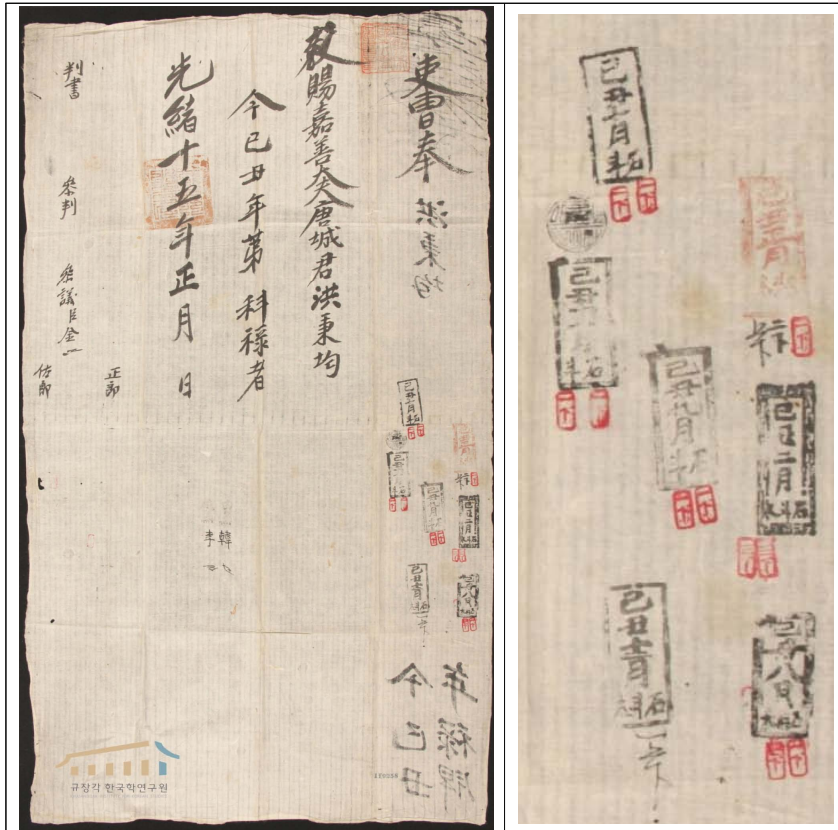
1834년 류상조 녹패에서도 작은 크기의 반록 첩지를 확인할 수 있다. 크기가 작은 당상관 반록 첩지는 현전하는 녹패 가운데 1838년(憲宗 5) 李最應(1815~1882) 녹패까지 확인된다. 1838년 이후로 전하는 당상관 녹패는 총 7건이며 이들은 모두 반록 첩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현재까지 조사된 당상관 녹패의 반록 첩지를 검토해 본 결과, 당상관 반록 첩지의 세로×가로 크기는 약 22.0×10.0cm이다. 반록 첩지를 첨부하는 방식은 김중직과 안정복 녹패처럼 발급 순서대로 차곡차곡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횡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첨부한 녹패도 발견된다.

그런데 1889년(高宗 26)과 1890(高宗 27)년 발급된 洪秉均(생몰년 미상) 녹

164) 吏曹奉教賜, 資憲大夫·豊安君 柳相祚, 今甲午年, 第 科祿者. 道光十四年正月 日. 行判書·參判·參議臣洪(着押)·正郎·佐郎. 풍산류씨 충효당 소장. (『고문서집성』15, 231쪽.)

패는 이어서 살펴볼 당하관 반록 기록에서 나타나는 頒賜印을 통한 반록이 이루어졌다.¹⁶⁵⁾

<圖 IV-6> 1889년 흥병균 녹패와 頒賜印¹⁶⁶⁾ (52.0×93.0cm)



<圖 IV-6>의 1889년 흥병균 녹패를 통해 1889년 이후부터 당상관 녹패에도 반사인을 통한 반록이 이루어졌다는 추정이 가능하다.¹⁶⁷⁾ 그렇지만 1887년(高宗 24) 흥병균의 당상관 녹패는 반록 첨지와 반사인을 모두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1838년(憲宗 5) 이최응 녹패 이후로 현재까지 조사된 당상관 녹패는 7건으로, 반사인이 답인된 흥병균 녹패 2건을 제외하면 5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당상

165) 頒賜印에 대한 사항은 당하관 녹패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166) 吏曹奉教賜, 嘉善大夫·唐城君 洪秉均, 今己丑年, 第 科祿者. 道光十五年正月 日. 判書·參判·參議臣金(着押)·正郎·佐郎.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청구기호: 119258)

167) 2012년 한옥선에서 병조 발행 1893년 趙秉世(1827~1905) 녹패의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이 녹패에는 頒賜印이 답인되지 않았다. 진위는 알 수 없으나, 1889년 이후부터 모든 당상관 반록에 반사인이 사용되었는가에 대해 의심해볼 여지는 있다.

관 반록 기록의 변화 추이에 관한 사항은 상세하게 고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조사·검토를 통한 당상관 반록 기록의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2. 堂下官의 頒祿 籤紙

당하관의 반록 기록은 반록 첨지를 이용하여 반록 사항을 세로로 길게 작성하는 것과 녹패에 도장을 직접 찍는 방식이 있으므로 따로 나누어 고찰해 보아야 한다. 현재까지 조사된 녹패 가운데 반록 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이 도장으로 간소화되어 나타나는 최초의 녹패는 1851년(哲宗 2) 黃銑(생몰년 미상) 녹패이며, 황선 녹패 이전에도 반록 해당 月만을 수기로 녹패에 표기한 것이 있다. 2절에서는 당하관의 반록 첨지 기재 방식과 간소화된 반록 기록에 대하여 검토해 볼 것이다.

1) 頒祿 籤紙 기재 방식

당하관 녹패는 당상관 녹패와는 달리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당상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반록 첨지를 첨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하관 녹패 가운데 반록 첨지가 전하는 것을 통해 당하관 반록 첨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1589년(宣祖 22) 申之悌(1562~1624) 녹패와 반록 첨지이다.

<圖 IV-7> 1589년 신지제 녹패와 반록 첨지(87.0×53.0cm)¹⁶⁸⁾

※ {} 안은 추정

<p>녹패: 크기 미상</p>	
<p>① 己丑八月十五日, 中米一石, 造米¹⁶⁹⁾三石, 田米一石, 麥二石, 布二疋. [分臺之印] { 監察 [着名] [着押] } 廣興倉 [着名] [着押]</p> <p>② 己丑十月十三日, 造米四石, 太二石, 布一疋. [分臺之印] 監察 [着名] [着押] 廣興倉 [着名] [着押]</p>	

당하관의 반록 첨지는 세로×가로의 평균 크기가 약 76.3×46.9cm로 <圖 IV

168) 각주119.

169) 糙米라고도 매갈이, 매조미쌀을 일컫는다. 본 논문에서는 糙米와 造米의 표기를 造米로 통일하였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주)두산동아, 1999, 5529쪽.)

-7>의 신지제 반록 첨지처럼 녹패를 감쌀 정도로 크기가 컸다. 그런데 18세기 후반에는 종전보다 축소된 크기의 반록 첨지가 발견된다. 다음 <圖 IV-8>은 1786년(正祖 10) 趙弘鎮(1743~1821) 녹패와 반록 첨지이다.

<圖 IV-8> 1786년 조홍진 녹패와 반록 첨지¹⁷⁰⁾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발급된 당하관 녹패에 첨부된 반록 첨지는 1786년 조홍진 녹패에 첨부된 것처럼 녹패보다 작은 크기로 발급되기도 하였다.¹⁷¹⁾ 『典律通補』에서 반록 첨지를 소편지라고 지칭한 것은 당시 당하관 녹패

170) 吏曹奉教賜, 通訓大夫·司憲府執義 趙弘鎮, 今丙午年, 第 科祿者. 乾隆五十一年三月 日判書·參判·參議臣李(着押)·正郎·佐郎. 녹패 아래쪽의 陰影은 촬영시 발생한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의산古文2102.2-55)

에도 이처럼 작은 크기의 반록 첨지가 첨부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록 첨지의 크기가 줄어든 까닭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는, 녹패 발급 횟수가 일 년에 한 차례에서 일 년에 네 차례로 늘어나면서¹⁷²⁾ 한 건의 녹패에 3건의 반록 사항만을 기재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반록 품목이 줄어들면서 기재하게 되는 내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¹⁷³⁾

반록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은 당하관의 경우 당상관과 비교하면 소략한 편이다. 다음 <表 IV-1>은 당상관과 당하관의 반록 첨지 기재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表 IV-1> 반록 첨지별 반록 기록 방식

구분	정3품 당상관 이상	정3품 당하관 이하
반록 첨지 표기 방식	<p>某年某月某日。 正(從)某品、某月祿、米幾石幾斗、太幾石幾斗。</p>	<p>某年某月某日、(某月祿)米幾石幾斗、太幾石幾斗。</p>

171) 1786년 조홍진 녹패를 비롯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1783~1786년 趙弘鎭 녹패와 목포대학교 박물관 소장 1779년 尹孝寬 녹패에 작은 크기의 반록 첨지가 첨부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의산古文2102.2-53, 의산古文2102.2-141, 의산古文2102.2-59, 의산古文2102.2-58; 목포대학교 박물관 소장, 해남윤씨 윤희관 후손가기탁)

172) 각주27.

173) 부록2. 녹봉제에 따른 녹과 참조.

정3품 당상관 이상의 반록 첨지에는 녹봉 수령자의 녹과에 해당하는 품계까지 기록하지만, 정3품 당하관 이하의 반록 첨지에는 해당 일자와 반록 품목 및 수량만을 기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녹패 크기에서부터 반록 첨지, 그리고 반록 사항 기재에 이르기까지 당상관과 당하관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록 시 답인하는 인장도 당상관 반록 첨지와 마찬가지로 “分臺之印”에서 “廣興倉印”으로 바뀐다. 현전하는 녹패 중에는 1778년(正祖 2) 尹孝寬(1745~1823) 녹패에서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당상관의 반록 첨지에서 “廣興倉印”이 답인되는 1794년(正祖 18)보다 시기가 약간 앞선다.

마지막으로 당하관 반록 첨지의 서체 또한 매우 흘려 쓴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상관 반록 첨지처럼 楷書體로 정갈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허비되기 때문에 당하관 반록 사항을 빠르게 작성하여 반록 첨지 발급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업무의 효율을 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頒祿 기록의 간소화

현전하는 녹패 가운데 처음으로 반록 기록의 간소화가 발견된 것은 1803년(純祖 3) 윤효관 녹패이며, 手記로 반록 해당 월만을 표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음은 간소화된 반록 기록이 보이는 1803년 윤효관 녹패와 1888년(高宗 26) 趙用夏(1826~1909) 녹패이다.

<圖 IV-9> 19세기 목판식 녹패와 반록 기록174)



1803년 윤효관 녹패와 같이 간소화된 반록 기록의 등장은 당하관 녹패에 더는

174) 검은색 원으로 표시한 것은 手記 방식의 간소화된 반록 기록이다.

175) 吏曹奉教賜, 通訓大夫·行司憲府掌令 尹孝寬, 今癸亥年, 第 科祿者. 嘉慶八年十月 日, 行判書臣徐(着押)·參判·參議·正郎·佐郎. 목포대학교 박물관 소장. (강진 해남윤씨 운동기씨 기탁)

176) 兵曹奉教賜, 折衝將軍·行忠武衛副司正 趙用夏, 今戊子年, 第 科祿者. 光緒十四年正月 日, 判書·參判·參議·參知臣吳(着押)·正郎·佐郎.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우촌古文 2102.2-582)

반록 첨지가 첨부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간소화된 반록 기록에서 편의성을 더욱 추구한 방식으로 변한 것이 반사인을 통한 반록 사항 기재 방식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까지 조사된 녹패 가운데 간소화된 수기 방식이 등장한 윤효관 녹패 이래로 48년 뒤인 1851년 황선 녹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圖 IV-10> 간소화된 반록 기록

	
<p>1803년 윤효관 녹패¹⁷⁷⁾ 반록 기록</p>	<p>1851년 황선 녹패¹⁷⁸⁾ 반록 기록</p>
	
<p>1869년 기양연 녹패¹⁷⁹⁾ 반록 기록</p>	<p>1888년 조용하 녹패¹⁸⁰⁾ 반록 기록</p>

반록 사항의 기재 방식이 간소화된 수기로 작성될 때는 ‘某月下’, 혹은 月을 생략한 채 ‘某下’로 작성되었다. 반사인으로 반록을 표기한 이후에는 매년 干支가 변하기 때문에 해마다 새롭게 도장을 새겨야 했다. 그러므로 매년 조금씩 새기는 부분을 달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某月祿下’와 ‘某年某月’, ‘某年某月 石斗太(石

177) 목포대학교 박물관 소장. (강진 해남윤씨 운동기씨 기탁)

178) 창원황씨 소장. (『고문서집성』9, 86쪽.)

179) 장성 행주기씨 금강종가 소장.

18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우촌古文2102.2-582)

斗)’의 세 가지가 방식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간소화된 반록 기록은 수기로 작성된 ‘某月下’는 1803년부터 1818년(純祖 18)까지 보인다. 그리고 반사인으로 바뀐 이후에 처음 나타나는 ‘某月祿下’는 1851년 황선 녹패가 유일한데, 이는 간소화된 수기 작성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某年某月’은 1856년(哲宗 7)에서 1884년(高宗 21)까지 나타난다. 그리고 1886년(高宗 23)부터 ‘某年某月 石斗太(石斗)’ 방식이 나타나는데, 다음 해인 1887년(高宗 24) 李能九(1838~1908) 녹패에서 ‘某年某月’ 방식을 한 차례 더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干支某月 石斗太(石斗)’의 방식은 1886년(高宗 23) 朴弘壽(1814~1901) 녹패를 시작으로 1893년(高宗 30) 조용하 녹패까지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는 간소화된 반록 기록을 시기별로 분류한 것이다.

<表 IV-2> 頒賜印 방식 반록 기록 시기별 분류

연번	시기	반록 기록 방식	
1	1803년 이후	手記	某月下(某下)
2	1851년 이후	頒賜印	某月祿下
3	1856년 이후		某年某月
4	1886년 이후		某年某月 石斗太(石斗)

반록 기록에서 간소화된 수기 방식과 반사인 방식이 등장하게 된 것은 월봉을 지급하게 되면서 행정 업무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정적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에는 반록 일자만을 기록하였으나 후기로 가면 ‘某年某月’ 아래에 ‘石斗太(石斗)’를 더 추가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존 반록 사항 기재 방식과 마찬가지로 반록 수량을 표기하고자 한 의도로 볼 수 있다. <圖 IV-10>의 1888년 조용하 녹패의 반사인처럼 반록 수량 또한 “二下”와 같은 방식으로 도장을 이용해 찍고 있다. ‘石斗太(石斗)’에서 太는 黃豆를 가리킨다. 그리고 ‘石斗’는 당시에 반록한 품목이 米와 黃豆에 불과하였으므로 米의 수량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반사인은 陽刻과 陰刻으로 나타나는데, 음각의 경우 현재까지 조사된 녹패 가운데 1880년(高宗 17)과 1881년(高宗 18) 李仁宇(생몰년 미상) 녹패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⁸¹⁾ 그리고 1867년 奇陽衍(1827~1895) 녹패의 반사인 ‘丁卯九月’과 ‘丁卯十月’에는 먹으로 ‘×’자 표시를 해 놓았는데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반사인의 크기는 세로×가로로 평균이 약 5.2×2.5cm이다. 주로 墨印으

181) 경기도박물관 소장. (청구기호: 001962-000; 001963-000)

로 답인되었으며, 1889년 이인우 녹패의 8월 반록인에서 처음 朱印으로 답인된 것이 보인다. 다음은 반사인의 양각과 음각 방식이 동시에 사용된 녹패와 朱印이 사용된 녹패이다.

<圖 IV-11> 頒賜印



1888년 조용하 녹패에서는 반사수량까지 도장으로 찍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사수량을 표기하는 도장의 크기는 약 1.6×0.8cm이다. 頒賜數量印은 반사인과 마찬가지로 목인 또는 주인으로 답인되는데, 1890년과 1891년 조용하 녹패에서는 靑印으로 답인 된 것도 보인다. 다음 <圖 IV-12>는 반사수량인이 사용된 경우이다.

<圖 IV-12> 頒賜數量印



182) 경기도박물관 소장. (청구기호: 001963-000)

18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우촌古文2102.2-623)

<圖 IV-11>을 통해 반사인과 반사수량인이 동일한 색으로 답인되지는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반사수량인은 정확하게 판독하기 어려운 것이 많으며, 반사인의 ‘石’을 먹으로 그어놓은 것도 확인할 수 있다. 1888년과 1893년 조용하의 관직은 종7품 副司正으로 1721년 『續大典』 녹과에 의하면 米 13斗와 黃豆 5斗를 반사하게 되어있다. 규정상 그에게는 米를 전혀 반록하지 않으므로 ‘石’ 위에 먹으로 줄을 그어 삭제 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1절과 2절의 검토를 통해 녹패 발급과 마찬가지로 반록 첩지 또한 당상관과 당하관을 기준으로 크기를 달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아울러 양식 또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상관의 반록 첩지는 조선 후기까지 대체로 크기가 작으며, 기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1889년과 1890년 흥병균 녹패에는 반록 첩지를 첨부하지 않고, 반사인을 통해 반록이 이루어졌다. 당하관 반록 첩지의 크기는 녹패를 감쌀 정도로 컸으나, 18세기 후반에는 녹패보다 크기가 작은 것이 첨부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당하관에 한하여 목판식 녹패가 발급된 이후 1803년 윤희관 녹패를 시작으로 반록 기록이 간소화되었고, 더는 반록 첩지가 첨부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頒祿 籤紙와 祿俸制의 운용 실태

반록 사항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녹봉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녹봉제 연구에 대한 검토는 앞서 언급한 적이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실록 및 문헌 사료와 기왕의 녹봉제 연구¹⁸⁶⁾를 기반으로 조선시대 녹봉제의 변천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녹봉제는 크게 육삭반록제, 사맹삭반록제, 월봉제의 틀에서 준행되었다. 조선 건국 후 시행된 육삭반록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문헌 사료를 통해 상고할 수 없고, 1407년(太宗 7)에 품에 따라 녹과를 개정하였다는 실록 기사가 전한다.¹⁸⁷⁾ 이후 1435년(世宗 17)부터 논의된 사맹삭반록제가 1439년(世宗 21)에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의 외침과 잇따른 흉년으로 임시로 반

18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우촌古文2102.2-582)

18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우촌古文2102.2-670)

186) 최정환, 『高麗·朝鮮時代 祿俸制 研究』, 경북대학교출판부, 1991, 251~271쪽.

187) 1407년 개정녹과를 更定祿科라고 한다. (최정환, 위의 책, 233~235쪽.)

록제를 폐지하고 월봉을 지급하였다. 1647년(仁祖 25)과 1670년(顯宗 11)에 녹과를 다시 개정하였으나 법제상 녹봉제는 여전히 사맹삭반록제를 유지하였다. 1701년(肅宗 27)에 개정된 녹과는 월봉제의 시작이었으며, 1721년(景宗 元年) 개정된 녹과는 『續大典』에 실렸으며, 甲午改革 이전까지 준행되었다. 시기별 녹봉제에 따른 녹과는 부록으로 기재하였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육삭반록제와 사맹삭반록제, 월봉제로 녹봉제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다시 각각의 녹봉제에서 녹과가 변화된 시기를 구분하여, 반록 첨지 기록과 비교·검토를 통해 녹봉제의 운용 실태를 검토하고자 한다.

1) 六朔頒祿制

육삭반록제 시기의 녹패에는 녹과와 반록액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반록 첨지가 전하지 않는데, 별도로 반록 첨지를 발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록 첨지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반록 행정이 규정 녹과에 따라 준행되었는가에 대한 여부는 검토하기 어렵다. 다만, 녹패에 기록된 녹과를 통해 당시 반록이 이루어지는 기준을 고찰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육삭반록제 시기 녹봉제의 운용 실태는 현전하는 녹패를 통해 반록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육삭반록제 시기에 발급된 녹패에 기록된 반록액과 更定祿科 반록액¹⁸⁸⁾을 비교한 표이다.¹⁸⁹⁾

188) 『太祖實錄』 1407년(太祖 7) 1월 16일: “更定百官祿科. 左政丞河崙言: 各品祿科不同, 請增減詳定. 從之. 一科在內大君·政丞已上, 祿米一百石·紬布正布共三十二匹. 二科在內諸君·議政府贊成事已上, 祿米九十石·紬布正布共二十七匹. 三科異姓諸君·開城留後已上, 祿米八十五石. 四科異姓諸君·開城留後司副留後已上, 祿米八十石·紬布正布皆共二十六匹. 五科異姓諸君·正三品成均大司成已上, 祿米七十石, 判典醫監事已上, 祿米六十八石·紬布正布皆共二十三匹. 六科從三品, 祿米六十五石·紬布正布共二十一匹. 七科正四品, 祿米六十石·紬布正布共二十四匹. 八科從四品, 祿米五十五石·紬布正布共十九匹. 九科正五品, 祿米四十九石·紬布正布共十八匹. 十科從五品, 祿米四十七石·紬布正布共十七匹. 十一科正六品, 祿米四十二石·紬布正布共十六匹. 十二科從六品, 祿米四十石·紬布正布共十五匹. 十三科正七品, 祿米三十石·正布十四匹. 十四科從七品, 祿米二十八石·正布九匹. 十五科正八品, 祿米二十三石·正布七匹. 十六科從八品, 祿米二十一石·正布六匹. 十七科正九品, 祿米十六石·正布五匹. 十八科從九品, 祿米十四石·正布四匹. 權務, 祿米九石·正布三匹.”

189) 박성호, 앞의 논문, 75~77쪽.

<表 IV-3> 六朔頒祿制 시기 반록 기록 비교

※ 1石=20斗(全石)

연번	문서명	품계/ 관직	녹과/ 반록액	更定祿科/ 반록액
1	1394년 도응 녹패	宣節將軍(정4품)/ 興威衛左領將軍(정4품)	제9과/ 170石	제7과/ 米 60石, 紬布·正布 20疋
2	1398년 김운보 녹패	嘉靖大夫(종2품)/ 檢校中樞院副使(종2품)	제9과/ 170石	제4과/ 米 80石, 紬布·正布 26疋
3	1414년 류관 녹패	資憲大夫(정2품)/ 司憲府大司憲(종2품)	제3과/ 290石	제3과/ 米 85石, 紬布·正布 26疋

도응과 김운보의 품계와 관직은 각각 정4품과 종2품인데 제9과 녹을 반록하였고, 류관의 품계는 정2품, 관직은 종2품인데 제3과록을 반록하였다. 도응과 김운보는 각각 품계와 관직이 정4품과 종2품으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녹과를 반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녹과는 1407년에 정해진 녹과와 비교해보아도 이질적이다. 이를 통해 육삭반록제 시행 시기에는 애초에 품계나 관직에 따른 일정한 녹과가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1407년 河崙이 “각 품의 祿科가 같지 않으니 增減하여 詳定하소서”¹⁹⁰⁾ 라고 말한 내용을 통해 1407년 이전에는 녹과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졌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1407년 이후 품에 따라 일정한 녹과를 상정한 경정녹과가 등장한 것이다.

류관의 녹패에는 제3과록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407년 개정된 육삭반록제에서 제3과록은 정2품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선 초기 경정녹과로 개정된 이후 품계에 따라 녹봉을 지급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최정환은 1407년 경정녹과의 제1과에서 제5과가 관직의 품이 나타나지 않고 政丞·議政府贊成事와 같이 실직을 그대로 제시한 것은 당시 실직을 기준으로 녹과를 규정했기 때문이라 주장하였다.¹⁹¹⁾ 그러나 실제로는 실직이 아닌 품계를 기준으로 반록이 이루어지는 것을 류관 녹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초기 반록이 품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후 살펴볼 배임과 정식 녹패에서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190) 각주 188.

191) 최정환, 앞의 책, 234쪽.

2) 四孟朔頒祿制¹⁹²⁾

1438년(世宗 20)에 녹과를 개정하면서 일 년에 네 차례 반록을 실시하는 사맹삭반록제가 제정되었고,¹⁹³⁾ 1439년에 처음 시행되었다.¹⁹⁴⁾ 사맹삭반록제의 반록 수량은 1407년에 개정된 육삭반록제의 수량을 1년에 네 차례로 나눈 것이다.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한 해 동안 반록하는 수량에는 변화가 없으나 全石(20斗=1石)에서 平石(15斗=1石)으로 바뀐 것으로, 실제 반록 수량은 줄어들었다.¹⁹⁵⁾ 이후 편찬된 『經國大典』에 규정된 녹과는 錢文 대신 楮貨를 지급하는 것 외에 지급 녹봉액의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녹봉제는 크게 흔들리게 된다. 사맹삭반록제는 1438년 개정 사맹삭반록제와 임진왜란 이후, 그리고 1647년(인조 25)과 1670년(顯宗 11)으로 시기를 나누어 검토해 볼 것이다.

① 1438년(世宗 20) 개정 四孟朔頒祿制

1439년부터 『經國大典』 반포 직전인 1484년(成宗 15)까지 발급된 녹패 가운데 반록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총 38건이다. 1449·1452년 배임 녹패와 1463년 정식 녹패는 반록 수량을 녹패에 기재하고 있으며, 1467년 정식 녹패부터 녹과만 기재하고 있다는 것을 III장에서 살펴보았다. 반록 수량을 녹패에 기재하고 있는 녹패 3건과 사맹삭반록제의 반록 수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¹⁹⁶⁾

<表 IV-4> 四孟朔頒祿制 시기 반록 기록 비교

※ 1石=15斗(平石)

연번	문서명	품계/ 관직	녹패 녹과- 반록액	1438년 六朔頒祿制- 반록액(1년 총액)
1	1449년 배임 녹패	進義副尉(중9품)/ 右軍攝司勇(정9품)	제18과-20石	제18과(중9품)-米 12石, 紬布·正布 2疋, 錢 50文
2	1452년 배임 녹패	修義副尉(중8품)/ 右軍攝副司正(중7품)	제16과-30石	제16과(중8품)-米 19石, 紬布·正布 4疋, 錢 100文

192) 四孟朔頒祿制는 녹과가 개정된 것에 따라 다섯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녹봉제의 변화는 『增補文獻備考』에 기록된 시기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193) 『世宗實錄』 20년(1438) 7월 21일: “議政府據戶曹呈啓: 今定四孟朔頒祿之制, 請以在先一年所頒, 酌定其數. …”

194) 『世宗實錄』 21년(1439) 1월 7일: “始行四孟朔頒祿.”

195) 최정환, 앞의 책, 256쪽.

196) 박성호, 앞의 논문, 78~80쪽.

3	1463년 정식 녹패	資憲大夫(정2품)/ 知中樞院事(중2품)	제3과-290石	제3과(정2품)-米 81石, 紬 布·正布 19疋, 錢 900文
---	----------------	--------------------------	----------	---------------------------------------

앞서 1407년 녹과가 개정된 이후 류관 녹패에 기재된 녹과를 통해 품계에 따른 반록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表 IV-4>을 통해 1463년 정식 녹패에서도 품계에 따라 반록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1463년까지 반록은 품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녹패 발급 관청이 이조와 병조로 分掌된 1466년 이후 반록 기준에 변화가 발생하는데, 다음 <表 IV-5>는 1467년 정식과 1491년 김종직 녹패의 녹과이다.¹⁹⁷⁾

<表 IV-5> 정식·김종직 녹패의 녹과

연번	문서명	품계	관직	녹패 녹과
1	1467년 정식 녹패	資憲大夫 (정2품)	[中]樞府同知事(중2품)	제4과(중2품)
2	1491년 김종직 녹패	資憲大夫 (정2품)	知中樞府事(정2품)	제3과(정2품)

앞서 1407년 녹과와 1438년 녹과는 품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 보았다. 그런데 1467년 정식과 1491년 김종직 녹패는 품계가 아닌 관직을 기준으로 녹과가 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經國大典』 시행 이후 녹봉제에서 획일법이 시행된 것을 보여준다.¹⁹⁸⁾ 이러한 사실은 1590년(宣祖 23)에 발급된 신지제 녹패를 통해 더욱 확실해지며, 관직에 따른 녹과 규정은 이후의 모든 녹패에 적용된다. 당시 신지제의 품계는 중6품 宣敎郎이고, 관직은 중7품 司贍寺直長이었다. 그리고 그의 녹패에 기록된 녹과는 제14과였으며,¹⁹⁹⁾ 반록 첨지 기록에 의하며 그에게는 『經國大典』의 중7품 녹과인 第14科祿을 지급하였다. 녹패에 기록된 녹과와 반록 첨지의 반록액을 검토해 본 결과 관직을 기준으로 반록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1467년 정식, 그리고 1491년 김종직 녹패와 더불어 녹패 양식의 녹과 부분 표기가 녹과·반록액·지급창에서 녹과만으로 간소화된 이후 관직을 기준으로 반록이 이루어진 사실을 분명하게 보

197) 박성호, 앞의 논문, 80~81쪽.

198) 『成宗實錄』 23년(1492) 7월 24일: “大典(『經國大典』)載頒祿科限, 此畫一之法也. …”

199) 각주119.

여준다.

다음 <表 IV-6>은 1590년(宣祖 23) 이조에서 신지제에게 발급한 녹패의 반
 록 첨지 기록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表 IV-6> 『經國大典』 제14과와 1590년 신지제 반록 기록

※ 음영은 신지제 반록 기록

반록 일자	반록 품목 ²⁰⁰⁾															
	中米 (石)		造米 (石)		田米 (石)		豆 (石)		麥 (石)		紬 (疋)		正布 (疋)		楮貨 (丈)	
1월	1	1	3	4	1	·	2	2	·	·	·	·	2	2	2	2
4월	1	1	4	5	·	·	·	·	1	1	·	·	1	1	·	·
7월	1	1	3	2	1	1	·	·	2	2	·	·	2	2	·	·
10월	·	·	4	4	·	·	2	2	·	·	·	·	1	1	·	·

신지제에게 지급한 녹봉 수량은 『經國大典』 녹과의 수량과 약간의 차이를 보
 인다. 그러나 반록 수량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1월에는 田米 대신 造米를 1석
 반록하였으며,²⁰¹⁾ 4월에는 조미 1석을 더 반록한 대신 7월에 조미 1석을 덜 반
 록하였으므로 1년 동안 반록한 녹봉의 수량은 『經國大典』 녹과와 동일하다. 따
 라서 『經國大典』 녹과에 따라 반록이 준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壬辰倭亂 이후

건국 후 200년 만에 발발한 임진왜란은 국가 재정의 파탄을 불러왔으며, 이는
 문무관원의 녹봉에도 어김없이 영향을 미쳤다. 1600년(宣祖 33) 호조에서 올린
 啓 가운데 “만약 頒祿의 제도를 회복한다면 이조와 병조에서는 마땅히 祿牌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²⁰²⁾라는 내용이 있고, 현전하는 녹패도 또한 1591년(宣祖
 24) 신지제 녹패를 마지막으로 16세기 녹패는 전하지 않는다. 17세기 녹패 가운
 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 1604년(宣祖 37) 李彦英 녹패인 것으로 보아 임진왜

200) 반록 품목은 녹과에 따라 지급하지 않더라도 해당 녹봉제에서 지급하는 품목은 모두
 표기하였다. 이하 동일.

201) “庚寅年[正]月[日]: [中]米一石, 造米三石, 田米本造米一石, 太二石, 布二疋, 楮貨二
 丈.”의 ‘田米本造米一石’에서 本의 의미는 ‘...대신에’로 사용되어, ‘田米 대신 造米 1石’
 으로 해석된다. (김현영, 「고문서 용어풀이 : 『本』字攷」, 『古文書研究』24, 2004.)

202) 『宣祖實錄』 33년(1600) 11월 18일: “戶曹啓曰: 忠[臣]重祿, 所以勸士, 頒祿一事, 載
 在法典. 本曹之務, 此其大節目, 所不可廢者也. 經變以後, 事多苟簡, 乃有給料之規. 今者又
 爲舉行於久停之餘, 人人希望, 各司啓請紛然. 名雖爲料, 其路日廣, 甚非可繼之道也. 若復頒
 祿之制, 則吏·兵曹, 自當成給祿牌. 法典有云: 祿無越階. 雖高品之人, 亦隨見在職名而受祿.
 此外又有一年兩等受祿者, 亦有升降付祿者, 其法至纖密也. …”

란 발발과 더불어 녹패 발급과 반록 행정이 일시적으로 중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이 종식된 후 국가 재정은 정상화되지 못하였고, 1624년(仁祖 2) 1월 4일 호조에서는 올해 녹봉을 모두 반으로 줄여야겠다는啓를 올리는 상황에까지 이른다.²⁰³⁾ 이후에도 끊임없이 반록 행정은 중단되었으며, 1647년(仁祖 25) 백관의 녹봉 제도를 개정하는데 이르렀다.²⁰⁴⁾ 임진왜란 이후부터 1647년까지 여러 차례 반록 행정이 중단되었고, 반록이 시행된 이후에는 반록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大米를 반록하였다.²⁰⁵⁾ 당시 반록 행정에 관하여 반록 첩지와 함께 전하는 녹패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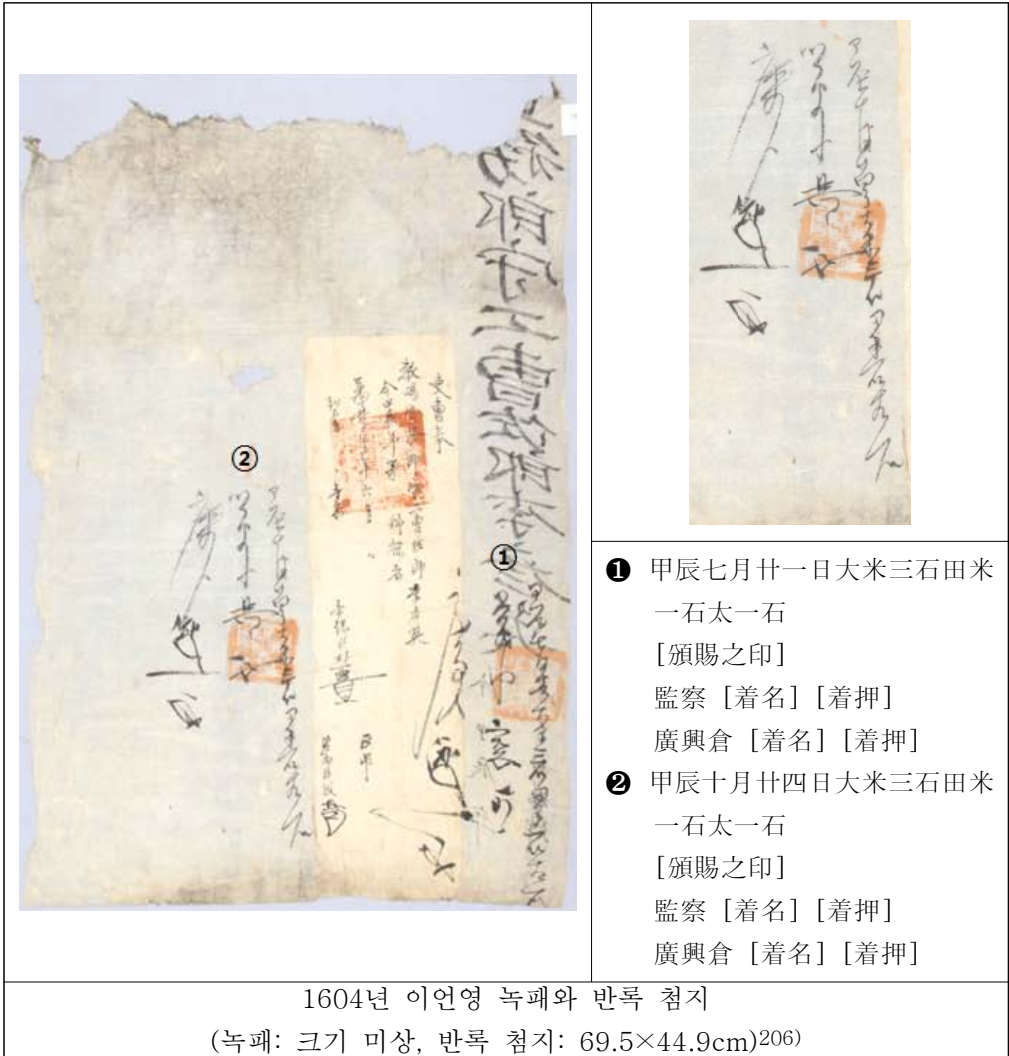
임진왜란이 평정된 이후에 발급된 녹패인 1604년 이언영 녹패와 반록 첩지에 기록된 반록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3) 『仁祖實錄』 2년(1624) 1월 4일: “戶曹啓曰: 今春等頒祿, 當用米一萬五百餘碩, 豆四千六百餘碩, 而目今廣興倉見儲之數, 米僅八百八十碩, 豆二百三十碩而已. 不得已以別營米二千餘碩, 除出參用, 而百官祿俸, 皆減半題給之意, 敢啓. 上曰: 知道.”

204) 『增補文獻備考』 職官考24, 職田, 祿俸: “仁祖二十五年, 改定祿俸. 春等, 正一品: 米十一石·田米二石·黃豆四石, 大君則米加三石. 從一品: 米十石·田米二石·黃豆三石, 正二品: 米九石·田米二石·黃豆三石, 從二品: 米八石·田米二石·黃豆三石, 正三品: 米七石·田米二石·黃豆三石, 堂下正三品: 米七石·田米二石·黃豆二石, 從三品: 米六石·田米一石·太三石(■太黃豆), 四品: 米五石·田米一石·黃豆二石, 五品: 米五石·田米一石·黃豆二石, 六品: 米四石·田米一石·黃豆二石, 七品: 米三石·田米一石·黃豆二石, 八品: 米三石·田米一石·黃豆一石, 九品: 米二石·黃豆一石. 夏秋冬等同.”

205) 『宣祖實錄』 34년(1601) 1월 3일: “戶曹啓曰: 今年正月爲始頒祿事, 已爲啓下矣. 若專給小米, 則不久小米先缺. 京倉時遺在大米, 約有五千餘石. 解水之後, 漕運上來, 則或可繼之. 春等頒祿時, 大米從略參給. 何如? 傳曰: 允.”

<圖 IV-13> 四孟朔頒祿制 시기 녹패 1



- ① 甲辰七月廿一日大米三石田米一石太一石
[頒賜之印]
監察 [着名] [着押]
廣興倉 [着名] [着押]
- ② 甲辰十月廿四日大米三石田米一石太一石
[頒賜之印]
監察 [着名] [着押]
廣興倉 [着名] [着押]

당시 이언영의 관직은 정6품 工曹 佐郎으로 『經國大典』 祿科條에 의하면 정6품에게는 제11과의 녹봉을 지급한다. 다음은 『經國大典』 녹과와 이언영에게 실제 반록한 녹봉을 비교한 표이다.

206) 吏曹奉教賜, 宣務郎·守工曹佐郎 李彦英, 今甲辰年, 第 科祿者. 萬曆三十二年六月 日. 判書·參判·參議臣朴(着押)·正郎·佐郎. 성주 명곡 벽진이씨 완석정 종택 소장. (『고문서집성』93, 34~39쪽.)

<表 IV-7> 『經國大典』 제11과와 1604년 이언영 반록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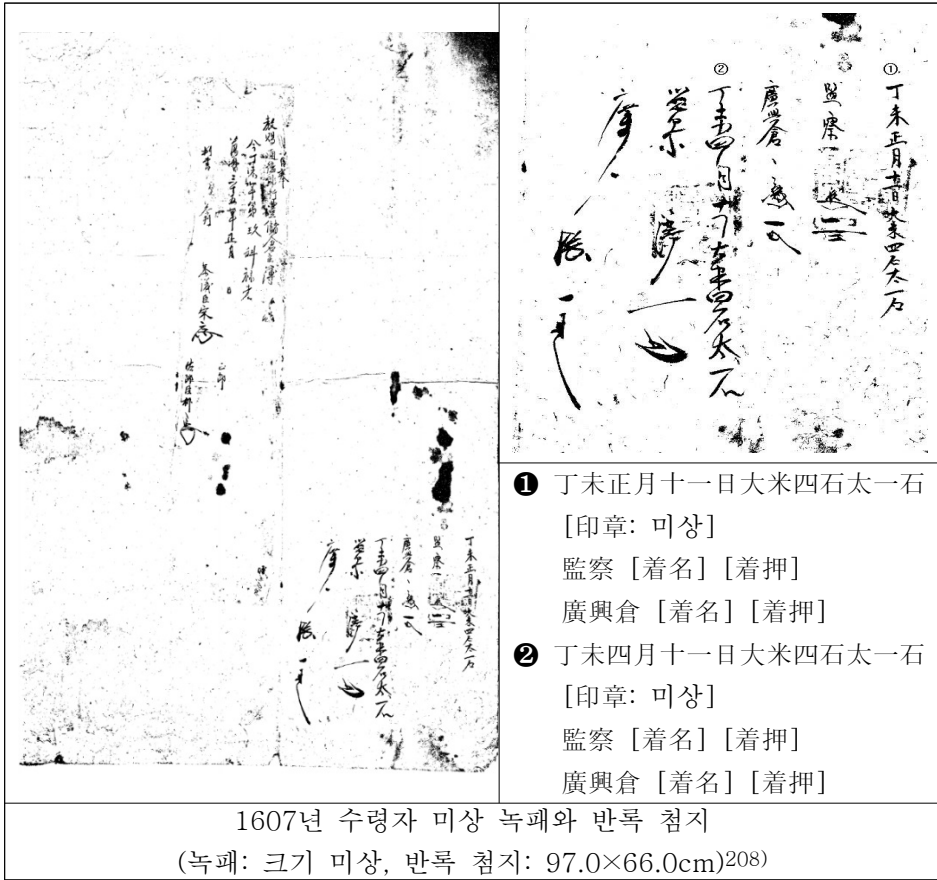
※ 음영은 이언영 반록 사항

반록 일자	『經國大典』 제11과								이언영 반록 사항		
	中米 (石)	造米 (石)	田米 (石)	黃豆 (石)	麥 (石)	紬 (疋)	正布 (疋)	楮貨 (丈)	大米 (石)	田米 (石)	太 (石)
7월	1	5	1	·	2	·	3	·	3	1	1
10월	1	4	1	4	·	·	2	·	3	1	1

1601년에 사맹삭반록제가 회복되었기 때문에²⁰⁷⁾ 광흥창에서는 7월과 10월에 이언영에게 녹봉을 지급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經國大典』 녹과에서는 반록 시기에 따라 반록 품목과 수량의 편차를 두어 반록하였지만, 반록 품목과 반록액은 반록 시기와 관계없이 제한된 품목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經國大典』 녹과에 미치지 못하는 수량을 반록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1607년(宣祖 40)에 발급된 수령자 미상의 반록 첨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7) 각주205.

<圖 IV-14> 四孟朔頒祿制 시기 녹패 2



위의 녹패를 발급받은 자의 관직은 중6품 豐儲倉 主簿이므로, 그에게는 제12과의 녹봉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大米 4석과 太 1석을 반록하는데 그쳤다.

<表 IV-8> 『經國大典』 제12과와 수령자 미상 반록 기록

※ 음영은 수령자 미상 반록 사항

구분	『經國大典』 제12과								수령자 미상 반록 사항	
	中米 (石)	造米 (石)	田米 (石)	麥 (石)	豆 (石)	紬 (疋)	正布 (疋)	楮貨 (丈)	大米 (石)	太 (石)

208) 吏曹奉教賜, 通德郎·豐儲倉主簿 [] [] [], 今丁未年, 第玖科祿者. 萬曆三十五年正月 日. 判書·參判·參議臣宋(着押)·正郎·佐郎臣朴(着押). 영해 인량 재령이씨 충효당 소장. (『고문서집성』33, 8쪽.)

반록 수량	5	17	2	4	8	1	9	4	4	1
----------	---	----	---	---	---	---	---	---	---	---

앞서 살펴본 1604년 이연영의 반록 첩지와 1607년 수령자 미상의 반록 첩지를 통해 임진왜란 이후 녹봉제로써 사맹삭반록제는 유지되었으나, 『經國大典』 祿科條에 규정된 반록 수량에 준한 반록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남아있는 녹패 가운데 반록 첩지가 첨부되어있는 것은 총 8건이고, 그 가운데 4건은 결락이 심해 판독하기 어렵다. 판독 가능한 1612년 황신과 1625년 최연, 1628년 윤선도의 반록 첩지를 통해 1628년까지 사맹삭반록제가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²⁰⁹⁾ 그리고 1630년(仁祖 8) 李聖基(생몰년 미상)의 반록 첩지에 반록 일자가 2월과 3월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월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록 기사를 통해서 1637년(仁祖 15)에서 1646년(仁祖 24)까지 월봉을 지급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²¹⁰⁾

<表 IV-9> 17세기 초 반록 일자

연번	受祿者	반록 일자
1	1612년 黃愼	10월 25일
2	1625년 崔蓆	7월 11일
3	1628년 尹善道	4월 17일, 4월 22일, 7월 13일, 10월 13일
4	1630년 李聖基	2월 15일, 3월 1일

현재까지 조사된 녹패와 문헌 사료를 통해 이 시기에 이루어진 반록 행정은 일관성 없이 재정 형편에 따라 반록을 중지하고 회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계속되는 재정 궁핍으로 1647년 녹과를 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9)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612년(光海君 4)과 1624년(仁祖 2) 사이에 四孟朔頒祿制가 일시 중단되었었다. (『仁祖實錄』 2년(1624) 3월 23일: “命復頒百官祿. 時百官皆給散料, 戶曹言: 頒料之際, 奸弊百出, 或有不當受而受者, 或有疊受者, 今日付職, 明日受料, 軍職虛資, 皆受高品, 雖欲詳查以杜虛僞, 許多人員, 勢難防奸. 給料之數, 反多於給祿, 請自四月給祿. 上從之.”)

210) 『仁祖實錄』 24년(1646) 11월 21일: “上命自明年, 百官頒祿. 自丁丑(1635, 仁祖15)以後, 廢頒祿之規, 逐朔給料, 至是御供裁減之物, 已皆復常, 百官冠服, 亦復舊制, 故有是命”

③ 1647년(仁祖 25) 개정 녹과

앞서 이언영과 수령자 미상에게 반록한 품목은 각각 “大米·田米·太”와 “大米·太”인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1647년(仁祖 25)에 개정된 녹과의 품목은 “米·田米·太”로, 품목에서는 약간의 조정이 발생하였으며, 반록액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전의 녹과는 正品과 從品을 각각 1과씩 설정하여 총 18과였으나, 1647년 개정 녹과에서는 정1품에서 종3품까지는 정품과 종품을 각각 1과씩 설정하고 정4품 이하는 정품과 종품을 동일한 녹과로 설정하여 녹과가 18과에서 13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1647년 개정 녹과는 품목과 녹과, 그리고 반록액에서 변화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²¹¹⁾

현재까지 조사된 녹패 가운데 1647년부터 1669년(顯宗 10)까지 반록 첨지가 전하는 것은 총 13건이다.²¹²⁾ 다음 표 <表 IV-10>은 1660년(孝宗 1)까지 발급된 송준길 녹패 가운데 반록 첨지가 붙어있는 녹패를 정리한 것이며, 다음 <表 IV-11>은 1647년 개정 녹과와 송준길 반록 기록을 비교한 것이다.

<表 IV-10> 1649년 ~ 1660년 송준길 관직과 반록 기록

연번	발급시기	관직	반록 사항	
			造米(石)	太(石)
1	1649년 10월	司憲府 執義 (종3품)	6	3
2	1650년 1월	世子侍講院 進善 (정4품)	5	3
3	1658년 1월	世子侍講院 贊善 (정3품당상)	7	3
4	1658년 10월	司憲府 大司憲 (종2품)	8	3
5	1659년 1월	司憲府 大司憲 (종2품)	8	3
6	1660년 1월	吏曹 判書 (정2품)	9	3

<表 IV-11> 1674년 개정 녹과와 송준길 반록 기록 비교

* 음영은 송준길 반록 사항

연번	녹과	1647년 개정 녹과			송준길 반록 사항	
		米(石)	田米(石)	黃豆(石)	造米(石)	太(石)
1	제7과 (종3품)	6	1	3	6	3

211) 부록Ⅱ. 녹봉제에 따른 녹과 참조. (최정환, 앞의 책, 268~270쪽.)

212) 宋浚吉 6건, 朴長遠 2건, 李敬輿·尹善道·張應一·淑敬公主·朴鑽 각 1건.

2	제8과 (정종4품)	5	1	3	5	3
3	제5과 (정3품당상)	7	2	3	7	3
4	제4과 (종2품)	8	2	3	8	3
5	제4과 (종2품)	8	2	3	8	3
6	제3과 (정2품)	9	2	3	9	3

송준길에게 반록한 품목은 造米와 太畚이며, 개정된 녹과에 규정되어 있는 田米는 전혀 반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반록 품목을 축소하고 반록액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녹과를 개정하였으나, 당시 재정 상황에서는 그마저도 힘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④ 1670년(顯宗 11) 개정 녹과

1670년에서 1701년(肅宗 27)까지 실록 및 문헌 사료를 통해 조사한 녹봉제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 ① 1670: 녹봉제도 개정(四孟朔頒祿制) ⇒ ② 1671년 6월: 월봉 지급
- ⇒ ③ 1676년 2월: 반록 회복 ⇒ ④ 1681년 12월: 월봉 지급
- ⇒ ⑤ 1689년 10월: 반록 회복 ⇒ ⑥ 1696년 1월: 월봉 지급
- ⇒ ⑦ 1701년 녹봉제도(月俸制) 개정

1670년 녹과를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71년 임시로 반록을 폐지하고 월봉을 지급하였다.²¹³⁾ 그리고 1676년에 다시 반록을 실시하는²¹⁴⁾ 등 1701년에 거듭 녹과를 개정하기 전까지 임시로 반록을 폐지하고 회복하며, 녹봉액을 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부족한 재정상황 속에서도 녹봉지급을 위해 모색한 타개책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701년 사맹삭반록제를 월봉제로 전환하였다.

1670년부터 1700년까지 현전하는 녹패는 26건이고, 반록 첩지가 남아있는 녹패는 총 17건이다. 다음 <表 IV-12>은 1670년~1700년까지 전하는 반록 기록

213) 『顯宗實錄』 12년(1671) 6월 25일: “以國用不給, 權罷百官頒祿, 定爲逐朔散料之制, ...”

214) 『肅宗實錄』 2년(1676) 10월 1일: “大無之時, 國儲蕩竭, 減百官常祿之數, 每朔量給散料. 至是因尹鏞陳達, 命復舊, 自今冬等始.”

으로, 결락이 심하여 판독이 어려운 것은 제외하였다.

<表 IV-12> 1670년 ~ 1700년 반록 기록

※ 음영은 四孟朔頒祿, ▣은 결락(이하 동일)

연번	문서명	관직	반록 사항		반록 월
			米	太	
1	1673년 元相	全羅左道水軍節度使 (정3품 당상)	2石	12斗	12·1·2·3·4·5·6
2	1674년 元相	忠武衛 副司猛 (중8품)	12斗	3斗	8·9
3	1679년 元相	全羅左道水軍節度使 (정3품 당상)	造米 7石	3石	1·4
4	1679년 元德徽	忠武衛 副司勇 (중9품)	2石	1石	4
5	1682년 宋炳夏	司僕司 主簿 (중6품)	1石 3斗	6斗	12
6	1682년 黃玠	宗簿寺 正 (정3품 당하)	1石 ▣斗	▣斗	12
7	1683년 元相	三道統制使 (중2품)	2石	12斗	12·1·2·3·4·5·6 ·윤6·7·8·9·10· 11
8	1683년 黃玠	忠武衛 副司果 (중6품)	1石 3斗	6斗	4월 2회
9	1684년 元相	三道統制使 (중2품)	2石	12斗	12
10	1689년 張萬紀	義禁府 都事 (중6품)	1石 3斗	6斗	윤3·4
11	1689년 元相	同知中樞府事 (중2품)	1石 10斗	1石 7斗	12·1·2·3
12	1689년 張萬紀	義禁府都事 (중5품)	1石 3斗	6斗	5
13	1691년 張萬紀	刑曹佐郎 (정6품)	造米 3石 田米 1石	2石	7월 2회 10월 2회

14	1696년 黃夏英	忠武衛 副司勇 (중9품)	10斗	5斗	11·1·2·윤3
15	1696년 元德徽	全羅軍全左道水軍節 度使 (정3품 당상)	1石 13斗	12斗	12

이 시기의 녹과와 반록 침지를 통해 당시의 반록 실태를 검토해 보면, 1679년(肅宗 5) 元相과 1679년 元德徽, 그리고 1691년(肅宗 17) 張萬紀에게는 사망식에 반록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表 IV-13>은 원상·원덕휘·장만기에게 반록한 수량과 1670년 녹과를 비교한 것이다.

<表 IV-13> 四孟朔頒祿制 적용 녹과와 반록액 비교

※ 음영은 개인에게 반록한 수량
※ 米·豆(石), 紬·正布(疋)

연번	문서명	녹과	반록 사항		1670년 녹과			
			米	豆	米	太	紬	正布
1	1679년 元相 녹과	제5과	造米 7	3	7	4	·	·
2	1679년 元德徽 녹과	제13과	2	1	2	2	·	·
3	1691년 張萬紀 녹과	제10과	造米 3, 田米 1	2	4	3	·	·

이들의 반록 기록을 통해 반록 수량이 많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들에게 반록한 수량은 규정된 녹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매월 지급한 반록 수량도 또한 규정 녹과에 미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규정된 녹과가 있음에도 흉년과 漕運 상황 등으로 녹봉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녹봉액을 몇 차례 감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²¹⁵⁾ 그리고 紬·布의 경우 녹과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전혀 반록하지 않았다.

당시는 조선이 건국 후 약 300년이 흐른 뒤이며 임진왜란이 평정된 후 약 100여 년이 흐른 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태는 여전히 안정되지 못한 채 반록액의 증감과 녹봉제의 변동이 발생하고 있었다.

3) 月俸制

215) 1671년(顯宗 12)에는 “일정 녹에 비해 줄인”, 1682년(肅宗 8)에는 “頒祿하던 수보다 더 주었다”라는 식의 애매한 표현이 있어 增減額을 상고할 수 없다. (『顯宗實錄』 12년(1671) 6월 25일: “(상략) 比常祿所減…”; 『肅宗實錄』 8년(1682) 12월 10일: “(상략) 自今夏依頒祿數加給矣. …”)

사맹삭반록제 시기에 임시로 월봉을 지급하기는 했지만, 월봉제를 규정하고 시행한 것은 1701년(肅宗 27)이다. 이때부터 갑오개혁 이전까지 조선시대의 녹봉제는 월봉제가 유지되었다. 그리고 처음 월봉제가 제정된 이후 20년이 지난 1721년(景宗 元年)에는 다시 한 번 녹과를 개정하였다. 1701년과 1721년 녹과 모두 대군의 녹과를 별도로 두었으며, 米의 수량이 약간 줄어든 대신 黃豆의 수량은 약간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녹과가 개정된 1701년과 1721년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녹봉제의 운용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1701년(肅宗 27) 개정 녹과

1701년부터 1720년(肅宗 46)까지 현전하는 녹패는 1701년 李海朝(1660~1711) 녹패를 비롯하여 총 59건이며, 반록 첨지가 전하는 것은 1701년 이해조 녹패를 비롯하여 총 17건이다.

녹과가 개정된 해에 이해조에게는 1월에서 7월까지 총 7차례 “米 1石 3斗, 太 6斗”를 반록하였다. 당시 이해조는 정6품 戶曹 佐郎으로 1701년 개정 녹과의 제9과록(정6품)인 “米 1石 3斗, 太 6斗”와 일치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수치의 일치는 같은 해에 발급된 元德徽(생몰년 미상) 반록 첨지²¹⁶⁾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개정 녹과에 따른 반록은 지속되지 못하였고, 불과 2년 뒤인 1703년(肅宗 29) 이해조의 반록 첨지부터 반록액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해조의 반록 첨지는 1701년부터 1707년(肅宗33)까지 총 6건이 전하는데, 다음 <表 IV-14>는 이해조의 1703년에서 1707년 반록액과 1701년 개정 녹과를 비교한 것이다.²¹⁷⁾

<表 IV-14> 1701년 녹과와 이해조 반록액 비교

※ 음영은 이해조 반록 사항

연번	반록 월	녹과	반록 사항		1701년 녹과	
			米	豆	米	太
1	1703년 6·□월	제9과 (정종6품)	1石 2斗	8斗	1石 3斗	6斗
2	1707년 6·7월 ²¹⁸⁾	제6과 (종3품)	1石 3.5斗	1石 2斗	1石 9斗	9斗

216)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청구기호: 82129)

217) 결락 등으로 반록 기록을 판독할 수 없는 것은 제외하였다.

3	1707년 9·10·[11]월	제8과 (정중5품)	1石 2斗	8斗	1石 3斗	6斗
---	---------------------	---------------	-------	----	-------	----

1701년 월봉제로 녹봉제를 개정하여 반록하였지만 규정된 반록액에 준한 수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1721년 다시 한 번 녹과를 개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② 1721년(景宗 元年) 개정 『續大典』 녹과

1721년(景宗 元年) 개정된 녹과는 이후 英祖朝에 간행된 『續大典』에 실렸고, 이는 1838년(憲宗 4)까지 준행되었다. 현재까지 조사된 녹과 가운데 1721년 이후의 것은 총 213건으로, 그 가운데 반록 첨지와 반사인을 통해 반록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모두 114건이다. 그리고 114건 가운데 반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총 77건이며, 간소화된 수기 및 반사인을 통해 반록 기록이 전하는 것은 37건이다. 간소화된 수기 및 도장 형식으로 반록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반록액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 가운데 판독 가능한 것은 『續大典』 녹과와 비교·검토하였다.

다음은 『續大典』 祿科條의 반록액과 1739년(英祖 15) 李存道(1659~1745)와 1835년(憲宗 1) 李最應의 반록액을 비교한 것이다. 당시 이존도의 관직은 정2품 知中樞府事였고, 이최응은 종친으로서 興寧君에 봉해졌다.

<表 IV-15> 『續大典』 녹과와 18·19세기 반록액 비교

※ 음영은 개인에게 반록 한 수량

연번	문서명	녹과	반록 사항 (1월~7월)		『續大典』 녹과	
			米	豆	米	太
1	1739년 이존도 녹과	제3과 (정2품)	2石 2斗	1石 5斗	2石 2斗	1石 5斗
2	1835년 이최응 녹과	제2과 (중1품)	2石 2斗	1石 5斗	2石 2斗	1石 5斗

마지막으로 녹과가 개정된 1721년 이후 반록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반록 첨지는 총 77건으로 모두 『續大典』 녹과에 준하여 반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18) 1707년 6월 녹과에 첨부된 반록 첨지에는 6월과 7월 두 달치料로 米 2石 7斗, 太 2石 4斗를 수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절반으로 나눈 수치를 기록하되 7斗는 3.5斗로 표기하였다.

외부적인 요인에 상관없이 규정된 녹과에 따라 반록이 준행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스럽지만, 반록 첩지 외에 『願齋亂藁』 권24에서도 황윤석이 녹봉을 수령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²¹⁹⁾ 당시(1778년, 正祖 2) 그는 종6품의 司僕寺主簿였으므로,²²⁰⁾ 『續大典』 녹과로는 제9과가 된다.

<表 IV-16> 1779년 황윤석 수령액과 『續大典』 녹과 비교

※ 1石 = 15斗

1779년 황윤석 수령 녹봉	『續大典』 제9과(종6품)
1·2월 兩朔: 米 2石 2斗, 黃豆 1石 5斗	米 1石 1斗, 黃豆 10斗

1779년 황윤석이 수령한 녹봉은 법전의 녹과를 정확히 준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18세기 초반에 정해진 녹과가 약 80년 동안 변함없이 준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1838년 이최응 녹패의 반록 첩지까지 준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1889년, 1890년 흥병균의 당상관 녹패와 1886년(高宗 23) 이후의 당하관 녹패에는 반사인과 더불어 반사수량인으로 반록 사항을 기재한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반사수량인의 경우 관독할 수 있는 것이 적어 당시 반록을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1888년(高宗 25)과 1890(高宗 27) 조용하 녹패와 1889년, 1890년 흥병균 녹패 가운데 관독할 수 있는 반사수량인을 『續大典』 녹과와 비교해 보았다.

219) 『願齋亂藁』 권24, 二十七日戊午: “奴子與泮主人奴及二馬, 偕寺中使令一名巨達一名, 以官教祿牌, 赴廣興倉, 受正月二月兩朔料, 米二石二斗, 黃豆一石五斗, 以來. 正月一朔, 全給主人.”

220) 『承政院日記』 正祖 2년(1778) 1월 24일: “(상략) 朴存源·黃胤錫爲司僕主簿. …”

<表 IV-17> 19세기 말 반록액과 『續大典』 녹과 비교

※ 음영은 개인에게 반록한 것

연번	문서명	관직	반록 일자	반록액	『續大典』 녹과/ 반록액
1	1888년 조용하 녹패	忠武衛 副司正 (종7품)	5월	米 2斗, 太 2斗	제10과/ 米 13斗, 黃豆 5斗
			6월	米 3斗, 太 1斗	
			7월	米 3斗, 太 2斗	
			12월	米 1斗	
2	1889년 홍병균 녹패	唐城君 (종2품)	1월	米 1石 2斗, 太 5斗	제4과/ 米 1石 11斗, 黃豆 1石 5斗
			2월	太 3石 3斗	
			8월	米 1石 2斗	
			9월	米 1石 1斗	
			10월	米 1石 1斗	
3	1890년 조용하 녹패	忠武衛 副司正 (종7품)	1월	米 3斗, 太 1斗	제10과/ 米 13斗, 黃豆 5斗
			12월	米 2斗	
4	1890년 홍병균 녹패	唐城君 (종2품)	1월	米 1石 1斗	제4과/ 米 1石 11斗, 黃豆 1石 5斗
			12월	米 1斗	

조용하는 1888년과 1890년 모두 종7품 副司正으로, 『續大典』 녹과에 의하면 그에게는 “米 13斗, 黃豆 5斗”를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홍병균은 承襲되어 唐城君에 봉군되었는데, 그에게는 종2품 녹인 제4과의 “米 1石 11斗, 黃豆 1石 5斗”를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지급된 수량은 『續大典』 녹과보다 부족하며 매달 반록하는 수량도 일정하지 않다. 게다가 1890년 12월 조용하와 홍병균의 반록액을 비교해 보면 조용하는 종7품이고 홍병균은 종2품임에도 조용하에게 더 많은 수량이 지급되었다. 이를 통해 19세기 후반 녹봉제가 크게 흔들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모든 녹패의 반록 기록을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녹봉제의 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발굴과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祿牌의 발급 대상과 절차에 대해 분석하고, 『大典通編』 시행을 기준으로 변하게 되는 頒祿 절차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녹패의 양식과 구성 요소를 검토 한 후, 녹패가 크기를 달리하여 발급되는 기준에 대하여 규명하였고, 당하관 녹패에 한하여 등장하는 木版式 녹패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頒祿 籤紙에 기록된 반록 사항을 통해 1721년(景宗 元年)까지 여러 차례 발생한 녹봉제의 변화에 따른 녹봉제 운용 실태를 규명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조선시대 녹봉제 가운데 녹패를 통한 반록 행정에 한정하여 다루었기 때문에 광흥창 외에 放料 행정을 실시한 豊儲倉과 軍資倉의 녹봉 행정과 祿標를 통한 녹봉 지급에 관련된 사항은 다루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녹봉제와 녹봉 관련 문서를 종합한 후속 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I장 녹패의 발급과 반록 절차에서는 녹패의 발급 대상과 발급 과정에 대하여 살펴본 후 『大典通編』 시행을 전후의 반록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녹패 발급 대상자는 정1품에서 중9품까지의 문무관 정직과 무관 체아직인 護軍·大護軍·護軍·副護軍·司直·司果·司正·司猛·司勇, 그리고 宗室諸君·功臣(子孫)·駙馬·王親·外戚, 奉朝賀이다. 1466년(世祖 12) 이후부터 吏曹와 兵曹에서 각각 녹패를 발급하였다. 녹관이 녹봉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녹패 외에도 教旨, 그리고 『大典通編』 시행 이전에는 給祿所志가 필요하였다. 宗親·奉朝賀 및 새로이 관직에 제수된 자를 제외한 녹관은 戶曹에 급록소지를 제출하여 解由를 마쳤다는 것과 越俸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은 뒤에 교지와 녹패, 그리고 급록소지를 지참하고 녹봉을 수령할 수 있었다. 급록소지는 미관말직에 한정하여 발급하는 것이었으나, 1657년(孝宗 8) 宋浚吉의 경우 정3품 당상관인 世子侍講院 贊善이었음에도 급록소지를 발급하였다. 『大典通編』이 시행된 이후에는 吏曹와 兵曹에서 祿成冊을 작성하여 호조에 移文하면 호조 郎官이 관원의 解由와 越俸 유무를 확인하고 녹봉 지급 대상 목록을 광흥창에 移文하였기 때문에 개인이 더 이상 급록소지를 발급할 필요는 없었다. 『大典通編』 시행 이후 급록소지는 더 이상 발급되지 않았고, 교지와 녹패가 아직 발급되지 않아 녹봉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立旨를 청구하는 소지를 올리는 것을 확인하였다.

III장 녹패 양식과 형태적 차이에서는 녹패 양식과 녹패 구성요소를 검토한 뒤

녹패의 크기 차이와 변화에 대하여 규명하였다. 녹패 양식은 1466년(世祖 16) 이조와 병조로 발급 관청이 분장된 이후 『經國大典』에서 법제화되었다. 고려시대와는 다른 조선시대의 녹패식은 갑오개혁으로 현대식 봉급제로 전환되기 직전까지 준행되었다. 녹패의 始面은 “王命准賜”에서 “奉教賜”로, 이조와 병조로 발급 업무가 분장된 이후로는 “吏·兵曹奉教賜”로 변화되어 준행되었다. 본문에 표기되는 녹과는 『經國大典』 시행 이전에는 녹과와 반록액, 지급 창고(京倉=廣興倉)를 모두 표기하였으나, 17세기 중반부터 녹과만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되었다.

祿科 표기는 또한 月俸制가 시행된 이후 宗室 및 大匡輔國崇祿大夫 등 일부를 제외하고 녹과는 표기하지 않은 채 “第 科祿者”만을 기록하였다. 녹패 발급에 참여하는 관원은 吏曹와 兵曹가 각각 “判書·參判·參議·正郎·佐郎”와 “判書·參判·參議·參知·正郎·佐郎”으로 달랐는데 이는 관제상 이조와 병조에 소속된 관원의 수가 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假郎聽이 참여하여 着押하는 경우도 있었다. 녹패에 踏印되는 印章은 조선 초기 “宣賜之印”이었으나, 1432년(世宗 14) 전교 이후 “頒賜之印”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이조와 병조로 녹패 발급 업무가 分掌된 이후에는 각각 “吏曹之印”과 “兵曹之印”·“兵曹堂上之印”이 답인되었다. 吏曹에서 “吏曹堂上之印”을 답인한 경우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병조에서 “兵曹堂上之印”을 사용한 까닭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外面 表記는 당상관 이상 녹패의 경우 녹패의 배면에 표기되고, 당하관 이하의 녹패의 경우는 반록 첨지에 표기되었다. 이는 녹패를 접은 상태에서도 녹패의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여, 반록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면 표기 방식은 “某官某職·姓名·今某年祿牌者”로 “今某年祿牌者” 부분은 여섯 자 또는 여덟 자인데, 석 자나 넉 자씩 두 줄로 기록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녹패를 바탕으로 녹패 크기를 검토해 본 결과 종친의 제외하고 관직의 정3품 당상관과 당하관을 기준으로 크기를 달리하여 발급되었다. 정1품에서 정3품 당상관까지는 세로×가로의 평균 길이가 112.4×79.2cm이며, 정3품 당하관에서 종9품까지는 45.5×14.4cm이다. 당상관과 당하관 녹패의 세로×가로의 길이 차이는 50cm 이상으로 당상관의 녹패는 당하관의 녹패보다 세로와 가로 길이가 모두 길다. 그런데 1883년(高宗 20) 李最應은 종친 당하관으로 크기가 큰 녹패를 발급받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종친 당하관은 이최응 녹패가 유일하므로 앞으로의 조사·연구를 통해 종친 당하관의 녹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3품 당하관 이하에 한하여 1772년 元重會의 녹패를 시작으로 목판식의 녹패가 등장한다. 이조와 병조는 인쇄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조 발급 녹패에서 木版에 새기는 부분은 “吏曹奉教賜·年第科祿者·年號年月日·判書·參判·參議·正郎·佐郎”이며, 병조는 “兵曹奉教賜·年號年月日·判書·參判·參議·參知·正郎·佐郎”이다. 이조는 병조와 비교하면 “某年第科祿者” 부분을 더 새기며, 병조는 “參知” 부분을 더 새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由無와 越無 부분은 먹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해유를 관장하는 호조에서 도장을 이용하여 찍은 것으로 보인다. 당하관 이하 녹패에서만 유독 인쇄 형식이 등장한 것은 당상관 녹패에 비해 크기가 작아 板에 새기기 용이한 까닭으로 추정하였다.

IV장 반록 첩지와 녹봉제의 실태에서는 반록 첩지의 양식에 대해 살펴본 후, 첩지 기록을 통해 녹봉제의 운용 실태에 대해 검토하였다. 정3품 당상관과 당하관을 기준으로 녹패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반록 첩지 또한 녹패와 동일한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당상관의 반록 첩지 규격은 약 22.0×10.0cm이며 주로 발급 순서대로 겹쳐서 녹패에 첨부하였고, 간혹 나열하는 방식으로 첨부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1889년(高宗 26) 洪秉均 녹패에는 19세기 중반부터 당하관 녹패에서 나타나는 頒賜印으로 반록 기록을 답인한 것이 보인다. 이 시기 이후부터 모든 당상관 녹패에 반사인이 답인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당하관의 반록 첩지는 조선 전기에는 녹패보다 컸으나, 18세기 후반에는 녹패보다 크기가 작은 것이 발견된다. 그리고 목판식 녹패가 등장하면서 더 이상 반록 첩지는 발급되지 않았다. 반록 행정에는 監察과 광흥창 관원이 참여하였고, 이들의 着名, 着押과 감찰의 인장인 “分臺之印”이 답인되었는데 당상관 반록 첩지는 1794년(正祖 18) 이후, 당하관 반록 첩지는 1778년(正祖 2) 이후로 감찰이 반록 행정에서 빠지게 되면서 “廣興倉印”이 답인되었다. 반록 첩지 양식은 당상관과 당하관이 각각 “某年某月某日. 正(從)某品, 某月祿, 米幾石幾斗, 太幾石幾斗”와 “某年某月某日, (某月祿) 米幾石幾斗, 太幾石幾斗”인데, 당상관의 반록 첩지 기재 사항이 당하관 반록 첩지보다 구체적이다. 당하관의 반록 기록은 목판식 녹패가 등장하면서 수기와 반사인을 통해 “某月下(某下)”·“某月祿下”·“某年某月”·“某年某月 石斗太(石斗)”의 방식으로 간소화되었다. 처음에는 간소화된 수기로 작성되다가 頒賜印으로 찍어내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는데, 반사인은 현재까지 조사된 녹패 가운데 1851년(哲宗 2) 黃璿 녹패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 1888년(高宗 25)부터는 반록 품목 항목이 반사인에 추가되었고, 수량 또한 頒賜

數量印을 이용하여 답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반록 첨지 기록을 통한 녹봉제의 운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녹봉제는 크게 六朔頒祿制(조선 개국 이후)와 四孟朔頒祿制(1439년 이후), 그리고 月俸制(1701년 이후)가 있다. 육삭반록제의 실체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1407년(태종 7)에 品階에 따른 녹과가 정해졌고, 1439년(世宗 21) 처음으로 사맹삭반록제가 실시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잇따른 흉년으로 인하여 임시로 반록 행정을 중지하고 월봉제를 시행한 결과, 1701년(肅宗 27)에 처음으로 월봉제가 규정되었다. 녹봉을 지급하는 기준은 조선 초기 육삭반록제가 시행되던 시기에는 품계를 기준으로 녹과가 정해졌고, 사맹삭반록제가 시행되던 1467년(世祖 13) 鄭軾 녹패부터는 관직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을 확인하였다.

육삭반록제 시행 시기에는 녹패에 반록액을 기록하여 반록 첨지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녹봉제의 운용 실태를 상고할 수 없다. 사맹삭반록제가 시행된 초기에는 신지제의 반록 첨지 기록을 통해 반록 행정이 제대로 준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1604년(宣祖 34) 이언영의 반록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四孟朔 마다 제한된 품목을 일정하게 지급하였다. 재정의 곤란으로 인해 1647년(仁祖 25) 녹과를 개정하였으나 녹과에 준하는 녹봉을 반록하지 못하였고, 다시 1470년(孝宗 11)에 다시 녹과를 개정하기에 이른다. 당시 녹봉제는 사맹삭반록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15건의 반록 첨지 가운데 단 3건만이 사맹삭에 반록하였다. 이 가운데에도 2건은 1679년(肅宗 5)에 발급된 것으로 사맹삭반록제는 명맥만을 유지한 것을 알 수 있다.

1701년(肅宗 25) 개정된 녹과는 녹봉의 매월 지급을 명시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월봉제가 시행된 해라고 할 수 있다. 1701년 이해조는 개정된 녹과에 따른 녹봉을 수령하였으나 1703년(肅宗 29)부터는 다시 지급액이 줄어들었다. 그 결과 1721년(景宗 元年) 녹과가 개정되었고, 이는 『續大典』에 실렸으며 갑오개혁 이전까지 준행되었다. 반록 첨지 기록과 황윤석의 『頤齋亂藁』를 검토한 결과 『續大典』 녹과가 1838년까지 준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1890년 전후로 전하는 반사수량인이 담긴 녹패를 통해 반록 실태를 검토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 반록액은 『續大典』 녹과에 미치지 못 할뿐만 아니라 녹과에 관계없이 반록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1838년(憲宗 4) 이후 녹봉제의 운용에 문란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녹패의 제도와 양식, 반록 첨지와 반사인을 통해 녹봉제의 운용 실태

태를 파악하였다. 그렇지만 급록소지를 발급하게 된 원인과 당상관과 당하관의 녹패 크기가 차이 나는 원인에 대한 규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조선 시대 녹패를 통시적으로 다루었지만 조선 초기 녹패는 전하는 수가 적으며, 반록 첨지의 경우 그보다 훨씬 적다. 특히 19세기 후반의 당상관 녹패는 현전하는 반록 첨지가 없고, 당하관의 경우에도 반록인의 반록 기록을 관독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실제 반록 수량과 반록 행정의 준행 여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녹패의 제도와 크기, 그리고 녹봉제의 운용 실태에 관하여 본 연구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녹봉제와 녹패 연구자들의 비평과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여 백

참고 문헌

1. 1차 자료

(1) 年代記類·法典類

『高麗史』, 『典律通補』, 『六典條例』, 『續大典』, 『大典通編』, 『增補文獻備考』, 『度支志』, 『經國大典註解』, 『印信謄錄』

(2) 文集類·日記類

『頤齋亂藁』, 『順菴集』

(3) 古文書類

『古文書集成』3 -해남윤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古文書集成』4 -파평윤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古文書集成』8 -광주안씨·경주김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古文書集成』9 -창원황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古文書集成』15 -하회 풍산류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古文書集成』33 -영해 재령이씨편(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古文書集成』36 -용인 해주오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古文書集成』50 -경주 이조 경주최씨·용산서원편(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古文書集成』55 -제천 한수 연안이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古文書集成』61 -예산 한국 한산이씨 수당고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古文書集成』67 -나주 회진 나주임씨 창계후손가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古文書集成』71 -이천 풍천임씨·양주 광주정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古文書集成』72 -남원·구례 삭녕최씨편(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古文書集成』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古文書集成』78 -거창 은진임씨·거창신씨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古文書集成』79 -인동 인동장씨 여헌종택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古文書集成』82 -영해 무안박씨(Ⅰ): 무의공종택-,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古文書集成』83 -회덕 은진송씨 동춘당후손가편(Ⅰ)-,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古文書集成』85 -대진 안동권씨 유희당종택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古文書集成』86 -서산 대교 경주김씨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古文書集成』88 -상주 진주정씨 우복종택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古文書集成』89 -아산 선교 장홍임씨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古文書集成』92 -칠곡 석전 광주이씨편(Ⅰ)-,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古文書集成』93 -성주 벽진이씨 완석정 종택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國立中央博物館 所藏)朝鮮時代 古文書』, 국립중앙박물관, 1997.
 『大邱月村丹陽禹氏文書』, 韓國古文書學會, 1994.
 『雪村家蒐集古文書集』, 國民大學校博物館, 2000.
 『昌原黃氏 古文書』, 국립민속박물관, 1998.
 『왕의 뜻을 전하다』,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
 『韓國古文書精選』 1·2,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4) 웹사이트

- 경기도박물관 (www.musenet.or.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index.jsp>)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main/main.jsp>)
 육군박물관 (museum.kma.ac.kr)
 조선왕조실록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h>)
 충현박물관 (<http://www.chunghyeon.org/?c=user>)
 한국고문서자료관 (<http://www.kostma.net/>)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http://www.ugyo.net/>)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http://yoksa.aks.ac.kr/main.jsp>)
 호남기록문화시스템 (<http://honam.chonbuk.ac.kr/index.jsp>)

(5) 사전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주)두산동아, 1999.
 (주)두산동아 사서편집국, 『(전면개정판)백년옥편』, (주)두산동아, 2008.

2. 연구 논저 및 논문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六堂 崔南善 全集』3, 현암사, 1974.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의 관인』, 국립고궁박물관, 2009.
 심영환 외 2, 『변화와 정착 여말선초의 조사문서』, 민속원, 2011.
 _____, 『고려시대 증서문하 교첩』, 소와당, 2010.

- 이정수, 『조선의 화폐와 화폐량』,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
-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3.
- 최승희, 『(개정증보판)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11.
- 최정환, 『고려·조선시대 녹봉제 연구』, 경북대학교출판부, 1991.
-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2, 역사비평사, 2000.
- 김혁, 「朝鮮時代 祿牌 研究」, 『고문서연구』20, 2002.
- _____, 「重紀」, 『고문서연구』19, 2001.
- 김한아름, 「朝鮮後期 尺文 研究 : 京司 發給 尺文의 板式과 行移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현영, 「고문서 용어풀이 : 『本』字攷」, 『古文書研究』24, 2004.
- 노인환, 「조선시대 諭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박성호, 「여말선초 녹패의 제도와 양식」, 『고문서연구』43, 2013.
- 송철호, 「조선시대 帖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신유아, 「조선전기 녹봉의 반급과 관료가계」, 『역사교육』114, 2010.
- _____, 「朝鮮前期 遞兒職의 設立經緯와 構成」, 『역사교육』128, 2013.
-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古文書研究』30, 2007.
- 이재룡, 「조선전기의 녹봉제」, 『승전대학교 논문집』5, 1974.
- _____, 「朝鮮前期 遞兒職에 대한 考察」, 『歷史學報』35·36, 1967.
- 전경목, 「고문서학 연구 방법론과 활성화 방안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역할과 연계하여」, 『정신문화연구』28, 2005.
- 조지만, 「『經國大典』의 편찬과 梁誠之」, 『法史學研究』39, 2009.
- 한충희, 「朝鮮初期 官職構造研究」, 『大丘史學』75, 2004.
- 徳成外志子, 「朝鮮王朝の祿俸制と国家財政体制」, 『經濟史研究』11, 大阪經濟大学, 2008.

여 백

朝鮮時代の禄牌研究

韓国学中央研究院
韓国学大学院 古文献管理学専攻
林 榮 賢

本論文では、朝鮮時代の禄牌制度と禄牌様式、そして頒禄籤紙を通じた禄俸制の運用実態を通時的に研究した。禄牌は公文書として文武官員の禄俸受領資格を証明する。また、禄俸を受領するときに証拠文書として活用され、禄俸を受領したという禄俸受領處証である頒禄籤紙が添付された複合的な性格の文書である。今日まで禄牌研究は、禄牌様式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集中していた。しかしながら禄牌の大きさについての検討と頒禄籤紙の研究は不十分である。また禄俸制研究者は頒禄籤紙を参考せずに、文献史料だけで朝鮮時代の禄俸制を検討した結果、朝鮮時代の禄俸制の運用実態を把握するには限界を見せた。したがって、本研究では、朝鮮時代禄俸の発給対象と手順の解明と共に頒禄手順を調べた。そして禄牌様式の検討と時代や役所にしたがって禄科表記・発給官員・印章・外面表記を調べた。あわせて、禄牌が大きさを異にする基準について究明した。最後に、正3品堂上官以上の正3品堂下官以下に分けて頒禄籤紙の大きさと作成方法を確認した後、頒禄籤紙の記録と禄俸制の禄科を比較・検討した。

朝鮮時代の禄牌制度は高麗時代の制度を受け継いだ。禄牌発給先は、禄官に任命された役人に限定される。発給役所は、三司→司評府→吏曹と変更しており、1466年(世祖12年)に王の伝教があつて以来、吏曹と兵曹が文官と武官の禄牌発給をそれぞれ担当した。頒禄手順は、頒禄日に持参する文書の種類に従って『大典通編』施行前後に分けて考察した。禄官は『大典通編』施行前には教旨・禄牌・給禄所志を持参し、『大典通編』施行後は教旨と禄牌だけで禄俸を受領することができた。

朝鮮初期に発給された禄牌様式は、高麗時代のことを襲用した。『経国大典』で禄牌式が法制化される以前では、始面と禄科表記、印章で変化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そして『経国大典』で禄牌式が法制化された以降に発給された禄牌は、『経国大典』の禄牌式に遵守した。しかし、禄科表記・印章・発給官員・外面表記で変化があった。

官職の正3品堂上官以上と正3品堂下官以下の禄牌は大きさを変えて発給された。堂上官以上の禄牌は、縦×横の長さの平均がそれぞれ112.4×79.2cmであり、堂下官はそれぞれ45.5×14.4cmである。二種の縦×横の平均は50cm以上の差があり、朝鮮時代を通じて官職の正3品堂上官と堂下官を基準に大きさを変えて発給された。堂下官に限り、18世紀後半から木版式禄牌が発給されており、吏曹と兵曹では版に刻まれている文字が一部異なっていた。

頒禄籤紙も禄牌と同じように官職の正3品堂上官と堂下官でことなつた大きさのものが発給されていた。前期頒禄は監察と宏興倉役人が引き受けていたので、“分臺之印”が押された。しかしながら18世紀後半から監察が頒禄業務から退いたため、それ以降は“廣興倉印”が押された。堂下官禄牌が木版式に変わった後に堂下官の頒禄記録は手記で該当月だけを表記する方式に変わった。1851年(哲宗2年)に発給された黄銑の禄牌に始めて頒賜印が押された以降は、この様式が続いた。

頒禄籤紙の頒禄記録を通じて、朝鮮時代の禄俸制の運用実態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る。朝鮮時代の禄俸制は、一年に2回(1・7月)支給する六朔頒禄制、一年に四回(1・4・7・10月)支給する四孟朔頒禄制(1439)、そして毎月支給する月俸制(1701)に変化した。六朔頒禄制は考証することができないが、禄科の基準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分かる。しかし、現在まで調査された禄牌の中では1414年(太宗14年)から1463年(世祖9年)までは品階を基準に支給しており、1467年(世祖13年)からは官職を基準に支給された。四孟朔頒禄制は、1439年(世宗21年)に初めて実施された。施行初期には禄科に基づいて禄俸を支給したが、壬辰倭乱を経て、実際の禄科より少ない量を支給した。四孟朔頒禄制時期には、1647年(仁祖25年)と1670年(顯宗11年)に頒禄品目と数量を減らす方向に禄科が改正されたが、実際の頒禄量は禄科に及ばなかった。四孟朔頒禄制時期に一時的に月俸を支給したが、実質的に月俸制が施行されたのは1701年(肅宗27年)であった。四孟朔頒禄制時期より頒禄品目と数量はさらに減ったが、この時期はまた禄科に準ずる頒禄が行われなかった。そして、1721年(景宗元年)の改正で量はさらに減り、これは『続大典』に掲載された。18世紀初期まで『続大典』の禄科に基づいて頒禄が行われたが、19世紀後期の頒禄は『続大典』の禄科に従わないこと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

부록 I. 녹패 목록

연번	수취자	발급일	발급 기관	크기 (세로×가로cm)	소장처
1	都膺	1394년	삼사	45.3×31.2	논산 관동 성주도씨 어필각
2	金芸寶	1398년	삼사	.	전사본, 『頤齋亂藁』
3	柳觀	1414년	삼사	.	전사본, 『하정선생유고』
4	裴衽	1449년	吏曹	67.5×19.0	홍해배씨(소장처 미상)
5	裴衽	1452년	吏曹	71.0×17.5	홍해배씨(소장처 미상)
6	鄭軾	1463년	吏曹	83.0×70.0	성재서원(도난)
7	鄭軾	1467년	兵曹	.	나주성씨종친회 (소장처 미상)
8	金宗直	1491년	兵曹	89.0×74.0	고령 선산김씨 김종직 후손가
9	張孟羽	1508년	미상	.	장말손증손가
10	裴天錫	1545년	兵曹	.	홍해배씨(소장처 미상)
11	裴天錫	1546년	兵曹	.	홍해배씨(소장처 미상)
12	申之悌	1589년	吏曹	87.0×53.0	의성 아주신씨 오봉 종택
13	申之悌	1590년	吏曹	103.0×79.0	의성 아주신씨 오봉 종택
14	申之悌	1591년	吏曹	92.0×77.0	의성 아주신씨 오봉 종택
15	權應銖	1592년 ~1624 년	[兵曹]	.	국립진주박물관
16	李彦英	1604년	吏曹	69.5×44.9	성주 명곡 벽진이씨 완석정 종택
17	柳成龍	1605년	吏曹	92.3×65.0	풍산류씨 충효당
18	柳成龍	1606년	吏曹	90.0×71.7	풍산류씨 충효당
19	미상	1607년	미상	97.0×66.0	영해 인량 재령이씨 충효당
20	黃愼	1611년	吏曹	99.0×69.0	부여·강화·영주 창원황씨

연번	수취자	발급일	발급 기관	크기 (세로×가로cm)	소장처
21	黃愼	1612년	吏曹	99.0×73.0	부여·강화·영주 창원황씨
22	黃愼	1613년	吏曹	102.0×71.0	부여·강화·영주 창원황씨
23	朴毅長	1615년	兵曹	88.0×71.7	영해 도곡 무안박씨
24	崔苻	1625년	吏曹	91.0×16.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5	吳允謙	1625년	吏曹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6	孫克會	1626년	兵曹	54.0×33.0	민속박물관
27	張顯光	1626년	吏曹	66.5×81.0	구미 옥산 인동장씨 여헌 종택
28	尹善道	1628년	兵曹	79.0×53.0	해남 연동 해남윤씨 녹우당
29	吳允謙	1629년	吏曹	79.0×53.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30	吳允謙	1630년	吏曹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31	鄭經世	1630년	吏曹	104.5×76.0	상주 우산 진주정씨 산수헌
32	李聖基	1630년	兵曹	69.0×38.0	고려대학교 박물관
33	吳允謙	1631년	吏曹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34	吳允謙	1632년	吏曹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35	吳允謙	1633년	吏曹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36	吳允謙	1634년	吏曹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37	崔震立	1634년	兵曹	79.0×51.0	경주 이조 경주최씨
38	吳允謙	1635년	吏曹	107.4×77.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39	吳允謙	1636년	吏曹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번	수취자	발급일	발급 기관	크기 (세로×가로cm)	소장처
					장서각
40	李景奭	1647년	兵曹	105.0×81.0	경기도박물관
41	鄭道應	1649년	兵曹	33.0×13.5	상주 우산 진주정씨 산수헌
42	宋浚吉	1649년	吏曹	95.0×47.0	한남대 중앙박물관
43	宋浚吉	1650년	吏曹	76.0×50.0	한남대 중앙박물관
44	李敬輿	1651년	兵曹	110.0×72.0	국립중앙도서관
45	尹善道	1652년	吏曹	99.0×64.0	해남 연동 해남윤씨 녹우당
46	張應一	1653년	兵曹	81.0×37.6	구미 옥산 인동장씨 여헌 종택
47	張應一	1657년	吏曹	91.9×70.0	구미 옥산 인동장씨 여헌 종택
48	宋浚吉	1657년	吏曹	99.0×68.0	한남대 중앙박물관
49	淑敬公主	1658년	吏曹	120.0×86.5	국사편찬위원회 사진유리필름
50	宋浚吉	1658년	吏曹	115.0×78.0	한남대 중앙박물관
51	宋浚吉	1658년	吏曹	110.0×76.0	한남대 중앙박물관
52	宋浚吉	1659년	吏曹	98.0×74.0	한남대 중앙박물관
53	朴長遠	1659년	吏曹	99.0×70.0	국립중앙도서관
54	宋浚吉	1659년	兵曹	112.0×75.0	한남대 중앙박물관
55	朴長遠	1660년	吏曹	100.0×65.0	국립중앙도서관
56	宋浚吉	1660년	吏曹	105.0×74.0	한남대 중앙박물관
57	朴長遠	1664년	吏曹	101.0×71.0	국립중앙도서관
58	朴長遠	1665년	吏曹	110.0×75.0	국립중앙도서관
59	朴長遠	1667년	吏曹	115.0×67.0	국립중앙도서관
60	朴長遠	1668년	吏曹	99.0×66.0	국립중앙도서관
61	朴鑓	1668년	吏曹	114.0×54.5	국립중앙박물관
62	朴長遠	1668년	吏曹	100.0×70.0	국립중앙도서관
63	朴長遠	1671년	吏曹	.	국립중앙도서관
64	李聘命	1673년	吏曹	.	칠곡 석전 광주이씨
65	元相	1673년	兵曹	85.0×58.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66	宋時烈	1674년	兵曹	119.0×91.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67	李浣	1674년	吏曹	117.0×87.6	경기도박물관

연번	수취자	발급일	발급 기관	크기 (세로×가로cm)	소장처
68	元相	1674년	兵曹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69	李袤	1675년	兵曹	43.0×13.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70	李聘命	1679년	兵曹	.	칠곡 석전 광주이씨
71	元相	1679년	兵曹	110.0×74.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72	元德徽	1679년	兵曹	82.0×46.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73	宋炳夏	1682년	兵曹	112.7×80.5	대전 선사박물관
74	黃琬	1682년	吏曹	68.0×56.0	부여·강화·영주 창원황씨
75	元相	1683년	兵曹	107.0×73.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76	黃琬	1683년	兵曹	74.0×43.0	부여·강화·영주 창원황씨
77	元相	1684년	兵曹	110.0×74.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78	禹錫圭	1687년	吏曹	.	대구 단양 우씨
79	林泳	1688년	吏曹	93.0×66.5	나주 회진 나주임씨 창계 후손가
80	張萬紀	1689년	吏曹	97.0×49.3	구미 옥산 인동장씨 여헌 종택
81	元相	1689년	兵曹	109.0×74.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82	李耆徵	1689년	兵曹	.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83	張萬紀	1689년	吏曹	84.8×41.7	구미 옥산 인동장씨 여헌 종택
84	張萬紀	1691년	吏曹	100.6×75.0	구미 옥산 인동장씨 여헌 종택
85	黃夏英	1696년	兵曹	81.0×43.0	부여·강화·영주 창원황씨
86	元德徽	1696년	兵曹	110.0×73.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87	李吟	1700년	吏曹	137.0×95.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88	李海朝	1701년	吏曹	73.0×54.0	제천 한수 연안이씨
89	李吟	1701년	吏曹	130.0×90.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90	元德徽	1701년	兵曹	112.0×76.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91	李吟	1702년	吏曹	132.0×95.0	한국학중앙연구원

연번	수취자	발급일	발급 기관	크기 (세로×가로cm)	소장처
					장서각
92	李海朝	1703년	吏曹	93.0×47.0	제천 한수 연안이씨
93	李吟	1703년	吏曹	138.0×97.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94	李海朝	1703년	吏曹	95.0×48.0	제천 한수 연안이씨
95	李田	1703년	吏曹	121.0×97.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96	洪疇	1703년	兵曹	41.8×13.0	남양홍씨가
97	洪疇	1703년	吏曹	109.0×74.5	남양홍씨가
98	李吟	1704년	吏曹	132.0×94.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99	李田	1704년	吏曹	138.0×94.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00	尹行教	1705년	兵曹	.	논산 노성 과평윤씨 명재 종가
101	李吟	1705년	吏曹	129.0×91.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02	李田	1705년	吏曹	128.0×91.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03	李吟	1706년	吏曹	130.0×98.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04	李田	1706년	吏曹	140.0×98.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05	李海朝	1706년	吏曹	45.0×11.0	제천 한수 연안이씨
106	李海朝	1706년	兵曹	45.0×12.0	제천 한수 연안이씨
107	洪疇	1706년	吏曹	106.1×77.0	남양홍씨가
108	李海朝	1706년	吏曹	98.0×52.0	제천 한수 연안이씨
109	李吟	1707년	吏曹	138.0×98.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10	李田	1707년	吏曹	138.0×98.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11	李海朝	1707년	吏曹	75.0×45.0	제천 한수 연안이씨
112	李海朝	1707년	吏曹	79.0×56.0	제천 한수 연안이씨
113	李吟	1708년	吏曹	136.0×95.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14	李海朝	1707년	吏曹	83.0×47.0	제천 한수 연안이씨
115	李吟	1709년	吏曹	145.0×98.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16	李田	1709년	吏曹	98.0×83.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번	수취자	발급일	발급 기관	크기 (세로×가로cm)	소장처
117	高斗煌	1709년	吏曹	110.6×76.0	국사편찬위원회 사진유리필름
118	李吟	1710년	吏曹	131.0×92.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19	李田	1710년	吏曹	131.0×93.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20	尹拯	1710년	兵曹	131.3×84.5	충남역사박물관
121	金是洛	1710년	[吏曹]	74.0×45.0	국사편찬위원회 사진유리필름
122	李吟	1711년	吏曹	144.0×97.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23	李田	1711년	吏曹	146.0×97.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24	李吟	1712년	吏曹	132.0×92.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25	李田	1712년	吏曹	132.0×95.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26	李吟	1712년	吏曹	147.0×96.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27	李吟	1713년	吏曹	131.0×90.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28	李田	1713년	吏曹	129.0×91.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29	金柱臣	1713년	吏曹	113.0×85.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30	李吟	1714년	吏曹	131.0×92.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31	李田	1714년	吏曹	129.0×92.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32	李吟	1715년	吏曹	131.0×89.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33	李田	1715년	吏曹	129.0×92.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34	李吟	1716년	吏曹	131.0×90.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35	李田	1716년	吏曹	129.0×92.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36	李吟	1717년	吏曹	129.0×91.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37	李田	1717년	吏曹	124.0×92.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38	李吟	1718년	吏曹	126.0×84.0	한국학중앙연구원

연번	수취자	발급일	발급 기관	크기 (세로×가로cm)	소장처
					장서각
139	李田	1718년	吏曹	124.0×92.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40	趙世行	1719년	兵曹	.	전북대학교박물관
141	李吟	1719년	吏曹	141.0×93.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42	李田	1719년	吏曹	141.0×92.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43	趙榮福	1719년	兵曹	43.0×13.3	함안 조씨 참판공파
144	李吟	1720년	吏曹	133.0×92.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45	黃尙鼎	1720년	吏曹	43.0×15.0	부여·강화·영주 창원황씨
146	趙榮福	1720년	兵曹	44.2×13.8	함안 조씨 참판공파
147	閔應洙	1721년	吏曹	53.0×18.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48	閔應洙	1721년	吏曹	53.0×19.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49	權以鎭	1721년	兵曹	38.6×12.0	대전 무수동 안동권씨 유희당 종택
150	李望	1721년	兵曹	90.0×76.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51	尹行教	1722년	兵曹	.	논산 노성 파평윤씨 명재 종가
152	權以鎭	1723년	吏曹	109.0×80.0	대전 무수동 안동권씨 유희당 종택
153	李順坤	1723년	兵曹	109.0×76.5	국립중앙도서관
154	權以鎭	1724년	吏曹	109.3×78.4	대전 무수동 안동권씨 유희당 종택
155	尹東源	1724년	兵曹	.	논산 노성 파평윤씨 명재 종가
156	李緯	1724년	吏曹	137.0×92.0	고문서자료관
157	權以鎭	1724년	吏曹	.	대전 무수동 안동권씨 유희당 종택
158	李緯	1725년	吏曹	129.0×91.05	고문서자료관
159	閔應洙	1726년	吏曹	53.0×20.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60	閔應洙	1726년	吏曹	26.0×19.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61	趙榮福	1726년	兵曹	42.0×12.9	함안 조씨 참판공파
162	閔應洙	1726년	兵曹	40.0×12.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번	수취자	발급일	발급 기관	크기 (세로×가로cm)	소장처
163	閔應洙	1727년	吏曹	56.0×20.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64	閔應洙	1727년	吏曹	43.0×15.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65	閔應洙	1727년	兵曹	46.0×15.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66	閔應洙	1727년	兵曹	44.0×14.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67	閔應洙	1727년	兵曹	47.0×14.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68	任昺	1729년	兵曹	45.0×13.0	아산 선교 장흥임씨
169	任昺	1729년	兵曹	79.0×45.5	아산 선교 장흥임씨
170	尹東源	1730년	兵曹	.	논산 노성 파평윤씨 명재 종가
171	閔應洙	1733년	兵曹	44.0×13.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72	尹東源	1734년	兵曹	.	논산 노성 파평윤씨 명재 종가
173	尹東源	1734년	兵曹	.	논산 노성 파평윤씨 명재 종가
174	[金興慶]	1735년	吏曹	122.3×87.0	서산 대교 경주김씨
175	任昺	1735년	兵曹	78.0×48.0	아산 선교 장흥임씨
176	閔應洙	1737년	兵曹	47.0×15.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77	李存道	1739년	미상	54.0×36.0	충현박물관
178	李存道	1741년	吏曹	50.0×39.0	충현박물관
179	閔應洙	1741년	兵曹	48.0×15.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80	[金興慶]	1741년	兵曹	122.0×84.0	서산 대교 경주김씨
181	閔應洙	1741년	吏曹	116.0×57.5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82	尹光莘	1742년	兵曹	112.0×79.0	한남대 중앙박물관
183	閔應洙	1743년	兵曹	48.0×13.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84	閔應洙	1746년	兵曹	47.0×15.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85	元景夏	1746년	吏曹	11.0×80.0	원주원씨 시중공계
186	尹德熙	1748년	吏曹	82.0×47.0	해남 연동 해남윤씨 녹우당
187	尹德熙	1748년	吏曹	43.0×15.7	해남 연동 해남윤씨 녹우당
188	牟景觀	1754년	吏曹	113.6×57.4	함평 함평모씨
189	宋○○	1754년	미상	113.6×57.4	대전 선사박물관
190	宋○○	1756년	미상	116.3×54.0	대전 선사박물관
191	宋○○	1757년	미상	114.0×53.0	대전 선사박물관

연번	수취자	발급일	발급 기관	크기 (세로×가로cm)	소장처
192	洪栲	1759년	兵曹	107.5×74.0	남양홍씨가
193	柳滂	1764년	吏曹	80.0×55.0	고문서자료관
194	李禎	1765년	吏曹	116.0×86.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5	柳光翼	1765년	兵曹	47.0×14.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6	柳光翼	1765년	兵曹	47.0×14.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7	李禎	1766년	吏曹	122.0×87.0	풍산류씨 충효당
198	元重會	1767년	兵曹	109.0×74.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	李禎	1768년	吏曹	116.0×87.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	李禎	1769년	吏曹	121.0×66.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	柳光翼	1765년	兵曹	47.0×14.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2	柳光翼	1765년	兵曹	47.0×14.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3	柳光翼	1769년	兵曹	55.0×38.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4	金斗性	1770년	吏曹	107.0×77.0	국립중앙도서관
205	李禎	1770년	吏曹	126.0×96.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6	李禎	1770년	吏曹	117.0×85.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7	金斗性	1771년	吏曹	107.0×80.0	국립중앙도서관
208	元重會	1772년	兵曹	78.0×44.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9	金斗性	1772년	吏曹	118.0×85.5	국립중앙도서관
210	盧允中	1772년	吏曹	54.0×52.0	실촌가
211	姜侔	1772년	吏曹	65.0×40.0	고려대학교 박물관
212	李秀逸	1773년	吏曹	41.0×18.5	예산 한국 한산이씨 수당 고택
213	李秀逸	1773년	吏曹	115.0×80.0	예산 한국 한산이씨 수당 고택
214	金斗性	1774년	吏曹	135.0×86.5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15	白師殷	1775년	吏曹	56.0×20.0	국립중앙도서관
216	尹孝寬	1777년	吏曹	.	목포대학교 박물관
217	尹孝寬	1779년	吏曹	.	목포대학교 박물관
218	柳滂	1780년	吏曹	100.0×75.0	풍산류씨 충효당
219	趙鎭衡	1780년	[兵曹]	47.5×15.0	국사편찬위원회 사진유리필름
220	朴料峽	1782년	兵曹	95.0×61.0	전쟁기념관
221	尹孝寬	1782년	吏曹	.	목포대학교 박물관
222	李弘源	1783년	兵曹	69.0×42.0	제천 한수 연안이씨

연번	수취자	발급일	발급 기관	크기 (세로×가로cm)	소장처
223	柳澐	1783년	吏曹	114.0×79.0	풍산류씨 충효당
224	趙弘鎭	1783년	吏曹	59.0×44.0	국립중앙도서관
225	尹孝寬	1783년	吏曹	.	목포대학교 박물관
226	趙弘鎭	1783년	兵曹	48.0×35.0	국립중앙도서관
227	李弘源	1785년	미상	64.0×44.0	제천 한수 연안이씨
228	宋啓來	1785년	吏曹	59.2×23.3	대전 선사박물관
229	李弘源	1785년	吏曹	63.0×42.0	제천 한수 연안이씨
230	李弘源	1785년	吏曹	.	제천 한수 연안이씨
231	趙弘鎭	1785년	兵曹	49.0×27.5	국립중앙도서관
232	趙弘鎭	1786년	兵曹	50.0×27.5	국립중앙도서관
233	宋啓來	1786년	吏曹	61.4×39.6	대전 선사박물관
234	宋啓來	1786년	吏曹	75.0×43.3	대전 선사박물관
235	趙弘鎭	1786년	吏曹	51.0×18.5	국립중앙도서관
236	趙弘鎭	1786년	吏曹	50.0×27.0	국립중앙도서관
237	趙弘鎭	1786년	吏曹	51.0×19.0	국립중앙도서관
238	趙弘鎭	1786년	吏曹	57.0×20.0	국립중앙도서관
239	宋翼孝	1786년	吏曹	62.0×50.0	설촌가
240	姜命達	1788년	兵曹	82.0×50.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41	金箕性	1790년	吏曹	117.0×87.0	국립중앙도서관
242	安鼎福	1790년	吏曹	100.0×75.0	광주 기곡 광주안씨 순암 종가
243	宋啓來	1791년	吏曹	73.4×41.0	대전 선사박물관
244	安鼎福	1791년	吏曹	112.0×[67.0]	광주 기곡 광주안씨 순암 종가
245	宋啓來	1791년	吏曹	56.9×36.7	대전 선사박물관
246	安鼎福	1791년	吏曹	[65.0]×72.0	광주 기곡 광주안씨 순암 종가
247	宋啓來	1792년	吏曹	64.8×40.0	대전 선사박물관
248	沈能迪	1792년	兵曹	49.0×14.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49	李敬一	1794년	吏曹	.	영남대학교
250	李禹鉉	1794년	兵曹	102.0×57.0	육군박물관
251	金箕性	1794년	吏曹	106.0×84.0	국립중앙도서관
252	洪樂恒	1794년	吏曹	107.0×79.0	국립중앙도서관
253	金箕性	1800년	吏曹	.	국립중앙도서관

연번	수취자	발급일	발급 기관	크기 (세로×가로cm)	소장처
254	金箕性	1801년	吏曹	114.0×81.0	국립중앙도서관
255	金箕性	1802년	吏曹	116.0×85.0	국립중앙도서관
256	尹孝寬	1803년	吏曹	53.2×25.0	목포대학교 박물관
257	尹孝寬	1804년	吏曹	56.5×24.4	목포대학교 박물관
258	趙弘鎭	1806년	兵曹	48.0×13.5	국립중앙도서관
259	尹孝寬	1806년	吏曹	107.0×74.0	목포대학교 박물관
260	尹孝寬	1806년	兵曹	103.0×60.0	목포대학교 박물관
261	金箕性	1807년	吏曹	116.0×87.0	국립중앙도서관
262	趙弘鎭	1807년	兵曹	48.0×13.5	국립중앙도서관
263	尹孝寬	1807년	吏曹	108.0×76.0	목포대학교 박물관
264	趙弘鎭	1808년	兵曹	47.0×12.5	국립중앙도서관
265	李玄燁	1809년	兵曹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66	趙弘鎭	1812년	兵曹	50.0×12.0	국립중앙도서관
267	趙經鎭	1815년	兵曹	51.0×12.0	고려대학교 박물관
268	鄭晚錫	1815년	吏曹	63.0×57.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69	趙弘鎭	1815년	吏曹	98.0×59.0	국립중앙도서관
270	趙弘鎭	1816년	兵曹	50.0×12.5	국립중앙도서관
271	鄭晚錫	1816년	吏曹	113.0×84.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72	李球	1816년	吏曹	115.0×85.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73	李明湜	1816년	兵曹	49.0×14.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74	李球	1817년	吏曹	113.0×84.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75	趙弘鎭	1818년	兵曹	94.0×56.0	국립중앙도서관
276	李球	1818년	吏曹	116.0×85.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77	趙弘鎭	1818년	兵曹	50.0×13.0	국립중앙도서관
278	李球	1820년	吏曹	115.0×83.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79	李球	1820년	吏曹	110.0×84.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80	李球	1821년	吏曹	112.0×85.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81	李球	1821년	吏曹	110.0×86.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82	鄭晚錫	1821년	吏曹	102.0×73.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83	李球	1822년	吏曹	114.0×83.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84	李昌應	1823년	吏曹	118.0×85.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85	李昌應	1824년	吏曹	117.0×83.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86	李昌應	1825년	吏曹	116.0×90.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번	수취자	발급일	발급 기관	크기 (세로×가로cm)	소장처
287	李球	1825년	吏曹	114.0×85.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88	李球	1826년	吏曹	117.0×85.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89	李昌應	1826년	吏曹	113.0×83.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90	李球	1826년	吏曹	115.0×84.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91	李球	1827년	吏曹	115.0×85.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92	李球	1828년	吏曹	115.0×85.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93	李昌應	1828년	吏曹	113.0×83.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94	李球	1829년	吏曹	115.0×85.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95	李最應	1829년	吏曹	114.0×84.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96	柳相祚	1830년	吏曹	100.0×73.0	풍산류씨 충효당
297	柳相祚	1831년	吏曹	106.0×77.0	풍산류씨 충효당
298	柳相祚	1832년	吏曹	103.7×65.5	풍산류씨 충효당
299	李俊秀	1832년	兵曹	50.0×13.0	제천 한수 연안이씨
300	李球	1833년	吏曹	117.0×73.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01	柳相祚	1834년	吏曹	105.0×76.0	풍산류씨 충효당
302	李球	1834년	吏曹	112.0×81.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03	李最應	1834년	吏曹	110.0×83.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04	柳相祚	1835년	吏曹	106.0×77.0	풍산류씨 충효당
305	李球	1835년	吏曹	116.0×83.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06	李球	1835년	吏曹	117.0×83.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07	李最應	1835년	吏曹	120.0×84.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08	李最應	1835년	吏曹	138.0×83.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09	柳相祚	1836년	吏曹	104.0×72.0	풍산류씨 충효당
310	柳相祚	1837년	吏曹	106.0×76.0	풍산류씨 충효당
311	李在直	1837년	吏曹	52.0×18.5	국립중앙도서관
312	李最應	1838년	吏曹	115.0×80.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13	李宗秉	1848년	吏曹	106.0×72.5	예산 한국 한산이씨 수당 고택
314	徐玠輔	1851년	兵曹	.	고궁박물관
315	黃銑	1851년	吏曹	38.0×15.0	부여·강화·영주 창원황씨
316	李僖	1856년	吏曹	.	서울역사박물관
317	任百能	1857년	吏曹	109.0×74.0	이천 고백리 풍천임씨
318	鄭允愚	1857년	兵曹	50.0×12.0	상주 우산 진주정씨

연번	수취자	발급일	발급 기관	크기 (세로×가로cm)	소장처
					산수헌
319	李彙濬	1861년	吏曹	48.0×15.5	국학진흥원
320	李彙濬	1862년	吏曹	52.0×14.0	국학진흥원
321	宋泰熙	1864년	吏曹	104.7×72.9	대전향토박물관
322	奇陽衍	1867년	吏曹	35.3×11.2	장성 행주기씨 금강종가
323	洪秉均	1868년	吏曹	36.0×11.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24	奇陽衍	1868년	兵曹	50.3×12.6	장성 행주기씨 금강종가
325	奇陽衍	1868년	兵曹	52.1×12.1	장성 행주기씨 금강종가
326	奇陽衍	1869년	吏曹	50.3×12.1	장성 행주기씨 금강종가
327	洪秉均	1870년	吏曹	36.0×11.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28	奇陽衍	1871년	兵曹	47.6×11.3	장성 행주기씨 금강종가
329	愼炳一	1875년	兵曹	49.0×12.0	거창 장기 거창신씨
330	愼炳一	1876년	兵曹	49.0×12.0	거창 장기 거창신씨
331	李仁宇	1877년	吏曹	35.5×11.0	경기도박물관
332	李仁宇	1879년	吏曹	34.5×10.0	경기도박물관
333	宋道淳	1879년	吏曹	15.0×5.0	한남대 중앙박물관
334	李仁宇	1880년	吏曹	31.0×13.5	경기도박물관
335	李仁宇	1881년	吏曹	32.4×13.2	경기도박물관
336	李仁宇	1882년	吏曹	27.5×11.5	경기도박물관
337	朴弘壽	1883년	兵曹	50.0×10.0	고려대학교 박물관
338	愼炳佑	1884년	兵曹	48.0×11.0	거창 장기 거창신씨
339	朴秀麟	1885년	兵曹	62.0×42.0	육군박물관
340	朴弘壽	1886년	兵曹	·	고려대학교 박물관
341	柳芝榮	1886년	吏曹	89.0×56.3	풍산류씨 지산고택
342	朴弘壽	1887년	兵曹	·	고려대학교 박물관
343	李能九	1887년	吏曹	·	고려대학교 박물관
344	洪秉均	1887년	吏曹	70.0×53.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45	李能九	1887년	吏曹	·	고려대학교 박물관
346	李能九	1887년	吏曹	·	고려대학교 박물관

연번	수취자	발급일	발급 기관	크기 (세로×가로cm)	소장처
347	李能九	1887년	吏曹	·	고려대학교 박물관
348	李能九	1888년	吏曹	·	고려대학교 박물관
349	趙用夏	1888년	兵曹	48.0×12.0	국립중앙도서관
350	李能九	1888년	吏曹	·	고려대학교 박물관
351	朴弘壽	1889년	兵曹	·	고려대학교 박물관
352	李能九	1889년	吏曹	29.0×14.5	고려대학교 박물관
353	趙用夏	1889년	兵曹	43.0×10.0	국립중앙도서관
354	洪秉均	1889년	吏曹	93.0×52.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55	李能九	1890년	吏曹	·	고려대학교 박물관
356	趙用夏	1890년	兵曹	43.0×10.0	국립중앙도서관
357	洪秉均	1890년	吏曹	77.0×49.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58	李能九	1890년	吏曹	30.0×14.0	고려대학교 박물관
359	趙用夏	1891년	兵曹	40.0×10.0	국립중앙도서관
360	趙用夏	1893년	兵曹	46.0×10.0	국립중앙도서관

※ []는 추정

부록 II. 녹봉제에 따른 녹과(221)

1. 六朔頒祿制

① 1407년 개정 녹과

※ 全石=20斗. () 안의 품계는 관직에 따라 표기 한 것

녹과	관품	米 (全石)	紬布·正布 (疋)
제1과	在內大君 政丞 이상(정1품)	100	32
제2과	在內諸君 議政府贊成事 이상(중1품)	90	27
제3과	異姓諸君 開城留後 이상 (정2품)	85	26
제4과	異姓諸君 開城留後司 副留後 이상 (중2품)	80	26
제5과	正三品 成均館大司成 이상 (정3품 당상)	70	.
	判典醫監事 이상 (정3품 당하)	68	23
제6과	중3품	65	21
제7과	정4품	60	20
제8과	중4품	55	19
제9과	정5품	49	18
제10과	중5품	47	17
제11과	정6품	42	16
제12과	중6품	40	15
제13과	정7품	30	10
제14과	중7품	28	9
제15과	정8품	23	7
제16과	중8품	21	6
제17과	정9품	16	5
제18과	중9품	14	4
권무		9	3

② 1438년 조선왕조실록 기재 녹과

※ 米·麥: 1石=20斗, 豆: 1石=15斗

녹과	반록 시기	반록 품목							
		中米	造米	田米	麥	豆	紬	正布	錢
제1과 정1품	初番	6	41	1		23	6	15	900
	二番	8	7	1	10				
제2과	初番	5	37	1		21	5	15	900

221) 원문에 녹과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순차에 따라 녹과를 표기하였다.

녹과	반록 시기	반록 품목							
		中米	造米	田米	麥	豆	紬	正布	錢
중1품	二番	7	6	1	9				
제3과	初番	5	34	1		18	5	14	900
정2품	二番	7	6	1	9				
제4과	初番	5	32	1		17	5	14	900
중2품	二番	7	5	1	8				
제5과	初番	4	27	1		15	4	13	800
정3품	二番	7	5	1	7				
당상									
동5과	初番	4	26	1		15	4	13	700
정3품	二番	6	4	1	7				
당하									
제6과	初番	4	23	1		14	3	13	500
중3품	二番	6	4	1	7				
제7과	初番	4	21	1		13	2	12	700
정4품	二番	5	4	1	6				
제8과	初番	3	19	1		12	2	11	700
중4품	二番	5	4	1	6				
제9과	初番	2	17	1		11	1	11	700
정5품	二番	4	4	1	5				
제10과	初番	2	16	1		10	1	10	700
중5품	二番	4	4	1	5				
제11과	初番	2	14	1		9	1	10	500
정6품	二番	3	4	1	4				
제12과	初番	2	13	1		8	1	9	500
중6품	二番	3	4	1	4				
제13과	初番	1	11	1		5		7	250
정7품	二番	2	4	1	3				
제14과	初番	1	10	1		4		6	250
중7품	二番	2	4	1	3				
제15과	初番	1	7	1		4		4	200
정8품	二番	1	5		2				
제16과	初番	1	6	1		4		4	100
중8품	二番	1	4		2				
제17과	初番		5	1		3		3	50
정9품	二番		3		1				
제18과	初番		5	1		2		2	50

녹과	반록 시기	반록 품목							
		中米	造米	田米	麥	豆	紬	正布	錢
중9품	二番		3		1				
권무	初番		3	1		2		2	
	二番		2						

2. 四孟朔頒祿制

① 1438년 조선왕조실록 기재 녹과

※ 1石=15斗

녹과	반록 시기	반록 품목							
		中米 (石)	造米 (石)	田米 (石)	豆 (石)	麥 (石)	紬 (疋)	正布 (疋)	錢 (文)
제1과 (정1품)	春	4	10	1		12	2	4	900
	夏	3	11	1			2	4	
	秋	3	11		10		1	4	
	冬	3	11			11	1	3	
제2과 (중1품)	春	3	10	1		11	2	4	900
	夏	3	14	1			1	4	
	秋	3	10		9		1	4	
	冬	3	10			10	1	3	
제3과 (정2품)	春	3	9	1		9	2	4	900
	夏	3	13	1			1	4	
	秋	3	9		9		1	3	
	冬	3	9			9	1	3	
제4과 (중2품)	春	3	8	1		9	2	4	900
	夏	3	12	1			1	4	
	秋	3	9		8		1	3	
	冬	3	8			8	1	3	
제5과 (정3품 당상)	春	3	7	1		8	1	4	800
	夏	3	10	1			1	3	
	秋	3	7		7		1	3	
	冬	2	8			7	1	3	
동5과 (정3품)	春	3	6	1		7	1	4	700
	夏	3	9	1			1	3	

녹과	반록 시기	반록 품목							
		中米 (石)	造米 (石)	田米 (石)	豆 (石)	麥 (石)	紬 (疋)	正布 (疋)	錢 (文)
당하)	秋	2	8		7		1	3	
	冬	2	7			7	1	3	
제6과 (종3품)	春	3	6	1		7	1	4	500
	夏	3	8	1			1	3	
	秋	2	7		7		1	3	
	冬	2	6			7	1	3	
제7과 (정4품)	春	2	5	1		7	1	3	700
	夏	2	8	1				3	
	秋	2	6		6		1	3	
	冬	2	6			6		3	
제8과 (종4품)	春	2	5	1		6	1	3	700
	夏	2	8	1				3	
	秋	2	5		6		1	3	
	冬	2	5			6		2	
제9과 (정5품)	春	2	4	1		6	1	3	700
	夏	2	6	1				3	
	秋	1	6		5			3	
	冬	1	5			5		2	
제10과 (종5품)	春	2	4	1		5	1	3	700
	夏	2	6	1				3	
	秋	1	5		5			2	
	冬	1	5			5		2	
제11과 (정6품)	春	2	3	1		5	1	3	500
	夏	1	6	1				3	
	秋	1	5		4			2	
	冬	1	4			4		2	
제12과 (종6품)	春	2	3	1		4	1	3	500
	夏	1	6	1				2	
	秋	1	4		4			2	
	冬	1	4			4		2	
제13과 (정7품)	春	1	3	1		3		2	250
	夏	1	4	1				2	
	秋	1	4		3			2	

녹과	반록 시기	반록 품목							
		中米 (石)	造米 (石)	田米 (石)	豆 (石)	麥 (石)	紬 (疋)	正布 (疋)	錢 (文)
	冬		4			2		1	
제14과 (종7품)	春	1	3	1		2		2	250
	夏	1	4	1				2	
	秋	1	3		3			1	
	冬		4			2		1	
제15과 (정8품)	春	1	2	1		2		1	200
	夏	1	4					1	
	秋		3		2			1	
	冬		3			2		1	
제16과 (종8품)	春	1	2	1		2		1	100
	夏	1	3					1	
	秋		3		2			1	
	冬		2			2		1	
제17과 (정9품)	春		2	1		2		1	50
	夏		3					1	
	秋		1		1			1	
	冬		2			1			
제18과 (종9품)	春		2	1		1		1	50
	夏		3						
	秋		1		1			1	
	冬		2			1			
權務	春		1			1		1	
	夏		2						
	秋		1		1			1	
	冬		1			1			

② 『經國大典』 녹과

※ 1石=15斗

녹과	반록 시기	반록 품목							
		中米 (石)	造米 (石)	田米 (石)	豆 (石)	麥 (石)	紬 (疋)	正布 (疋)	楮貨 (丈)
제1과 (정1품)	春	4	12	1	12		2	4	10
	夏	3	12			5	1	4	
	秋	4	12	1		5	1	4	
	冬	3	12		11		2	3	
제2과 (중1품)	春	3	11	1	11		2	4	10
	夏	3	11			4	1	4	
	秋	3	10	1		5	1	4	
	冬	3	11		10		1	3	
제3과 (정2품)	春	3	10	1	9		2	4	8
	夏	3	10			4	1	3	
	秋	3	10	1		5	1	4	
	冬	3	10		9		1	3	
제4과 (중2품)	春	3	9	1	9		2	4	8
	夏	3	10			4	1	3	
	秋	3	9	1		4	1	4	
	冬	3	9		8		1	3	
제5과 (정3품 당상)	春	3	8	1	8		1	4	8
	夏	3	8			3	1	3	
	秋	3	8	1		4	1	3	
	冬	2	8		7		1	3	
동5과 (정3품 당하)	春	3	7	1	8		1	4	8
	夏	2	8			3	1	3	
	秋	3	7	1		4	1	3	
	冬	2	8		7		1	3	
제6과 (중3품)	春	3	7	1	7		1	4	6
	夏	2	7			3	1	3	
	秋	3	6	1		4	1	3	
	冬	2	7		7			3	
제7과 (정4품)	春	2	6	1	7		1	3	6
	夏	2	7			3		3	
	秋	2	6	1		3	1	3	

녹과	반록 시기	반록 품목							
		中米 (石)	造米 (石)	田米 (石)	豆 (石)	麥 (石)	紬 (疋)	正布 (疋)	楮貨 (丈)
	冬	2	6		6			3	
제8과 (종4품)	春	2	6	1	6		1	3	6
	夏	2	6			3		3	
	秋	2	5	1		3	1	3	
	冬	2	6		6			2	
제9과 (정5품)	春	2	5	1	6		1	3	4
	夏	1	6			2		3	
	秋	2	5	1		3		3	
	冬	1	5		5			2	
제10과 (종5품)	春	2	5	1	5		1	3	4
	夏	1	5			2		2	
	秋	2	5	1		3		3	
	冬	1	5		5			2	
제11과 (정6품)	春	2	4	1	5		1	3	4
	夏	1	5			2		2	
	秋	1	5	1		2		3	
	冬	1	4		4			2	
제12과 (종6품)	春	2	4	1	4		1	3	4
	夏	1	5			2		2	
	秋	1	4	1		2		2	
	冬	1	4		4			2	
제13과 (정7품)	春	1	3	1	3			2	2
	夏	1	4			1		2	
	秋	1	4	1		2		2	
	冬		4		2			1	
제14과 (종7품)	春	1	3	1	2			2	2
	夏	1	4			1		1	
	秋	1	3	1		2		2	
	冬		4		2			1	
제15과 (정8품)	春	1	3	1	2			1	2
	夏	1	3			1		1	
	秋		3			1		1	
	冬		3		2			1	

녹과	반록 시기	반록 품목							
		中米 (石)	造米 (石)	田米 (石)	豆 (石)	麥 (石)	紬 (疋)	正布 (疋)	楮貨 (丈)
제16과 (중8품)	春	1	2	1	2			1	2
	夏		3			1		1	
	秋	1	2			1		1	
	冬		3		2			1	
제17과 (정9품)	春		2	1	2			1	1
	夏		2					1	
	秋		2			1		1	
	冬		2		1				
제18과 (중9품)	春		2	1	1			1	1
	夏		2						
	秋		2			1		1	
	冬		2		1				

③ 『磻溪隨錄』기재 녹과²²²⁾ ※ 괄호 안의 수는 『經國大典』 녹과 반록액 합계

※ 1石=15斗

녹과	白米(石)	紬(疋)	正布(疋)	楮貨(丈)
제1과 (정1품)	98(97)	6	15	10
제2과 (중1품)	83(87)	5	15	10
제3과 (정2품)	78(81)	5	14	8
제4과 (중2품)	70(76)	5	14	8
제5과 당상 (정3품 당상)	67	4	13	8

222) 『磻溪隨錄』卷20, 祿制攷說: “國朝祿制: 國朝祿制 春夏秋冬 四等米粟米麥黃豆並計數. 正一品歲九十八石 紬六疋 正布十五疋 楮貨十丈. 一丈準米一升. 從一品八十三石 紬五疋 正布十五疋 楮貨十丈. 正二品七十八石 紬五疋 正布十四疋 楮貨八丈. 從二品七十石 紬五疋 正布十四疋 楮貨八丈. 正三品六十七石 紬四疋 正布十三疋 楮貨八丈. 三品六十四石 紬四疋 正布十三疋 楮貨八丈. 從三品六十石 紬三疋 正布十三疋 楮貨六丈. 正四品五十四石 紬二疋 正布十二疋 楮貨六丈. 從四品五十一石 紬二疋 正布十一疋 楮貨六丈. 正五品四十五石 紬一疋 正布十疋 楮貨四丈. 從五品四十三石 紬一疋 正布十疋 楮貨四丈. 正六品三十八石 紬一疋 正布十疋 楮貨四丈. 從六品三十六石 紬一疋 正布九疋 楮貨四丈. 正七品三十一石 正布七疋 楮貨二丈. 從七品二十六石 正布六疋 楮貨二丈. 正八品二十二石 正布四疋 楮貨一丈. 從八品十九石 正布四疋 楮貨一丈. 正九品十三石 正布三疋 楮貨一丈. 從九品十二石 正布二疋 楮貨一丈. 壬辰倭亂以後 又減於此. 今則一品 歲俸僅六十餘石 各品皆無紬布·楮貨. …”

동5과 당하 (정3품 당하)	64	4	13	8
제6과 (종3품)	60	3	13	6
제7과 (정4품)	54	2	12	6
제8과 (종4품)	51	2	11	6
제9과 (정5품)	45	1	10(11)	4
제10과 (종5품)	43	1	10	4
제11과 (정6품)	38	1	10	4
제12과 (종6품)	36	1	9	4
제13과 (정7품)	31(28)		7	2
제14과 (종7품)	26		6	2
제15과 (정8품)	22(21)		4	1(2)
제16과 (종8품)	19		4	1(2)
제17과 (정9품)	13		3	1
제18과 (종9품)	12		2	1

④ 1647년(仁祖 25) 개정 녹과²²³⁾

※ 1石=15斗

녹과	米(石)	田米(石)	黃豆(石)
제1과 (정1품)	11	2	4
제2과 (종1품)	10	2	3
제3과 (정2품)	9	2	3
제4과 (종2품)	8	2	3
제5과 (정3품 당상)	7	2	3
제6과 (정3품 당하)	7	2	2
제7과 (종3품)	6	1	太3
제8과 (정종4품)	5	1	3
제9과 (정종5품)	5	1	2
제10과 (정종6품)	4	1	2
제11과 (정종7품)	3	1	2
제12과 (정종8품)	3	1	1
제13과 (정종9품)	2		1

223) 『增補文獻備考』

⑤ 1670년(顯宗 11) 개정 녹과²²⁴⁾

※ 1石=15斗

녹과	米(石)	黃豆(石)	紬(疋)	正布(疋)
제1과 (정1품)	11	6	2	2
제2과 (종1품)	10	4	1	1
제3과 (정2품)	9	4	1	1
제4과 (종2품)	8	4	1	1
제5과 (정3품 당상)	7	4	1	1
제6과 (정3품 당하)	7	4	1	1
제7과 (종3품)	6	4	1	1
제8과 (정종4품)	5	4	1	1
제9과 (정종5품)	5	3	1	1
제10과 (정종6품)	4	3	1	1
제11과 (정종7품)	3	3	1	1
제12과 (정종8품)	3	2	1	1
제13과 (정종9품)	2	2	1	1

3. 月俸制

①1701년(肅宗 27) 녹과²²⁵⁾

※ 1石=15斗

녹과	米	黃豆
대군	3石 3斗	1石 5斗
제1과 (정1품)	2石 12斗	12斗
제2과 (종1품)	2石 6斗	12斗
제3과 (정2품)	2石 6斗	12斗
제4과 (종2품)	2石	12斗
제5과 당상 (정3품 당상)	2石	12斗
제5과 당하 (정3품 당하)	1石 9斗	9斗
제6과 (종3품)	1石 9斗	9斗
제7과 (정종4품)	1石 9斗	9斗
제8과 (정종5품)	1石 3斗	6斗
제9과 (정종6품)	1石 3斗	6斗

224) 『增補文獻備考』

225) 『增補文獻備考』

제10과 (정종7품)	1石	6斗
제11과 (정종8품)	12斗	5斗
제12과 (정종9품)	10斗	5斗

②1721년(景宗 元年) 개정 『續大典』 녹과

※ 1石=15斗

녹과	米	黃豆
대군	春期: 3石 3斗	1石 5斗
	夏秋冬期: 2石 8斗	
제1과 (정1품)	2石 8斗	1石 5斗
제2과 (종1품)	2石 2斗	1石 5斗
제3과 (정2품)	2石 2斗	1石 5斗
제4과 (종2품)	1石 11斗	1石 5斗
제5과 당상 (정3품 당상)	1石 9斗	1石 5斗
동5과 당하 (정3품 당하)	1石 5斗	1石 2斗
제6과 (종3품)	1石 5斗	1石 2斗
제7과 (정종4품)	1石 2斗	13斗
제8과 (정종5품)	1石 1斗	10斗
제9과 (정종6품)	1石 1斗	6斗
제10과 (정종7품)	13斗	5斗
제11과 (정종8품)	10斗	5斗
제12과 (정종9품)	10斗	5斗